

2025 조세특례 심층평가(4) 통합고용세액공제

2025. 9.



2025 조세특례 심층평가(4) 통합고용세액공제

2025. 9.



기획재정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제 출 문

기획재정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통합고용세액공제』 연구용역에 관한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연구책임자: 최인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제연구센터 세법연구팀장

공동연구자: 이기쁨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연구본부 부연구위원

연구보조자: 이희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 연구원

2025년 9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 장 이 영

요 약

1. 연구개요

- (연구목적) 본 연구는 「조세특례 심층평가 운용지침」에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이하 「통합고용세액공제」)에 대한 심층평가 수행을 목적으로 함
 - 동 제도는 기업의 고용 증대 및 고용 안정화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2년 세법 개정 당시 통합·신설됨
 - 2025년 12월 31일 일몰 예정

- (연구 개요)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운용을 타당성 및 효과성 측면에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몰 연장 필요성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제언
 - (타당성) 정부 개입(지원)의 타당성, 지원 대상·방식의 적절성, 여타 기업의 고용 촉진·지원 정책들과의 중복성 측면에서 동 제도의 타당성을 평가
 - (효과성) 동 제도의 운영이 기업의 고용 증대 및 육아 휴직자 고용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지 여부 및 정도를 가용 자료에 기반하여 정량적으로 추정
 - (개선방안) 타당성 및 효과성 분석을 바탕으로 제도의 존속 여부와 관련된 종합적 판단을 제시하는 한편,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될 경우 효과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

2. 제도 현황

- (제도 현황) 「통합고용세액공제」의 공제 개요 및 지출 규모 등은 <표 1>에 요약·제시된 바와 같음
 - (공제 개요) 상시근로자 수 증가 시 기업 규모·소재지·채용대상에 따라 최대 3년간 차등적 기본공제
 - 중소·중견기업은 육아휴직 복귀 인원에 비례하여 1년간 추가공제

<표 1> 「통합고용세액공제」 공제 개요

(단위: 만원)

1인당 세액공제액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수도권	지방		
기본 공제	청년(15~34세)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자 등	1,450 (3년)	1,550 (3년)	800 (3년)	400 (2년)
	그 외 상시근로자	850 (3년)	950 (3년)	450 (3년)	-
추가 공제	육아휴직 복귀자	1,300 (1년)		900 (1년)	-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바탕으로 저자 작성

- 2년 이내 상시근로자 수 감소 또는 근로관계 종료 시 공제받은 세액의 상당액을 소득세·법인세로 납부
- (제도 연혁) 고용 관련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 기존 5개 조세특례제도를 2022년 세법개정 당시 통합하여 신설
 - 「2024년 세법개정안」에 동 제도의 지원방식 개편안이 포함된 바 있으나, 국회 본회의에서 현행 유지로 수정 가결됨
 - 단 2025년 2월 경력단절자의 성별 및 업종 요건은 폐지됨
- (지출 규모)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예상) 감면액은 연간 3조 8,074억원 수준 (2023~2025년 평균)
 - 2023년 기준 소득세 감면액이 37.7%, 법인세 감면액이 62.3%

<표 2>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출 규모

(단위: 억원)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전망)	2025년 (전망)
소득세	274	2,608	5,484	7,689	10,761	13,524	15,932	16,981
법인세	780	6,771	10,710	13,825	18,814	22,379	22,180	23,227
합계	1,054	9,379	16,194	21,873	29,575	35,903	38,112	40,208

주: 2018~2021년 조세지출 규모는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 등」, 「정규직전환 세액공제」 지출액의 합계
 자료: 대한민국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3. 타당성 분석

- (타당성 분석) 정부 개입의 필요성, 지원방식의 적절성, 유사·중복의 가능성 측면에서 타당성 평가를 수행
 - (정부 개입의 필요성: 기본공제) 최근 노동시장의 양적 지표는 비교적 양호한 상태로, 제도 확대·운영의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
 - (실업률) 2016년 3.7% → 2020년 4.0% → 2024년 2.8%
 - 다만 2015년 이후 연도별 비정규직 근로자 수와 비중 모두 증가하는 추세로, 노동시장 질적 지표에는 개선의 여지 존재
 - (정부 개입의 필요성: 추가공제) 육아친화적인 기업 문화 조성 유도를 위한 정부 지원에는 일정 수준의 타당성이 인정됨
 - 출생아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증가 추세이나, 기업 규모별 격차는 여전히 (2023년 기준 300명 이상 기업 출생아 모 80%, 4명 이하 기업 41%)
 - (지원방식의 적절성) 정책 대상, 정책 수단, 정책 설계 등의 측면에서 타당성 평가를 수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정책대상) 고용 관련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중소·중견 기업을 우대하여 지원하는 현 방식은 그 적절성이 대체로 인정됨
 - (정책수단) 제도 운영 관련 행정비용이 상대적으로 낮고, 경영 성과가 양호한 기업들을 겨냥하여 일자리 창출 및 유지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 조세 지원 방식의 적절성이 일정 수준 인정됨
 - (정책설계) 현행 제도상 상시근로자 수 판별 방식 등이 지나치게 복잡하여 기업들이 채용 시점에 공제 여부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바, 사후관리 방식 등과 관련한 개선이 필요
 - 최근 (기획성) 경정청구로 동 제도를 활용하는 사례가 급증

〈표 3〉 법인세 경정청구 추이

(단위: 천건)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전체	6.3	7.4	10.2	13.8	16.6	26.2
고용증대세액공제 등 ¹⁾	0.2	0.5	2.5	6.5	9.0	17.5

주: 1) 「고용증대세액공제」(「조특법」 제29조의7) 및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조특법」 제30조의4)
 자료: 이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2024. 11., p. 338

- (유사·중복의 가능성) 동 제도와 유사한 목적을 지닌 재정지원들이 존재하는 바, 재원절감 내지 지출효율화의 여지가 일부 존재함
 - 가령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고령자고용지원금, 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 등은 유사 목적 재정지원이라 할 수 있음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① 15~34세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유지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 ②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유지한 빈일자리 업종 우선지원대상기업에 1년간 최대 720만원, 해당 청년에게 2년간 최대 480만원 (18개월 이상 재직 시) 지원
 - (고령자고용지원금) 60세 이상 근로자를 3년 평균 대비 초과 고용한 우선 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등에 1인당 30만원/분기 최대 2년간 지원
 - (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 육아휴직 지원금(30만원/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30만원/월), 대체인력 지원금(120만원/월), 업무분담 지원금(최대 20만원/월)

4. 효과성 분석

- (효과성 분석) 기업 단위의 미시 자료를 활용하여 동 제도가 고용 증대 및 고용 안정에 기여한 정도를 정량적으로 평가
 - (분석 내용) 제도 도입 내지 확대 이후 (상시)근로자 수 및 육아휴직 복귀자 수의 변화 양상을 통계적으로 검증
 - (분석 자료) 기업 단위의 미시 자료를 구축하여 분석에 활용
 - 고용보험 DB상 개별 기업 단위 월별 상용 피보험자 수 및 육아휴직 복귀자 수 자료를 한국평가데이터(KoDATA) 재무 자료와 결합
 - (분석 방법) 2원 고정효과 이중차분(2-way fixed effect difference-in-differences)모형 및 사건사 분석(event-study) 모형 등을 활용
 - 종속변수는 (로그) 상용 피보험자 수 또는 육아휴직 복귀자 수
 - 매출액, 총자산, 영업이익률, 부채총계 등 기업의 재무적 특성 통제
 -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효과가 관찰되지 않음

<표 4> 효과성 분석 결과 요약

구분	상용 피보험자 수 ¹⁾		상용 피보험자 수 ²⁾		육아휴직 복귀자 수 ³⁾	
	전체	35세 미만	전체	35세 미만	육아휴직 복귀자	육아휴직 복귀자 + 출산휴가자
처치집단	중소기업		지방 소재 기업		중견기업	
통제집단	중견기업		수도권 소재 기업		대기업	
처치시점	2023		2022		2019	
추정치 (표준오차)	- 0.0027 (0.0316)	0.0233 (0.0367)	0.0019 (0.0051)	- 0.0094 (0.0058)	0.0185 (0.0685)	0.0036 (0.0728)

주: 1) 기업 규모별 공제액 변화 활용

2) 기업 소재지별 공제액 변화 활용

3) 기업 규모별 공제 여부 활용

자료: 고용보험 DB 및 KoDATA 결합자료 활용하여 저자 추정

- (한계점) 실증분석에서 기업 규모별·소재지별 공제액 변화의 차이를 활용하되, 처치집단과 통제집단 간 내생적인 행태 변화 차이가 완전히 통제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음
 - 또한 실증분석 시 동 기간 운영되었던 다른 제도들을 명시적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으므로 타 제도의 효과가 포함되었을 가능성도 있음
 - 후속 연구를 통해 보다 엄밀한 방식의 효과성 분석이 수행될 필요

5. 종합평가 및 개선방안

- 이상의 타당성 및 효과성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정책 설계 측면에서의 보완과 함께 동 제도의 축소 연장을 건의함
 - 고용 증대 및 고용 안정 지원 측면에서 동 제도 운영의 타당성이 일정 수준 인정되나 제도의 효과성이 제한적이고 운영 기간이 상당하였다는 점, 나아가 유사 목적 재정지원들의 운영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원칙적으로 일몰 종료가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장기적으로 고용 관련 세제지원은 경기 상황 등에 따라 탄력적·한시적으로 운영할 필요

- 그러나 갑작스러운 제도 폐지로 인한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공제액 내지 공제 기간 축소·변화를 우선 추진함으로써 제도 일몰 가능성을 시사할 필요
- 일몰 (축소) 연장을 추진할 경우, 고용 증감 판별 방식 등을 개선함으로써 제도 활용도 및 실효성을 제고시킬 필요
 - 최근 (기획성) 경정청구 급증의 사유로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식의 복잡성, 사후 추징에 대한 부담, 홍보 부족 등이 지적됨
 - 따라서 고용 증감 판별 방식을 단순화·합리화하는 동시에 사후 추징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킬 필요
 - 가령 정기신고와 경정청구 시 공제액 규모가 동일하도록 제도 개편
 - 현재는 고용 증가 인원이 공제 기간 동안 일부 감소할 경우 사후관리를 피할 수 있는 경정청구가 실질적으로 더 유리
 - 사후 추징 규정을 폐지하되 공제액을 점증하는 구조로 재설계하여 고용 유지 유인을 제고시키는 방안도 고려 가능
 - 이와 같은 제도 재설계 추진 시 전체 공제액 규모의 축소도 고려 가능

목 차

I. 서론	13
1. 심층평가 개요	15
2. 선행연구	16
가. 조세특례 심층평가	16
나. 국내외 연구	19
II. 제도 현황	23
1. 제도 개요	25
가. 도입 목적	25
나. 제도 연혁	25
다. 정책대상자 및 요건	29
라. 수혜내용	30
2. 운영 현황	31
가. 지출 규모	31
나. 수혜 현황	32
다. 본 제도의 위상	37
III. 타당성 분석	49
1. 지원의 타당성	51
가. 노동시장 현황	51
나. 육아휴직 사용률 및 복귀율	55
다. 소결	58
2. 지원의 적절성	59
가. 정책대상 측면	59
나. 정책수단 측면	63

다. 정책설계 측면	64
라. 소결	68
3. 지원의 중복성	68
4. 요약 및 소결	70
IV. 효과성 분석	71
1. 분석 방법	73
가. 상시근로자 수	73
나. 육아휴직 복귀자 수	77
2. 분석 자료	79
가. 분석 자료	79
나. 기초통계	82
3. 분석 결과	88
가. 상시근로자 수	88
나. 육아휴직 복귀자 수	100
4. 요약 및 소결	103
V. 종합평가 및 개선방안	107
1. 종합평가	109
2. 개선방안	110
참고문헌	112
부록	115
1. 「통합고용세액공제」 법령	117
2. 「통합고용세액공제」 관련 전문가 질의서	122

표 목 차

<표 II-1> 「고용증대세액공제」 주요 연혁	26
<표 II-2>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 주요 연혁	28
<표 II-3> 내국(법)인의 상시근로자 수 증가에 따른 1인당 세액공제액	30
<표 II-4> 육아휴직 복귀 인원 1인당 세액공제액	31
<표 II-5> 고용 관련 조세특례 조세지출 규모	32
<표 II-6> 「고용증대세액공제」 수혜 현황: 신고인원	33
<표 II-7> 「고용증대세액공제」 수혜 현황: 신고금액	33
<표 II-8> 「고용증대세액공제」 수혜 현황: 신고인원당 신고금액	34
<표 II-9> 「고용증대세액공제」 법인세 신고 현황: 수입금액 규모별	35
<표 II-10> 「고용증대세액공제」 법인세 신고 현황: 소재지별	36
<표 II-11> 「고용증대세액공제」 법인세 신고 현황: 업태별	37
<표 II-12> 「조세특례제한법」상 분류기준에 따른 조세지출 현황	38
<표 II-13> 「조세특례제한법」상 고용지원 분야 조세지출 상세 현황	39
<표 II-14> 예산분류기준별 조세지출 현황	40
<표 II-15> 예산분류기준상 사회복지 분야 조세지출 상세 현황	41
<표 II-16> 「조세특례제한법」상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신고 현황	44
<표 II-17> 법인세 세액공제 신고 현황	46
<표 III-1> 연령대별 실업률·고용률·경제활동참가율: 2015~2024년	52
<표 III-2>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 추이: 2015~2024년	55
<표 III-3> 기업체 규모별 출생아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률: 2015~2023년	56
<표 III-4> 연령별 육아휴직 활용 후 복귀 비율 및 미복귀 사유	57
<표 III-5> 법인세 경정청구 추이	67
<표 IV-1> 2019~2023년 수도권 내 기업 규모별 공제액 변화	74
<표 IV-2> 2019~2022년 기업 소재지별 공제액 변화	76

<표 IV-3> 기초통계량: 분석 대상 기업 전체	82
<표 IV-4> 기초통계량: 기업 규모별 공제액 변화를 활용한 분석 대상 기업	84
<표 IV-5> 기초통계량: 기업 소재지별 공제액 변화를 활용한 분석 대상 기업	85
<표 IV-6> 기초통계량: 육아휴직 복귀자 수 분석 대상 기업	87
<표 IV-7> 기업 규모별 공제액 변화를 활용한 이중차분모형추정 결과	91
<표 IV-8> 강건성 검증: 3년 평균 매출액 규모의 범위 변화	92
<표 IV-9> 기업 소재지별 공제액 변화를 활용한 이중차분모형 추정 결과	97
<표 IV-10> 기업 소재지별 공제액 변화를 활용한 이중차분모형 추정 결과: 산업별	98
<표 IV-11> 기업 소재지별 공제액 변화를 활용한 이중차분모형 추정 결과: 기업 규모별	99
<표 IV-12> 육아휴직 복귀자 수 이중차분모형 추정 결과	102
<표 IV-13> 강건성 검증: 총자산 규모의 범위 변화	103

그림 목 차

[그림 III-1] 청년(15~34세) 실업률 및 고용보조지표: 2015~2024년	53
[그림 III-2] 청년(15~29세) ‘쉬었음’ 인구 추이: 2015~2024년	54
[그림 III-3] 기업 규모별 미충원율 및 부족률 추이	60
[그림 III-4] 기업(300인 미만) 소재지별 미충원율 및 부족률 추이	61
[그림 III-5] 300인 이상 기업 상용직 빈 일자리 추이: 2018~2024년	62
[그림 III-6] 기업 규모별 노동비용총액 추이: 2019~2023년	65
[그림 IV-1] 기업 규모별 공제액 변화를 활용한 사건사 분석	89
[그림 IV-2] 기업 소재지별 공제액 변화를 활용한 사건사 분석	95
[그림 IV-3] 육아휴직 복귀자 수 사건사 분석	101

I. 서론



I. 서론

1. 심층평가 개요

-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조세특례 심층평가 운용지침」에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이하 「통합고용세액공제」)에 대한 심층평가 수행을 목적으로 함)
 - 동 제도는 기업의 고용 증대 및 고용 안정화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2년 세법 개정 당시 통합·신설됨
 - 2025년 12월 31일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 신설 이후 동 제도에 대한 심층평가는 수행된 바 없으나, 동 제도로의 통합 이전 각 제도들에 대한 심층평가는 다수 수행된 바 있음²⁾
 - 「2024년 세법개정안」에는 동 제도의 지원 유형을 계속고용 및 탄력고용으로 구분하여 재설계하고, 현행 사후관리 규정을 폐지하는 등의 개편안이 포함됨
 - 이는 최근 동 제도와 관련된 경정청구 급증 등 동 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부작용을 일부 완화시키기 위한 시도였으나, 정책효과 저감 등의 우려로 해당 개편안은 개정 세법에 반영되지는 못함
 - 본 연구는 동 제도와 관련된 이상의 논의 및 흐름을 고려하는 가운데 「통합고용세액공제」의 타당성 및 효과성을 가용 자료에 기반하여 다각도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동 제도의 일몰 연장 필요성 내지 개선방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자 함

- (연구 개요)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운용을 타당성 및 효과성 측면에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몰 연장 필요성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제언
 - (타당성) 정부 개입(지원)의 타당성, 지원 대상·방식의 적절성, 여타 기업의 고용 촉진·지원 정책들과의 중복성 측면에서 동 제도의 타당성을 평가

1) 단 2024년 조세특례 심층평가가 수행되고 세법 개정을 통해 폐지가 결정된 「정규직전환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는 본 연구의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2) 이하 제2절의 선행연구 부분 참조

- (효과성) 동 제도의 운영이 기업의 고용 증대 및 육아 휴직자 고용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지 여부 및 정도를 가용 자료에 기반하여 정량적으로 추정
 - (개선방안) 타당성 및 효과성 분석을 바탕으로 제도의 존속 여부와 관련된 종합적 판단을 제시하는 한편,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될 경우 효과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
- (연구 목차) 이하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음
- 제I장 제2절에서는 본 조세특례제도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들을 소개·정리
 - 제II장에서는 평가대상 조세특례제도의 현황을 파악·제시
 - 제III장에서는 지원의 타당성, 지원의 적절성, 지원의 중복성 등의 측면에서 평가대상 조세특례제도의 타당성을 면밀히 평가
 - 제IV장에서는 가용 자료를 활용하여 제도 도입·운영의 효과성을 엄밀히 분석·평가
 - 제V장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제도 도입·운영에 관한 종합평가를 수행하고, 일몰 연장 필요성 및 향후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검토

2. 선행연구

가. 조세특례 심층평가

1) 오종현 외(2024)

- (연구 목적) 육아친화적 기업에 세제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통합고용세액공제」 확대안을 평가
- (연구 방법) 기본공제 확대, 추가공제 신설, 경력단절여성 요건 완화 등 세 가지 제도 확대 방안에 대하여 정책성·경제성·형평성 분석을 수행
- 해당 결과를 기준으로 계층적 구조의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전문가 9인의 제도 도입 여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계층화 분석(AHP)을 실시

- (연구 결과) 세 가지 제도 확대안에 대한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기본공제 확대) 제도 확대의 정책목표가 육아친화적인 기업 문화 조성이라면 기본공제의 확대는 정책목표에 부합하지 않음
 - (추가공제 신설) 정책목표에는 부합하나 정책대상을 협소하게 설정하여 목표 달성에 한계가 많을 것으로 판단
 - (경력단절여성 요건 완화) 동종업종 요건과 성별 요건은 제도의 실효성을 제약하므로 폐지가 적절

- (정책제언) 경력단절여성의 동종업종 요건과 성별 요건을 폐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
 - 경력단절여성의 요건 완화 시 고용의 질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규직 채용에 한정하는 방안 고려 가능
 - 육아 또는 가족친화기업을 인증하고, 해당 기업들에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가로 고려 가능

2) 김석영 외(2022)

- (연구 목적) 고용지원 조세특례제도 전반에 대한 타당성 및 효과성 분석을 수행하고, 해당 제도들의 개선방안을 도출

- (타당성 분석) 고용지원 조세특례제도 전반에 대한 타당성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정부 역할의 적절성) 전체적인 고용 여건 악화에 대한 대응 및 취약계층 고용 촉진을 위해 정부의 개입 필요성 존재하며, 조세지원 수단으로서 세액공제 방식은 범용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적절한 수단임
 - (정책설계 및 운영의 적절성) 정책목표 및 대상의 적절성, 운영의 적절성, 여타 제도와의 중복성을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일관적인 정비가 요구되는 것으로 판단됨
 - (정책목표 및 대상의 적절성) 고용에 대한 정부의 개입 여부 결정에 있어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정책방향 설정 필요

- (운영의 적절성) 고용 증대와 취약계층 고용 촉진이라는 큰 틀에서 제도 설계의 단순화 및 일원화 필요
- (여타 제도와의 중복성) 조세 및 재정지출 정책과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

□ (효과성 분석) 고용지원 조세특례제도 전반에 대한 효과성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제도의 활용성) 고용지원 세액공제 중에서 특히 고용증대 세액공제가 가장 효과적이며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보임
- (제도의 형평성) 기업 규모별·지역별·업종별 형평성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경제적 효과성) 한국기업데이터, 고용보험 DB, 국세청 자료를 결합하여 패널 자료를 구축한 후 성향점수 매칭방법을 적용한 결과, 고용지원 제도가 고용증대 및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정책제언) 고용지원 조세특례제도들의 일원화 내지 재설계 제안

- 수혜 대상, 수혜 기간 등의 측면에서 고용 증대를 위한 세액공제와 취약계층 고용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의 차별화도 필요

3) 최인혁 외(2021)

□ (연구 목적)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의 운영 성과를 타당성 및 효과성 측면에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당 제도의 일몰 연장 필요성 및 개선방안을 검토·제시

□ (타당성 분석) 동 제도에 대한 타당성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도입·운영 당위성) 고용 비용 지원을 통해 고용 증대 내지 실업 감소를 목표로 하는 동 제도의 도입·운영은 타당함
- (지원·운영의 적절성) 전반적으로 적절히 설계 및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 (유사·중복성의 가능성) 고용 및 임금 지원 제도는 다수 존재하나 중복적인 것보다는 상호 보완적인 것으로 판단

- (효과성 분석) 동 제도에 대한 효과성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제도의 활용성) 동 제도의 절대적·상대적 활용도는 높은 수준
 - (제도의 형평성) 동 제도의 주된 수혜자는 중소기업이며, 특정 업종 편중 현상이 두드러지게 관찰되지 않음
 - 따라서 동 제도가 형평성을 위해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
 - (경제적 효과성) 2016~2019년 국세청 과세신고 자료,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인원 자료, 한국기업데이터의 재무자료를 결합하여 기업 패널 자료를 구축하고, 해당 자료를 활용하여 성향점수매칭 후 이중차분 분석을 수행
 -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할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고용 증대 효과가 발견
 - 기업 규모 및 근로자 유형별 분석에서는 모형에 따라 결과가 상이

- (정책제언) 타당성·효과성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동 제도의 일몰 연장을 권하나, 이하 항목들에 대한 고려를 제안
 - (지원 대상·규모 조정) 동 제도의 효과가 지연되어 나타날 가능성을 감안하여 추후 동 제도의 효과를 재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 및 규모 등을 조정
 - (제도 통폐합) 향후 중소기업 및 취업취약계층 지원 중심 제도로의 개편 필요성 부각 시, 여타 중소기업 지원 조세특례제도들과의 통폐합 고려
 - (신축적 운영) 경기 상황에 따라 세액공제 규모를 탄력적·신축적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 가능

나. 국내외 연구

1) 최인혁·문지웅(2023)

- (연구 목적) 고용 창출 세제지원의 직·간접적 효과를 모두 고려할 수 있는 모형을 구축·활용함으로써 향후 고용 창출 세제지원의 효과적·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정책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
 - 향후 고용 창출 조세특례제도들의 일몰 도래 시 정책적 의사결정에 활용될 수 있는 학술적·과학적 근거를 선제적으로 마련

- (연구 방법) 우리나라의 정책 환경에 맞게 기존의 구조적 모형을 수정·확장하여 분석에 활용
 - 모형 내 모수의 값과 정책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일자리 창출비용을 계산하고, 반사실적 분석을 수행

- (연구 결과) 지원 대상이 한정적이거나 정책이 한시적으로 시행될 때 또는 중소기업에서 일자리가 생성될 때, 비용 측면에서 더 효율적
 - 세액공제 금액이 증가하면 고용효과는 증가하나 일자리 수는 감소
 - 기존 고용지원 제도 존재 시 고용 창출 세액공제의 효율성은 감소

2) Chirinko and Wilson(2023)

- (연구 목적) 미국 주 수준에서의 고용 창출 세액공제(job creation tax credits)가 고용 증가에 미친 영향을 분석
 - 정책 실행 지연(implementation lag)에 따른 정책 예견 효과의 중요성을 정량적으로 평가

- (연구 방법) 고용 창출 세액공제가 미국의 여러 주에서 서로 다른 시점에 도입·운영된 점을 활용하여 이중차분법을 적용
 - IPW(inverse probability weighting) 기법을 활용하여 잠재적인 내생성 문제를 완화

- (연구 결과) 정책 시행 당시 고용률이 상승하였으나, 이는 정책 시행 이전에 발생한 고용 감소를 상쇄하는 보상 반등에 기인한 결과로 해석됨
 - 정책 시행 이후 장기적인 누적 효과는 상당히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 세제지원 효과의 엄밀한 측정에 있어 정책 예견 효과의 중요성을 확인

3) Cahuc et al.(2019)

- (연구 목적) 대침체(Great Recession) 당시 프랑스에서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채용 공제(hiring credits) 제도에 대한 평가를 시도

- (연구 방법) DADS 등 프랑스 행정 자료들을 결합하여 이중차분법 및 도구변수 분석을 수행
 - 탐색 결합 모형을 구축·활용하여 반사실적 정책실험도 수행

- (연구 결과) 실증분석 결과 해당 정책이 정책 운영 기간 동안 고용에 미친 효과가 상당하였음을 발견
 - 반사실적 정책실험을 통해 해당 정책의 효과가 효율적으로 발현되기 위해서는 제도가 한시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음을 추가적으로 밝힘

Ⅱ. 제도 현황



II. 제도 현황

1. 제도 개요

가. 도입 목적

-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기업의 고용 증대 및 고용 안정화 노력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유도하고 사회적 책임을 장려함에 그 목적이 있음
 - 고용 관련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 기존에 운영하였던 이하 다섯 개 특례제도를 2022년 세법 개정 당시 통합하여 신설한 것으로, 납세자 혼란 방지 및 제도 운영의 효율화 등이 통합 배경이라 할 수 있음
 -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 제1항)
 -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 제2항)
 - 「고용증대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 「정규직전환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³⁾
 -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나. 제도 연혁

- 2022년 12월 31일 「통합고용세액공제」가 신설되었으며, 2025년 12월 31일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 「2024년 세법개정안」에 동 제도의 지원방식 개편안이 포함된 바 있으나, 국회 본회의에서 현행 유지로 수정 가결됨
 - 단 2025년 2월 경력단절자의 성별 및 업종 요건은 폐지됨
- 동 제도로 통합된 「고용증대세액공제」 및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의 연혁은 <표 II-1> 및 <표 II-2>에 각각 요약·제시되어 있음

3) 2024년 해당 제도에 대한 조세특례 심층평가가 수행되고 세법 개정을 통해 폐지가 결정되었으므로 본 연구의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2023년 및 2024년 과세연도분에 대해서는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기존 「고용증대세액공제」 및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에서 선택하여 적용 가능

<표 II -1> 「고용증대세액공제」 주요 연혁

시행일	주요 변경사항																	
2018. 1. 1. (2017. 12. 19.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입 배경) 신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종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및 「청년고용증대세제」를 통합·재설계하여 「고용증대세액공제」 신설 • (공제요건 및 금액) 종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서는 투자·고용 동시 증가를 요건으로 하였으나, 신설 항목에서는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 증가 시 1인당 일정 금액을 공제 <p style="text-align: center;"><상시근로자 고용 증가 시 1인당 세액공제액> (단위: 만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colspan="2">중소기업</th> <th rowspan="2">중견기업</th> <th rowspan="2">대기업</th> </tr> <tr> <th>수도권</th> <th>수도권 밖</th> </tr> </thead> <tbody> <tr> <td>청년 등 상시근로자</td> <td>1,000</td> <td>1,100</td> <td>700</td> <td>300</td> </tr> <tr> <td>그 외 상시근로자</td> <td>700</td> <td>770</td> <td>450</td> <td>-</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 기간) 대기업 1년, 중소 및 중견기업 2년 - 고용인원이 유지되는 경우 고용이 증가한 다음 해도 세액공제 적용 • (적용 기한) 2020. 12. 31. 	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수도권	수도권 밖	청년 등 상시근로자	1,000	1,100	700	300	그 외 상시근로자	700	770	450	-
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수도권	수도권 밖																
청년 등 상시근로자	1,000	1,100	700	300														
그 외 상시근로자	700	770	450	-														
2019. 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액 개정) 청년 등 상시근로자 고용 증가 시 1인당 세액공제액 상향조정 - 대기업 300만 → 400만, 중견기업 700만 → 800만, 중소기업 1,000(1,100)만 → 1,100(1,200)만원 <p style="text-align: center;"><상시근로자 고용 증가 시 1인당 세액공제액> (단위: 만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colspan="2">중소기업</th> <th rowspan="2">중견기업</th> <th rowspan="2">대기업</th> </tr> <tr> <th>수도권</th> <th>수도권 밖</th> </tr> </thead> <tbody> <tr> <td>청년 등 상시근로자</td> <td>1,100</td> <td>1,200</td> <td>800</td> <td>400</td> </tr> <tr> <td>그 외 상시근로자</td> <td>700</td> <td>770</td> <td>450</td> <td>-</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 기간 개정) 대기업 2년, 중소 및 중견기업 3년 • (적용 기한 개정) 2020. 12. 31. → 2021. 12. 31. • (사후관리)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간 공제받은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 및 전체 상시근로자 수 감소 시 추가공제* 미적용 및 공제받은 세액 추징 * 고용이 증가한 과세연도 다음 해 및 다다음해 공제분 	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수도권	수도권 밖	청년 등 상시근로자	1,100	1,200	800	400	그 외 상시근로자	700	770	450	-
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수도권	수도권 밖																
청년 등 상시근로자	1,100	1,200	800	400														
그 외 상시근로자	700	770	450	-														

〈표 II -1〉의 계속

시행일	주요 변경사항																											
2020. 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액 개정) 각 공제금액(청년 등 상시근로자와 그 외 상시근로자)은 전체 상시근로자 수 증가분을 한도로 함을 명시 • (사후관리 개정) 상시근로자 수 감소 기준연도 변경 - 공제받은 직전 과세연도 → 공제받은 과세연도 																											
2021. 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대상 확대) 청년 등 상시근로자(청년,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60세 이상 고령근로자 추가 																											
2022. 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액 확대) 수도권 밖 상시근로자 증가 기업의 1인당 공제액 확대 - 중소기업: 1,200만 → 1,300만원 - 중견기업: 800만 → 900만원 - 대기업: 400만 → 500만원 <p align="center">〈상시근로자 고용 증가 시 1인당 세액공제액〉 (단위: 만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구분</th> <th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중소기업</th> <th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중견기업</th> <th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대기업</th> </tr> <tr> <th style="text-align: center;">수도권</th> <th style="text-align: center;">지방</th> <th style="text-align: center;">수도권</th> <th style="text-align: center;">지방</th> <th style="text-align: center;">수도권</th> <th style="text-align: center;">지방</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청년 등 상시근로자</td> <td style="text-align: center;">1,100</td> <td style="text-align: center;">1,300</td> <td style="text-align: center;">800</td> <td style="text-align: center;">900</td> <td style="text-align: center;">400</td> <td style="text-align: center;">50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그 외 상시근로자</td> <td style="text-align: center;">700</td> <td style="text-align: center;">770</td>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450</td>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td> </tr> </tbody> </table> <p>주: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수도권 밖 기업에 대한 공제금액은 적용 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 기한 개정) 2021. 12. 31. → 2024. 12. 31. 	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수도권	지방	수도권	지방	수도권	지방	청년 등 상시근로자	1,100	1,300	800	900	400	500	그 외 상시근로자	700	770	450		-	
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수도권	지방	수도권	지방	수도권	지방																						
청년 등 상시근로자	1,100	1,300	800	900	400	500																						
그 외 상시근로자	700	770	450		-																							
2023. 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고용세액공제」(舊 「조세특례제한법」 §29의8①)로 통합 • (공제대상 확대) 청년 등 상시근로자(청년, 장애인, 국가유공자, 60세 이상 근로자 등)에 경력단절 여성 추가 <p align="center">〈상시근로자 고용 증가 시 1인당 세액공제액〉 (단위: 만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구분</th> <th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중소기업</th> <th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중견기업</th> <th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대기업</th> </tr> <tr> <th style="text-align: center;">수도권</th> <th style="text-align: center;">지방</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청년 등 상시근로자¹⁾</td> <td style="text-align: center;">1,450</td> <td style="text-align: center;">1,550</td> <td style="text-align: center;">800</td> <td style="text-align: center;">40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그 외 상시근로자²⁾</td> <td style="text-align: center;">850</td> <td style="text-align: center;">950</td> <td style="text-align: center;">450</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body> </table> <p>주: 1) 舊 「조세특례제한법」 §29의8① 1호 2) 舊 「조세특례제한법」 §29의8① 2호</p>	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수도권	지방	청년 등 상시근로자 ¹⁾	1,450	1,550	800	400	그 외 상시근로자 ²⁾	850	950	450	-										
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수도권	지방																										
청년 등 상시근로자 ¹⁾	1,450	1,550	800	400																								
그 외 상시근로자 ²⁾	850	950	450	-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II -2>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 주요 연혁

시행일	주요 변경사항						
2019. 1. 1. (2018. 12. 24.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입 배경 및 내용) 고용안정화 및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육아휴직 후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해 인건비 세액공제를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아휴직 후 복귀자에게 중소·중견기업이 지급하는 인건비의 10%(중견기업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공제요건) 육아휴직 후 복귀하는 근로자가 다음 요건을 갖춘 경우, 자녀 1명당 1회 적용되며,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직원 - 육아휴직 기간이 6개월 이상 연속이어야 함 - 기업의 최대주주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 (공제대상) 육아휴직 후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 (공제율)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5% • (공제 기간) 1년 • (사후관리) 복귀 후 1년 이내 근로관계 종료 시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 • (적용 기한) 2020. 12. 31. 						
2021. 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율 상향) 중소기업 30%, 중견기업 15% • (사후관리 완화) 추징금액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액공제액 + 이자상당액 → 세액공제액 • (적용기한) 2020. 12. 31. → 2022. 12. 31. 						
2023. 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고용세액공제」(舊 「조세특례제한법」 §29의8④)로 통합 • (공제방식 변경) 기존 인건비의 일정 비율을 공제하던 것을 육아휴직 복귀자 1인당 일정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변경 <p style="text-align: center;"> <육아휴직 복귀 인원 1인당 세액공제액> (단위: 만원) </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 0 auto;"> <thead> <tr> <th style="width: 30%;">구분</th> <th style="width: 35%;">중소기업</th> <th style="width: 35%;">중견기업</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육아휴직 복귀자</td> <td style="text-align: center;">1,300</td> <td style="text-align: center;">900</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후관리 강화) 복귀 후 2년 이내 근로관계 종료 시 공제받은 세액공제 상당액을 추징(舊 「조세특례제한법」 §29의8⑥) 	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육아휴직 복귀자	1,300	900
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육아휴직 복귀자	1,300	900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바탕으로 저자 작성

다. 정책대상자 및 요건

1) 기본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제1항)

- 소비성 서비스업⁴⁾을 제외한 내국(법)인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상시근로자 수를 전년 대비 증가시킬 경우, 증가 인원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 (공제대상) 상시근로자 유형은 다음과 같음
 - 청년 정규직 근로자: 15세 이상 34세 이하(병역 이행 시 최대 6년 연장)
 -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복지법」 등에 의해 인정받은 장애인
 - 60세 이상인 근로자: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 기준
 - 경력단절 근로자: 법적 요건(「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제2항5) 충족 필요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청년 등 상시근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이하 “그 외 상시근로자”)

2) 추가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제5항)

- 중소·중견기업이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를 복직시킬 경우, 해당 직원에 대해 자녀 1명당 한 차례에 한정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 (공제대상) 2025년 12월 31일까지 복직하는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 해당 과세연도에 해당 중소·중견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함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5)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제2항 제1항 제1호에서 “경력단절 근로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1. 임금을 목적으로 같은 기업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가족돌봄의 사유로 퇴직하였을 것
2. 제1호에 따른 사유로 퇴직한 날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났을 것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내국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또는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 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
- 육아휴직 기간이 연속하여 6개월 이상일 것
-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라. 수혜내용

1) 기본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제1항)

- (공제금액) 상시근로자 고용 증가 시 1인당 세액공제액은 해당 상시근로자 유형에 따라 <표 II-3>과 같이 결정됨

<표 II-3> 내국(법)인의 상시근로자 수 증가에 따른 1인당 세액공제액

(단위: 만원)

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그 외 (대기업)
	수도권	지방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 근로자 등	1,450	1,550	800	400
그 외 상시근로자	850	950	450	-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바탕으로 저자 작성

- (공제 기간) 중소·중견기업은 3년, 그 외(대기업)는 2년
- (사후관리) 최초 공제 과세연도의 2년 이내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와 비교해 감소한 경우,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함(「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제3항)

2) 추가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제5항)

- (공제금액) 육아휴직 복귀 인원 1인당 세액공제액은 <표 II-4>와 같이 결정됨

<표 II -4> 육아휴직 복귀 인원 1인당 세액공제액

(단위: 만원)

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육아휴직 복귀자	1,300	900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바탕으로 저자 작성

- (공제기간) 중소·중견기업 모두 1년
- (사후관리) 육아휴직 복귀일로부터 2년 내 근로관계 종료 시 해당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세액의 상당액을 소득세·법인세로 납부(「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제7항)

2. 운영 현황

가. 지출 규모

- 「통합고용세액공제」를 포함한 고용 관련 조세특례제도들의 조세지출 규모는 <표 II-5>에 제시된 바와 같음⁶⁾
 - 「조세지출예산서」상 「통합고용세액공제」의 2025년 예상 감면액은 4조 208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이는 2023년 실적액(3조 5,903억원)의 1.12배에 해당하는 수치
 - 2025년 예상 감면액 중 법인사업자 수혜액은 2조 3,227억원(57.8%), 개인사업자 수혜액은 1조 6,981억원(42.2%)으로 각각 전망됨
 - 2023년 실적액 기준 개인사업자 수혜액 비중은 37.7%로, 개인사업자 수혜액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6) 「통합고용세액공제」 조세지출 규모는 2022년 이후 상시근로자 수 증가와 관련된 기본공제 조세지출 규모와 육아휴직 복귀자 등과 관련된 추가공제 조세지출 규모의 합으로 집계되고 있음.

<표 II -5> 고용 관련 조세특례 조세지출 규모

(단위: 억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전망)	2025년 (전망)
고용증대 세액공제 ¹⁾ (A)	소득세	0	1,972	4,283	6,336	-			
	법인세	2	5,345	8,529	11,625				
	소계	2	7,317	12,812	17,960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²⁾ (B)	소득세	249	583	1,131	1,304	-			
	법인세	660	1,213	1,946	2,328				
	소계	909	1,796	3,077	3,632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 등 ³⁾ (C)	소득세	0.2	1.2	2	8	-			
	법인세	0.2	1.3	9	15				
	계	0.4	2.5	11	23				
정규직전환 세액공제 ⁴⁾ (D)	소득세	25	53	70	49	-			
	법인세	118	213	235	232				
	계	143	266	305	280				
통합고용 세액공제 ⁵⁾ (A+B+C+D)	소득세	274	2,608	5,484	7,689	10,761	13,524	15,932	16,981
	법인세	780	6,771	10,710	13,825	18,814	22,379	22,180	23,227
	합계	1,054	9,379	16,194	21,873	29,575	35,903	38,112	40,208

주: 1)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2017년 12월 31일 신설,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
 2)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2010년 3월 12일 재신설,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
 3)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 제1항 및 제2항: 2014년 12월 23일 신설
 4)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2008년 9월 26일 신설
 5)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2022년 12월 31일 신설

자료: 대한민국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나. 수혜 현황

-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고용증대세액공제」의 2019~2023년 연도별 신고인원 및 신고금액은 <표 II-6> 및 <표 II-7>에 각각 제시되어 있음⁷⁾
- 2023년 신고 기준 전체 신고인원의 57.7%가 소득세 공제혜택을, 42.3%가 법인세 공제혜택을 받음
 - 2019년과 비교해 소득세(법인세) 신고인원 비중이 5.8%p 증가(감소)

7) 2023년 통합·신설된 「통합고용세액공제」 신고 자료는 아직 유의미하게 구축·공개되지 않은 상태임.

- 2023년 신고 기준 개인사업자 신고금액이 전체 신고금액의 38.1%, 법인사업자 신고금액이 61.9%를 차지
 - 2019년과 비교해 개인(법인)사업자 신고금액 비중이 11.2%p 증가(감소)
- 한편 2023년 신고 기준 법인사업자 중 중소기업 신고인원 및 신고금액 비중이 2019년 대비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중소기업 신고인원 비중은 2.4%p, 신고금액 비중은 6.5%p 증가함

<표 II -6> 「고용증대세액공제」 수혜 현황: 신고인원

(단위: 명, 개, %)

신고연도	전체	소득세	법인세		
			소계	중소기업	일반법인
2019	39,106 (100.0)	20,284 (51.9)	18,822 (48.1)	17,631 (45.1)	1,191 (3.0)
2020	61,638 (100.0)	33,718 (54.7)	27,920 (45.3)	26,459 (42.9)	1,461 (2.4)
2021	87,592 (100.0)	47,610 (54.4)	39,982 (45.6)	38,537 (44.0)	1,445 (1.6)
2022	119,286 (100.0)	65,866 (55.2)	53,420 (44.8)	51,342 (43.0)	2,078 (1.7)
2023	161,182 (100.0)	92,992 (57.7)	68,190 (42.3)	65,492 (40.6)	2,698 (1.7)

주: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이며, 일반법인은 그 외의 법인

2. () 안은 전체 대비 비중(%)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표 II -7> 「고용증대세액공제」 수혜 현황: 신고금액

(단위: 억원, %)

신고연도	전체	소득세	법인세		
			소계	중소기업	일반법인
2019	7,317 (100.0)	1,972 (27.0)	5,345 (73.0)	3,784 (51.7)	1,560 (21.3)
2020	12,812 (100.0)	4,283 (33.4)	8,529 (66.6)	6,212 (48.5)	2,317 (18.1)
2021	17,960 (100.0)	6,336 (35.3)	11,625 (64.7)	9,002 (50.1)	2,622 (14.6)
2022	24,166 (100.0)	8,898 (36.8)	15,268 (63.2)	11,950 (49.5)	3,318 (13.7)
2023	29,339 (100.0)	11,191 (38.1)	18,148 (61.9)	14,027 (47.8)	4,122 (14.0)

주: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이며, 일반법인은 그 외의 법인

2. () 안은 전체 대비 비중(%)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 「고용증대세액공제」의 2019~2023년 연도별 신고인원당 신고금액은 <표 II-8>에 제시되어 있음

- 2023년 신고 기준 개인사업자 1인당 신고금액은 1,203만원, 법인사업자 1인당 신고금액은 2,661만원 수준으로 계산됨
 - 이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간 통상적인 규모 차이가 일정 수준 반영된 결과로 이해될 수 있음
- 한편 2023년 신고 기준 중소기업 1개당 신고금액은 2,142만원, 일반법인 1개당 신고금액은 1억 5,277만원 수준으로 계산됨
 - 이 역시 중소기업과 일반법인 간 통상적인 규모 차이가 일정 수준 반영된 결과로 이해될 수 있음

<표 II -8> 「고용증대세액공제」 수혜 현황: 신고인원당 신고금액

(단위: 만원, %)

신고연도	전체	소득세	법인세		
			소계	중소기업	일반법인
2019	1,871	972	2,840	2,146	13,099
2020	2,079	1,270	3,055	2,348	15,856
2021	2,050	1,331	2,907	2,336	18,148
2022	2,026	1,351	2,858	2,328	15,969
2023	1,820	1,203	2,661	2,142	15,277

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이며, 일반법인은 그 외의 법인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 2023년 법인세 신고 기준 수입금액 규모별·소재지별·업태별 「고용증대세액공제」 신고 현황은 <표 II-9>, <표 II-10>, <표 II-11>에 각각 제시되어 있음

- 「고용증대세액공제」 신고 법인 중 수입금액 2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법인의 비중이 26.2%로 가장 높음
 - 중소기업 중에서도 수입금액 2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법인의 비중(27.0%)이 가장 높은 반면, 일반법인 중에서는 수입금액 1천억원 초과 5천억원 이하인 법인의 비중(32.9%)이 가장 높게 나타남
- 한편 「고용증대세액공제」 신고 법인 중 경기 소재 법인이 31.4%, 서울 소재 법인이 26.2%를 차지

- 중소기업 중에서도 경기 소재 법인의 비중(31.8%)이 가장 높은 반면, 일반법인 중에서는 서울 소재 법인의 비중(34.7%)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됨
- 끝으로 「고용증대세액공제」 신고 법인의 업태는 제조업(30.9%), 도매업(21.1%), 서비스업(20.2%) 등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남
- 「고용증대세액공제」 신고 중소기업의 업태도 이와 유사하나, 일반법인의 경우 금융보험업의 비중(24.4%)이 상당함

<표 II -9> 「고용증대세액공제」 법인세 신고 현황: 수입금액 규모별

(단위: 개, 억원, %)

수입금액 규모	전체		중소기업		일반법인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전체	68,190 (100.0)	18,148 (100.0)	65,492 (100.0)	14,027 (100.0)	2,698 (100.0)	4,122 (100.0)
10억원 이하	11,055 (16.2)	235 (1.3)	11,037 (16.9)	233 (1.7)	18 (0.7)	3 (0.1)
20억원 이하	10,753 (15.8)	511 (2.8)	10,706 (16.3)	507 (3.6)	47 (1.7)	4 (0.1)
50억원 이하	17,886 (26.2)	1,821 (10.0)	17,680 (27.0)	1,791 (12.8)	206 (7.6)	30 (0.7)
100억원 이하	12,362 (18.1)	2,510 (13.8)	12,086 (18.5)	2,461 (17.5)	276 (10.2)	49 (1.2)
200억원 이하	7,814 (11.5)	2,836 (15.6)	7,529 (11.5)	2,741 (19.5)	285 (10.6)	96 (2.3)
300억원 이하	2,805 (4.1)	1,622 (8.9)	2,644 (4.0)	1,546 (11.0)	161 (6.0)	76 (1.8)
500억원 이하	2,401 (3.5)	2,044 (11.3)	2,143 (3.3)	1,837 (13.1)	258 (9.6)	207 (5.0)
1,000억원 이하	1,552 (2.3)	2,127 (11.7)	1,237 (1.9)	1,783 (12.7)	315 (11.7)	343 (8.3)
5,000억원 이하	1,317 (1.9)	3,226 (17.8)	429 (0.7)	1,096 (7.8)	888 (32.9)	2,130 (51.7)
5,000억원 초과	245 (0.4)	1,216 (6.7)	1 (0.0)	32 (0.2)	244 (9.0)	1,184 (28.7)

주: 1. 2023년 법인세 신고 기준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이며, 일반법인은 그 외의 법인

3. () 안은 전체 대비 비중(%)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24.

<표 II - 10> 「고용증대세액공제」 법인세 신고 현황: 소재지별

(단위: 개, 억원, %)

소재지	전체		중소기업		일반법인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전체	68,190 (100.0)	18,148 (100.0)	65,492 (100.0)	14,027 (100.0)	2,698 (100.0)	4,122 (100.0)
서울	17,836 (26.2)	6,069 (33.4)	16,900 (25.8)	4,508 (32.1)	936 (34.7)	1,561 (37.9)
인천	3,431 (5.0)	791 (4.4)	3,330 (5.1)	621 (4.4)	101 (3.7)	171 (4.1)
경기	21,415 (31.4)	5,447 (30.0)	20,828 (31.8)	4,293 (30.6)	587 (21.8)	1,154 (28.0)
강원	1,181 (1.7)	264 (1.5)	1,120 (1.7)	196 (1.4)	61 (2.3)	68 (1.7)
대전	1,554 (2.3)	348 (1.9)	1,511 (2.3)	306 (2.2)	43 (1.6)	42 (1.0)
충북	2,011 (2.9)	649 (3.6)	1,906 (2.9)	440 (3.1)	105 (3.9)	209 (5.1)
충남	2,553 (3.7)	707 (3.9)	2,412 (3.7)	526 (3.8)	141 (5.2)	181 (4.4)
세종	305 (0.4)	84 (0.5)	286 (0.4)	72 (0.5)	19 (0.7)	12 (0.3)
광주	1,414 (2.1)	234 (1.3)	1,369 (2.1)	206 (1.5)	45 (1.7)	28 (0.7)
전북	1,565 (2.3)	334 (1.8)	1,473 (2.2)	263 (1.9)	92 (3.4)	71 (1.7)
전남	1,889 (2.8)	329 (1.8)	1,798 (2.7)	271 (1.9)	91 (3.4)	57 (1.4)
대구	2,090 (3.1)	485 (2.7)	2,018 (3.1)	370 (2.6)	72 (2.7)	115 (2.8)
경북	2,724 (4.0)	621 (3.4)	2,595 (4.0)	459 (3.3)	129 (4.8)	162 (3.9)
부산	3,589 (5.3)	765 (4.2)	3,493 (5.3)	648 (4.6)	96 (3.6)	117 (2.8)
울산	931 (1.4)	214 (1.2)	880 (1.3)	165 (1.2)	51 (1.9)	49 (1.2)
경남	3,128 (4.6)	699 (3.9)	3,029 (4.6)	606 (4.3)	99 (3.7)	93 (2.3)
제주	574 (0.8)	109 (0.6)	544 (0.8)	77 (0.5)	30 (1.1)	33 (0.8)

주: 1. 2023년 법인세 신고 기준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이며, 일반법인은 그 외의 법인

3. () 안은 전체 대비 비중(%)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24.

<표 II - 11> 「고용증대세액공제」 법인세 신고 현황: 업태별

(단위: 개, 억원, %)

업태	전체		중소기업		일반법인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전체	68,190 (100.0)	18,148 (100.0)	65,492 (100.0)	14,027 (100.0)	2,698 (100.0)	4,122 (100.0)
농림어업	274 (0.4)	46 (0.3)	256 (0.4)	39 (0.3)	18 (0.7)	7 (0.2)
광업	43 (0.1)	10 (0.1)	41 (0.1)	10 (0.1)	2 (0.1)	0 (0.0)
제조업	21,079 (30.9)	7,479 (41.2)	20,370 (31.1)	5,693 (40.6)	709 (26.3)	1,786 (43.3)
전기·가스· 수도업	70 (0.1)	25 (0.1)	49 (0.1)	6 (0.0)	21 (0.8)	20 (0.5)
건설업	9,636 (14.1)	1,664 (9.2)	9,524 (14.5)	1,443 (10.3)	112 (4.2)	221 (5.4)
도매업	14,409 (21.1)	2,362 (13.0)	14,047 (21.4)	2,076 (14.8)	362 (13.4)	286 (6.9)
소매업	3,351 (4.9)	796 (4.4)	3,166 (4.8)	585 (4.2)	185 (6.9)	211 (5.1)
음식숙박업	1,093 (1.6)	250 (1.4)	1,063 (1.6)	185 (1.3)	30 (1.1)	64 (1.6)
운수·창고· 통신업	2,383 (3.5)	645 (3.6)	2,293 (3.5)	430 (3.1)	90 (3.3)	216 (5.2)
금융보험업	1,117 (1.6)	303 (1.7)	460 (0.7)	122 (0.9)	657 (24.4)	181 (4.4)
부동산업	695 (1.0)	128 (0.7)	666 (1.0)	112 (0.8)	29 (1.1)	15 (0.4)
서비스업	13,795 (20.2)	4,124 (22.7)	13,345 (20.4)	3,201 (22.8)	450 (16.7)	922 (22.4)
보건업	177 (0.3)	312 (1.7)	144 (0.2)	120 (0.9)	33 (1.2)	192 (4.7)
기타업종	68 (0.1)	6 (0.0)	68 (0.1)	6 (0.0)	0 (0.0)	0 (0.0)

주: 1. 2023년 법인세 신고 기준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이며, 일반법인은 그 외의 법인

3. () 안은 전체 대비 비중(%)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24.

다. 본 제도의 위상

- 동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고용지원 분야에 속하는바, 2023년 기준 고용지원 분야의 조세지출 실적은 4조 5,897억원으로 전체 조세지출 규모의 6.6%를 차지

(<표 II-12> 참조)

- 이는 중소기업(3.8조원, 5.4%), 연구개발(5.1조원, 7.3%) 등의 분야와 유사한 수준
- 2024년과 2025년에 동 제도가 속한 고용지원 분야의 조세지출 규모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전체 조세지출 대비 비중은 대체로 일정하게 유지될 것으로 보임
 - 2024년 고용지원 분야의 조세지출 규모는 4조 9,845억원(7.0%)으로 전망됨
 - 2025년 고용지원 분야의 조세지출 규모는 5조 2,863억원(6.8%)으로 전망됨

<표 II -12> 「조세특례제한법」상 분류기준에 따른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원, %)

분야	2023년		2024년		2025년	
	실적	비중	전망	비중	전망	비중
중소기업	37,848	5.4	35,894	5.0	38,136	4.9
연구개발	50,719	7.3	35,557	5.0	37,402	4.8
국제자본거래	26	0.0	0	0.0	0	0.0
투자촉진	21,750	3.1	18,189	2.5	43,599	5.6
고용지원	45,897	6.6	49,845	7.0	52,863	6.8
기업구조조정	2,303	0.3	4,026	0.6	4,197	0.5
금융기관구조조정	0	0.0	0	0.0	0	0.0
지역균형발전	16,051	2.3	13,448	1.9	14,765	1.9
공익사업지원	9,767	1.4	6,245	0.9	6,659	0.9
저축지원	26,026	3.7	34,517	4.8	38,114	4.9
국민생활안정	218,357	31.3	230,553	32.3	251,066	32.2
근로·자녀장려	52,309	7.5	57,930	8.1	58,420	7.5
기타직접국세	36,672	5.3	38,404	5.4	37,504	4.8
간접국세	132,540	19	140,940	19.7	145,772	18.7
외국인투자	1,143	0.2	776	0.1	813	0.1
제주국제도시육성	1,944	0.3	1,710	0.2	1,799	0.2
기업도시	72	0.0	36	0.0	38	0.0
지역발전	7	0.0	11	0.0	12	0.0
농협구조개편	619	0.1	755	0.1	795	0.1
공적자금 회수	0	0.0	0	0.0	0	0.0
수협구조개편	72	0.0	73	0.0	77	0.0
사업재편 계획	0	0.0	0	0.0	0	0.0
기회발전특구 지원	0	0.0	0	0.0	0	0.0
기타	42,541	6.2	45,396	6.4	48,150	6.2
합계	697,664	100.0	714,305	100.0	780,178	100.0

자료: 대한민국정부, 「조세지출예산서」, 2024.

- 「조세특례제한법」상 고용지원 분야 조세지출에서 본 조세특례와 관련된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한 수준으로 유지될 전망(<표 II-13> 참조)
 -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동 제도의 2023년 조세지출 규모는 고용지원 분야 조세지출의 78.2%를 차지함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20.9%)과 함께 사실상 고용지원 분야 조세지출 전체에 해당됨
 - 해당 비중은 2024년과 2025년 소폭 감소하되 대체로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동 제도의 비중 감소는 동 기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의 비중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임

<표 II -13> 「조세특례제한법」상 고용지원 분야 조세지출 상세 현황

(단위: 억원, %)

조세지출 항목	2023년		2024년		2025년		
	실적	비중	전망	비중	전망	비중	
고용지원 전체	45,897	100.0	49,846	100.0	52,864	100.0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지출 항목	계	45,786	99.8	49,797	99.9	52,812	99.9
	소득세	23,245	50.6	27,514	55.2	29,477	55.8
	법인세	22,542	49.1	22,283	44.7	23,336	44.1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계	227	0.5	142	0.3	149	0.3
	소득세	67	0.1	43	0.1	46	0.1
	법인세	160	0.3	99	0.2	104	0.2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금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계	38	0.1	157	0.3	170	0.3
	소득세	38	0.1	157	0.3	170	0.3
	법인세	0	0.0	0	0.0	0	0.0
통합고용세액공제	계	35,903	78.2	38,112	76.5	40,208	76.1
	소득세	13,524	29.5	15,932	32.0	16,981	32.1
	법인세	22,379	48.8	22,180	44.5	23,227	43.9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계	9,609	20.9	11,378	22.8	12,276	23.2
	소득세	9,609	20.9	11,378	22.8	12,276	23.2
	법인세	0	0.0	0	0.0	0	0.0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계	10	0.0	8	0.0	9	0.0
	소득세	7	0.0	4	0.0	4	0.0
	법인세	3	0.0	4	0.0	5	0.0
개별세법상 조세지출 항목	0	0.0	0	0.0	0	0.0	
경과규정 항목	111	0.2	49	0.1	52	0.1	

주: 단위 맞춤을 위해 반올림함에 따라 표의 합계와 실제 수치가 불일치할 수 있음
 자료: 대한민국정부, 「조세지출예산서」, 2024.

- 한편 본 조세특례제도가 속해 있는 예산분류기준상 사회복지 분야의 경우 조세지출 규모가 가장 큰 분야임(<표 II-14> 참조)
 - 2023년 기준 사회복지 분야의 조세지출 실적은 23조 4,311억원으로 전체 조세지출 규모의 33.6%를 차지
 - 이는 산업·중소기업·에너지(16.0조원, 22.9%), 보건(10.6조원, 15.1%) 등의 분야와 비교해 상당히 높은 수준
 - 2024년과 2025년에 동 제도가 속한 사회복지 분야의 조세지출 규모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전체 조세지출 대비 비중은 대체로 일정하게 유지될 것으로 보임
 - 2024년 사회복지 분야의 조세지출 규모는 25조 2,584억원(35.4%)으로 전망됨
 - 2025년 사회복지 분야의 조세지출 규모는 26조 9,665억원(34.6%)으로 전망됨

<표 II -14> 예산분류기준별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원, %)

예산분류기준	2023년		2024년		2025년	
	실적	비중	전망	비중	전망	비중
일반·지방행정	93,300	13.4	93,533	13.1	95,667	12.3
공공질서 및 안전	-	-	-	-	-	-
통일·외교	6	0.0	7	0.0	7	0.0
국방	181	0.0	346	0.0	363	0.0
교육	10,150	1.5	10,460	1.5	11,270	1.4
문화 및 관광	2,596	0.4	2,887	0.4	3,048	0.4
환경	18,901	2.7	21,824	3.1	22,991	2.9
사회복지	234,311	33.6	252,584	35.4	269,665	34.6
보건	105,685	15.1	118,562	16.6	125,255	16.1
농림수산	61,709	8.8	60,989	8.5	65,581	8.4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59,708	22.9	141,834	19.9	173,632	22.3
교통 및 물류	6,777	1.0	8,208	1.1	9,367	1.2
통신	-	-	-	-	-	-
국토 및 지역개발	4,225	0.6	2,995	0.4	3,253	0.4
과학기술	114	0.0	75	0.0	78	0.0
예비비	-	-	-	-	-	-
합계	697,664	100.0	714,305	100.0	780,178	100.0

주: 공공질서 및 안전, 통신, 예비비는 해당 국세감면 항목이 없음
 자료: 대한민국정부, 「조세지출예산서」, 2024.

- 예산분류기준상 사회복지 분야 조세지출에서 본 조세특례제도와 관련된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단일 제도로서 매우 높은 수준(<표 II-15> 참조)
 -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동 제도의 조세지출 규모는 사회복지 분야 전체 조세지출의 15.3%를 차지함
 - ‘근로장려금’(4.7조원, 20.2%), ‘연금보험료공제’(4.1조원, 17.6%) 등을 제외하면 동 제도보다 지출 비중이 높은 제도를 찾기 어려움
 - 해당 비중은 2024년과 2025년 소폭 감소하되 대체로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사회복지 분야에 속한 다른 제도들에 비해 동 제도의 지출 규모 증가 속도가 상대적으로 완만할 것임을 시사

<표 II -15> 예산분류기준상 사회복지 분야 조세지출 상세 현황

(단위: 억원, %)

조세지출 항목	2023년		2024년		2025년	
	실적	비중	전망	비중	전망	비중
사회복지 항목 전체	234,678	100.0	253,013	100.0	270,121	100.0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지출 항목	112,902	48.1	127,510	50.4	134,142	49.7
(080-081) 기초생활 보장	52,309	22.3	57,930	22.9	58,420	21.6
(080-082) 취약계층 지원	1,657	0.7	1,775	0.7	1,868	0.7
(080-08A) 아동보육	0	0.0	0	0.0	0	0.0
(080-08B) 노인	0	0.0	0	0.0	0	0.0
(080-08C) 여성·가족·청소년	0	0.0	0	0.0	1,285	0.5
(080-08D) 고용	45,929	19.6	50,003	19.8	53,027	19.6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227	0.1	142	0.1	149	0.1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금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38	0.0	157	0.1	170	0.1
통합고용세액공제	35,903	15.3	38,112	15.1	40,208	14.9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9,609	4.1	11,378	4.5	12,276	4.5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10	0.0	8	0.0	9	0.0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130	0.1	147	0.1	154	0.1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12	0.0	59	0.0	61	0.0

<표 II -15>의 계속

(단위: 억원, %)

조세지출 항목	2023년		2024년		2025년	
	실적	비중	전망	비중	전망	비중
(080-08F) 고용노동일반	1,365	0.6	1,247	0.5	1,348	0.5
(080-088) 주택	3,720	1.6	4,349	1.7	4,897	1.8
(080-089) 사회복지 일반	7,922	3.4	12,206	4.8	13,297	4.9
개별세법상 조세지출 항목	121,095	51.6	124,578	49.2	134,960	50.0
(080-082) 취약계층 지원	4,569	1.9	5,137	2.0	5,517	2.0
(080-08B) 노인	6,006	2.6	6,494	2.6	6,989	2.6
(080-08C) 여성·가족·청소년	9,285	4.0	9,298	3.7	10,471	3.9
(080-08E) 노동	12,227	5.2	15,097	6.0	16,299	6.0
(080-087) 보훈	0	0.0	0	0.0	0	0.0
(080-089) 사회복지 일반	89,008	37.9	88,552	35.0	95,684	35.4
경과규정 항목	680	0.3	925	0.4	1,019	0.4
(080-08D) 고용	111	0.0	49	0.0	52	0.0
(080-088) 주택	181	0.1	483	0.2	540	0.2
(080-089) 사회복지 일반	388	0.2	393	0.2	427	0.2

주: 단위 맞춤을 위해 반올림함에 따라 표의 합계와 실제 수치가 불일치할 수 있음
 자료: 대한민국정부, 「조세지출예산서」, 2024.

- 종합소득세 신고를 기준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항목들 중 동 제도 관련 신고인원 및 공제금액은 매우 높은 편에 속함(<표 II-16> 참조)
 - 2023년 신고 기준 「고용증대세액공제」 신고인원은 9만 2,992명
 -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10만원 이하)」 등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인원
 - 2023년 신고 기준 「고용증대세액공제」 공제금액은 1조 1,191억원
 -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항목들 중 가장 높은 수준
 - 2023년 신고 기준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신고인원당 공제금액은 12.0백만원
 - 이는 「정규직 근로자 전환 세액공제」(13.2백만원)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준
 - 참고로 세액공제 전체 신고인원당 공제금액은 0.3백만원 수준
- 법인세 신고를 기준으로 세액공제 항목들 중 동 제도 관련 신고인원 및 공제금액 역시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함(<표 II-17> 참조)

- 2023년 신고 기준 「고용증대세액공제」 신고법인은 6만 8,190개
 - 이는 단일 세액공제 항목으로는 가장 많은 인원에게 해당됨
 - 단 일반법인의 경우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법인)」 신고인원이 더 많음
- 2023년 신고 기준 「고용증대세액공제」 공제금액은 1조 8,148억원
 - 이는 최저한세 적용대상 세액공제 항목들 중 가장 높은 수준
 - 단 일반법인의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보다 공제금액이 높은 세액공제 항목들이 상당수 존재
- 2023년 신고 기준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신고인원당 공제금액은 26.6백만원
 - 세액공제 전체 신고인원당 공제금액은 69.8백만원 수준으로, 법인세 신고 기준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신고인원당 공제금액은 높지 않은 편

〈표 II -16〉 「조세특례제한법」상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신고 현황

(단위: 명, 억원)

구분	2022		2023		2024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세액공제 전체	5,578,702	18,592	6,609,039	21,648	7,963,659	24,316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1,463	48	1,072	34	790	19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 세액공제	0	0	0	0	0	0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11,130	1,048	11,908	1,074	11,681	1,007
연구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47	5	63	5	31	2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5	0	4	0	2	0
생산성향상 시설투자 세액공제	149	14	98	8	68	5
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	14	1	13	0	7	0
에너지절약 시설투자 세액공제	538	14	601	29	474	12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35	3	29	1	21	1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75	3	39	1	0	0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687	53	1,459	67	1,460	44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503	38	322	21	224	12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65,866	8,898	92,992	11,191	84,907	9,559
정규직 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436	58	379	50	148	16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41,756	1,779	52,648	2,242	35,195	1,524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10만원 이하)	73,772	36	125,425	59	264,771	71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10만원 초과)	14,807	24	25,278	50	26,596	23
우리시주조합기부금세액공제	830	9	903	13	1,030	10

〈표 II -16〉의 계속

(단위: 명, 억원)

구분	2022		2023		2024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월세액 세액공제	106,902	376	140,989	697	206,849	976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4,921,908	1,105	5,824,542	1,282	6,866,739	1,455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 세액공제	27	0	13	0	19	0
성실사업자 의료비 세액공제	11,844	82	13,660	96	15,328	114
성실사업자 교육비 세액공제	31,256	250	34,263	258	35,591	258
성실사업자 월세 세액공제	328	2	345	3	350	3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202,225	2,185	226,296	2,468	230,110	2,509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74,448	1,597	35,566	801	18,210	417
기타	17,651	964	20,132	1,199	163,058	6,280

주: 1. 각 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
 2. 인원은 세액공제 항목별 신고인원
 3. 기타는 상기 열거된 세액공제 외의 공제와 폐지된 법령의 경과규정에 따라 공제받는 경우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표 II -17〉 법인세 세액공제 신고 현황

(단위: 개, 억원)

구분	전체		중소기업		일반법인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세액공제 전체	202,767	141,475	188,668	39,609	14,099
최저한세 적용제외 세액공제	57,573	67,112	55,143	16,542	2,430	50,570
최저한세 적용대상 세액공제	145,194	74,363	133,525	23,067	11,669	51,296
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	1,469	161	1,436	148	33	13
상생결재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119	38	87	14	32	2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기금출연 세액공제	134	408	2	0	132	408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1,602	8,909	5	0	1,597	8,908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98	9,226	1	1	97	9,226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24	11,936	0	0	24	11,936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18	0	18	0	0	0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0	0	0	0	0	0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12	76	4	17	8	59
벤처기업등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606	652	303	70	303	581
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 인수세액 공제	0	0	0	0	0	0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602	116	594	109	8	6
일반 통합투자세액공제	10,618	10,332	8,894	3,980	1,724	6,352
신성장, 원천기술 통합투자세액공제	41	38	25	26	16	12
국가전략기술 통합투자세액공제	19	7,432	7	7	12	7,425
연구시험용 시설 및 직업훈련용 시설투자 세액공제	60	67	27	3	33	64

〈표 II-17〉의 계속

(단위: 개, 억원)

구분	전체		중소기업		일반법인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에너지절약 시설투자 세액공제	975	433	902	134	73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132	242	99	123	33	119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 세액공제	38	7	25	5	13	2
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	52	71	23	9	29	61
생산성향상 시설투자 세액공제	434	833	305	89	129	743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투자 세액공제	11	15	6	8	5	6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투자 세액공제	2	23	1	0	1	23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93	319	56	61	37	258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214	175	151	43	63	132
산업수요맞춤형고등졸업자복지 중소기업 세액공제	11	2	8	2	3	0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 세액공제	118	9	102	8	16	1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397	51	277	27	120	24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1,243	160	1,131	103	112	57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384	88	362	41	22	46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68,190	18,148	65,492	14,027	2,698	4,122
통합고용세액공제	4	2	3	0	1	2
정규직 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461	210	315	102	146	108
고용유지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43	3	42	2	1	1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51,267	3,947	51,198	3,856	69	91
중소기업 사회보험 신규가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365	12	365	12	0	0

〈표 II -17〉의 계속

(단위: 개, 억원)

구분	전체		중소기업		일반법인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1	0	1	0	0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법인)	4,749	2	742	1	4,007	1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세무법인)	455	27	435	26	20	1
제3자 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22	4	15	3	7	1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세액공제	1	0	1	0	0	0
대학 등 기부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0	0	0	0	0	0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재학생 현장훈련수당 세액공제	7	0	6	0	1	0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비용 세액공제	6	3	1	0	5	3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	32	23	18	1	14	22
우수선화주인증국제물류주선업자 세액공제	6	24	3	2	3	22
금사업자와 스크랩 등 사업자의 수입금액증가에 대한 세액공제	57	31	36	5	21	27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0	0	0	0	0	0
기타	2	111	1	0	1	110

주: 1. 2023년 법인세 신고 기준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이며, 일반법인은 그 외의 법인

3. 기타는 상기 열거된 세액공제 외의 공제와 폐지된 법령의 경과규정에 따라 공제·감면 받는 경우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24.

Ⅲ. 타당성 분석



Ⅲ. 타당성 분석

- 본 장에서는 이하 열거된 순으로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대상으로 타당성 평가를 수행하도록 함
 - 첫째, 정부 개입(지원)의 타당성
 - 최근 우리나라 노동시장 현황 및 기업 문화 검토 등을 통해 정부 개입(지원)의 타당성을 평가
 - 둘째, 지원방식의 적절성
 - 정책대상, 정책수단, 정책설계 등의 측면에 초점을 두고 본 특례제도의 설계·운영상 적절성을 다면적으로 평가
 - 셋째, 유사·중복 가능성
 - 본 제도 도입·운영의 목적과 유사한 정책목표를 지닌 제도들을 폭넓게 살펴봄으로써 유사·중복의 문제를 점검

1. 지원의 타당성

- 본 절에서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운영을 통한 정부지원(개입)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노동시장 현황과 육아휴직 사용률 및 복귀율 등을 검토
 - 노동시장 현황은 실업률·고용률·경제활동참가율 등의 양적 측면과 전체 임금 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 등의 질적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봄

가. 노동시장 현황

1) 양적 측면

- 최근 10년간(2015~2024년) 연령대별 실업률,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추이는 <표 III-1>에 제시된 바와 같음
 - (실업률) 2024년 전체 실업률은 2.8%로, 2020년 4.0% 대비 1.2%p 낮음

- 분석 기간 실업률의 감소 추이는 6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됨
- 60세 이상의 경우 2024년 실업률이 2.9%를 기록, 전년 대비 0.3%p 상승함
- (고용률) 2024년 전체 고용률은 62.7%로, 2020년 대비 2.6%p 높음
 - 분석 기간 고용률 추이는 연령대별로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가령 15~29세, 30~39세, 60세 이상 고용률은 10년간 대략 5%p 상승한 반면, 40~49세 고용률은 코로나19 시기 소폭 감소 후 예년 수준으로 회복됨
- (경제활동참가율) 2024년 전체 경제활동참가율은 64.5%로, 2020년 대비 2.0%p 높음
 - 분석 기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역시 연령대별로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가령 40~49세 경제활동참가율은 대체로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된 반면, 60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은 큰 폭(7.2%p)으로 증가함

〈표 III-1〉 연령대별 실업률·고용률·경제활동참가율: 2015~2024년

(단위: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실업률	전체	3.6	3.7	3.7	3.8	3.8	4.0	3.7	2.9	2.7	2.8
	15~29	9.1	9.8	9.8	9.5	8.9	9.0	7.8	6.4	5.9	5.9
	30~39	3.1	3.1	3.3	3.4	3.3	3.5	3.3	2.7	2.6	2.7
	40~49	2.3	2.1	2.1	2.5	2.3	2.5	2.4	2.0	1.9	1.9
	50~59	2.4	2.3	2.2	2.5	2.5	2.9	2.6	1.7	1.7	1.8
	60 이상	2.5	2.7	2.9	3.1	3.4	3.6	3.8	2.8	2.6	2.9
고용률	전체	60.5	60.6	60.8	60.7	60.9	60.1	60.5	62.1	62.6	62.7
	15~29	41.2	41.7	42.1	42.7	43.5	42.2	44.2	46.6	46.5	46.1
	30~39	74.4	74.7	75.3	75.7	76.0	75.3	75.3	77.3	78.9	80.1
	40~49	79.1	79.3	79.4	79.0	78.4	77.1	77.3	78.1	78.6	79.1
	50~59	74.4	74.3	75.3	75.2	75.4	74.3	75.1	77.1	77.7	77.5
	60 이상	39.0	39.5	39.9	40.1	41.5	42.4	42.9	44.5	45.5	45.9
경제활동참가율	전체	62.8	62.9	63.2	63.1	63.3	62.5	62.8	63.9	64.3	64.5
	15~29	45.3	46.3	46.7	47.1	47.8	46.4	47.9	49.8	49.4	48.9
	30~39	76.7	77.1	77.8	78.3	78.6	78.0	77.8	79.5	81.0	82.3
	40~49	81.0	81.0	81.1	81.0	80.2	79.1	79.2	79.7	80.1	80.6
	50~59	76.2	76.1	77.0	77.1	77.4	76.6	77.1	78.4	79.1	78.9
	60 이상	40.1	40.5	41.1	41.4	43.0	44.0	44.5	45.8	46.7	47.3

주: 1.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 대비 실업자의 비율(%)

2. 고용률은 15세 이상 인구 대비 취업자의 비율(%)

3. 경제활동참가율은 15세 이상 인구 대비 경제활동인구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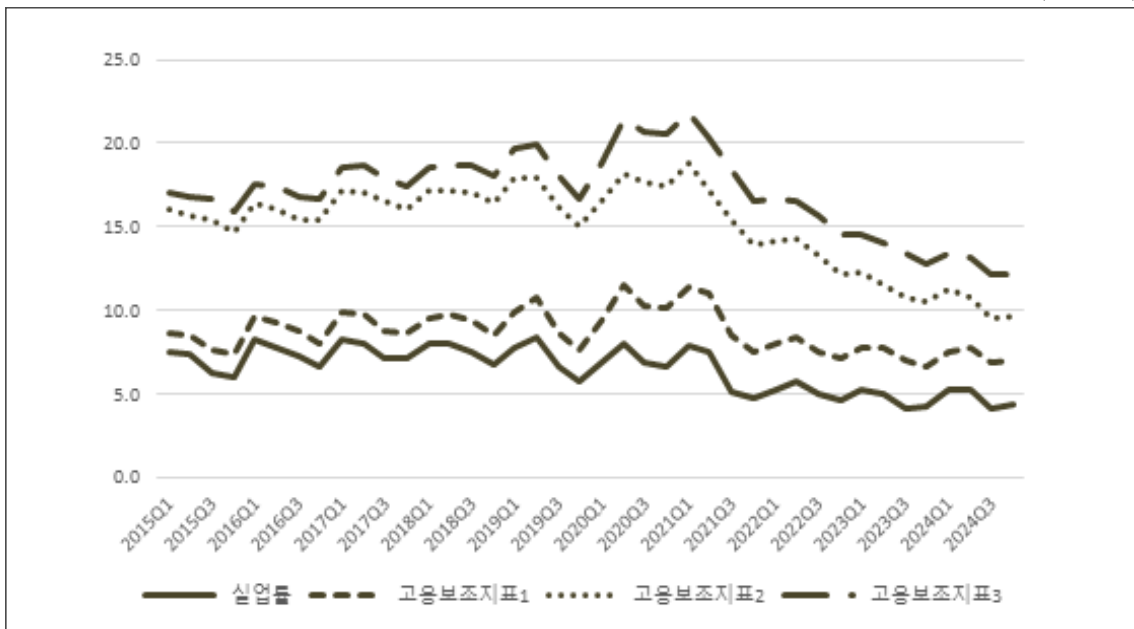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 한편 최근 10년간(2015~2024년) 청년(15~34세) 실업률 및 고용보조지표 추이는 [그림 III-1]에 도해된 바와 같음

-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청년 실업률 및 고용보조지표는 코로나19 시기 전후 악화되었으나, 이후 양호한 흐름으로 전환됨
 - 구체적으로 2019년 2분기 청년 실업률은 8.4%를 기록한 바 있으나, 2024년 4분기 현재 4.3% 수준으로 낮아짐
 - 고용보조지표3의 경우 2021년 1분기 21.8%로 분석 기간 최대치를 기록한 바 있으나, 2024년 4분기 현재 12.2%로 집계됨

[그림 III-1] 청년(15~34세) 실업률 및 고용보조지표: 2015~2024년

(단위: %)



- 주: 1. 실업률=100×실업자/경제활동인구
 2. 고용보조지표1=100×(실업자+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경제활동인구
 3. 고용보조지표2=100×(실업자+잠재경제활동인구)/(경제활동인구+잠재경제활동인구)
 4. 고용보조지표3=100×(실업자+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잠재경제활동인구)/(경제활동인구+잠재경제활동인구)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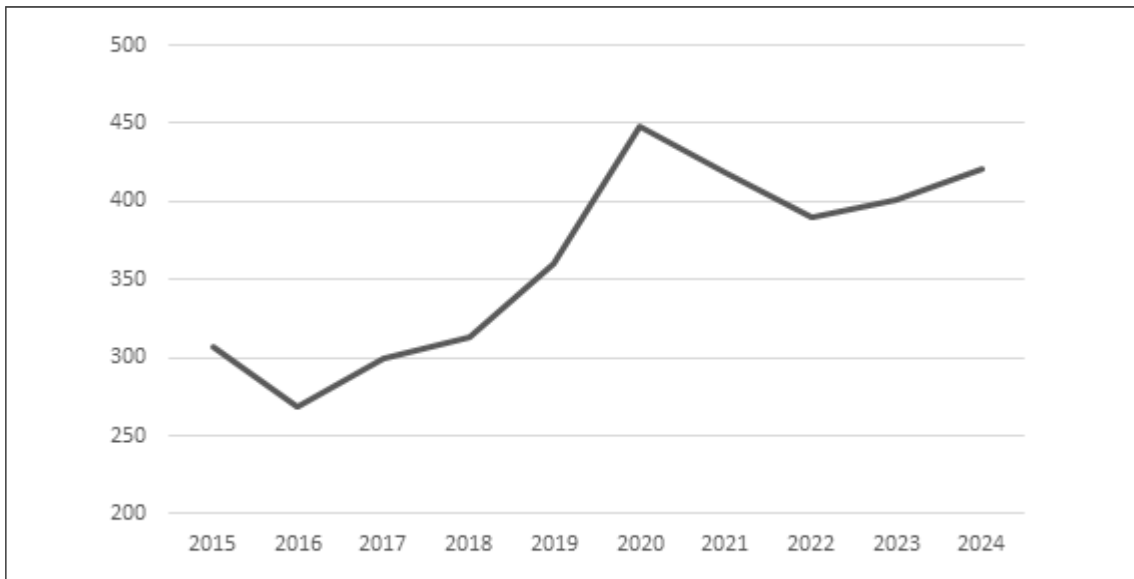
□ 다만 이상의 청년 고용지표의 양호한 흐름과 함께, 청년(15~29세)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가 증가하고 있음에 정책적 관심을 기울일 필요

- 2024년 청년(15~29세) ‘쉬었음’ 인구는 2016년 대비 15.2만명 증가한 42.1만명 ([그림 III-2] 참조)

- 이는 코로나19 당시 44.8만명에 비해 적은 규모이나 최근 10년간 청년(15~29세) ‘쉬었음’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임에 주목할 필요
- 교육·훈련 등이 동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이 단순 지체 될 경우 청년 개인 및 사회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바, 해당 원인 파악 및 해소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그림 III-2] 청년(15~29세) ‘쉬었음’ 인구 추이: 2015~2024년

(단위: 천명)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2) 질적 측면

- 최근 10년간(2015~2024년)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의 추이는 <표 III-2>에 제시된 바와 같음
 - 전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의 수와 비중 모두 증가하는 추세
 - 2024년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38.2%인 845.9만명
 - 이는 2015년과 비교해 215.1만명(5.8%p) 증가한 규모임
 - 동 기간 청년(15~34세)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의 수와 비중 역시 증가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2015년 청년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178.8만명이었으나, 2024년 현재 216.0만명 수준

- 임금근로자 중 비중으로는 2015년 28.9%에서 2024년 35.7%로 6.8%p 증가함
- 비정규직 일자리는 고용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인적자본 축적이 저해될 수 있다는 점에서 통상 양질의 일자리로 분류되기 어려움
- 따라서 노동시장 양적 지표와 달리 질적 지표에는 개선의 여지가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표 III-2>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 추이: 2015~2024년

(단위: %, 천명)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전체	비중 ¹⁾	32.4	32.8	32.9	33.0	36.4	36.3	38.4	37.6	37.0	38.2
	비정규직	6,308	6,481	6,578	6,614	7,481	7,426	8,066	8,157	8,122	8,459
	한시직	3,655	3,671	3,725	3,823	4,785	4,608	5,171	5,348	5,259	5,628
	시간제	2,236	2,488	2,663	2,709	3,156	3,252	3,512	3,688	3,873	4,256
	비전형	2,229	2,245	2,112	2,071	2,045	2,073	2,278	2,131	1,957	1,903
	임금근로자	19,474	19,743	20,006	20,046	20,559	20,446	20,993	21,725	21,954	22,143
청년 ²⁾	비중 ¹⁾	28.9	29.4	30.0	29.4	33.8	33.4	34.9	34.2	34.0	35.7
	비정규직	1,788	1,785	1,800	1,721	2,015	1,920	2,061	2,091	2,094	2,160
	한시직	1,118	1,092	1,033	1,036	1,295	1,160	1,315	1,364	1,307	1,403
	시간제	704	756	834	773	910	896	967	990	1,033	1,133
	비전형	302	281	248	250	275	286	332	264	243	251
	임금근로자	6,179	6,073	6,002	5,865	5,957	5,748	5,904	6,112	6,156	6,051

주: 1) 비중은 임금근로자 수 대비 비정규직 근로자 수로 계산됨

2) 청년은 15~34세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나. 육아휴직 사용률 및 복귀율

- 이하에서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추가공제 관련 정부지원(개입)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육아휴직 사용률 및 복귀율 통계를 검토
- 제II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소·중견기업이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를 복직시킬 경우, 해당 직원에 대해 자녀 1명당 한 차례에 한정하여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허용

- 2015~2023년 기업체 규모별 출생아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률 추이는 <표 III-3>에 제시되어 있음
- 2023년 출생아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부 7.4%, 모 73.2%
 - 이는 2015년 대비 각각 6.8%p 및 14.1%p 증가한 수치임
 - 그러나 기업체 규모별 출생아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률 격차는 여전히 존재
 - 2023년 기준 300명 이상 기업체 부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9.6%로, 4명 이하 기업체 부의 육아휴직 사용률(3.9%)보다 5.7%p 높음
 - 2023년 기준 300명 이상 기업체 모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79.9%로, 4명 이하 기업체 모의 육아휴직 사용률(41.2%)보다 38.7%p 높음
 - 모의 경우 해당 격차는 2021년 47.7%p에 달하였으나, 4명 이하 기업체 출생아 모의 육아휴직 사용률 증가로 다소 완화된 양상을 보임
 - 반면 부의 경우 300명 이상 기업체 출생아 부의 육아휴직 사용률 증가로 해당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표 III-3> 기업체 규모별 출생아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률: 2015~2023년

(단위: %)

시점	성별	계	300명 이상	50~299명	5~49명	4명 이하	미상
2015	전체	19.1	25.0	13.9	13.4	10.8	15.7
	부	0.6	0.9	0.5	0.3	0.5	0.6
	모	59.1	68.7	57.4	44.5	32.8	37.5
2016	전체	20.0	26.2	14.8	13.8	10.4	15.8
	부	0.9	1.3	0.6	0.5	0.7	0.9
	모	60.4	70.7	60.0	45.1	30.3	36.4
2017	전체	21.6	28.0	17.0	15.0	10.7	13.4
	부	1.8	2.6	1.1	0.9	1.2	0.9
	모	62.2	72.5	64.8	46.7	30.1	33.4
2018	전체	22.5	29.6	18.6	15.8	10.1	14.3
	부	2.4	3.6	1.7	1.1	1.1	1.5
	모	62.9	74.4	67.8	47.8	27.0	30.7
2019	전체	24.0	30.5	20.9	17.8	11.3	13.1
	부	3.0	4.3	2.4	1.6	1.7	2.0
	모	64.6	75.4	70.6	51.5	28.6	27.1
2020	전체	25.5	31.7	22.8	19.6	11.8	16.5
	부	3.6	5.1	3.0	2.0	1.7	2.3
	모	65.7	75.6	72.7	53.8	29.4	31.9

<표 III-3>의 계속

(단위: %)

시점	성별	계	300명 이상	50~299명	5~49명	4명 이하	미상
2021	전체	27.0	32.9	24.8	21.1	11.8	14.2
	부	4.3	6.0	3.4	2.3	1.9	2.4
	모	66.9	76.5	74.8	54.9	28.8	30.2
2022	전체	31.2	36.2	29.9	26.4	17.1	17.6
	부	7.1	9.2	5.9	4.5	4.4	3.2
	모	71.1	78.7	79.7	62.7	36.7	35.1
2023	전체	32.9	37.4	32.3	29.7	18.8	13.8
	부	7.4	9.6	6.6	4.8	3.9	2.9
	모	73.2	79.9	81.6	67.0	41.2	39.5

주: 2023년은 잠정치
 자료: 통계청, 「육아휴직통계」, 각 연도.

- 한편 「2022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육아휴직 대상자로서 육아휴직 활용 후 직장에 복귀한 비율은 54.3%로 집계됨⁸⁾
 - 이는 2019년(43.2%) 대비 11.1%p 증가한 수치
 - 육아휴직 사용 후 미복귀 사유로는 자녀양육과 일 병행의 어려움(39.9%), 믿고 돌봐줄 양육자 부재(29.7%), 믿고 맡길 시설 부재(10.7%) 등이 지목됨
 - 25~34세 및 35~44세는 자녀양육과 일 병행의 어려움을, 45~54세는 믿고 돌봐줄 양육자의 부재를 미복귀 사유로 가장 많이 언급함(<표 III-4> 참조)

<표 III-4> 연령별 육아휴직 활용 후 복귀 비율 및 미복귀 사유

(단위: %)

구분(기혼여성)		25~54세			
		25~34세	35~44세	45~54세	
육아휴직 활용 후 복귀 비율		54.3	49.8	52.6	66.4
미복귀 사유	출산 후 건강회복이 안 되어서	5.6	9.5	5.2	0.0
	믿고 맡길 시설이 없어서	10.7	6.4	10.5	20.1
	믿고 돌봐줄 양육자 없어서	29.7	29.6	25.2	52.3
	휴직 후 회사의 분위기 등 달라서	7.6	7.9	8.9	0.0
	자녀양육과 일 병행이 힘들어서	39.9	33.2	45.0	27.6
	기타	6.5	13.4	5.2	0.0

자료: 여성가족부(2023. 6. 1.)

8) 여성가족부(2023. 6. 1.)

다. 소결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노동시장의 양적 지표는 비교적 양호한 편
 - 코로나19 시기 전후 악화되었던 실업률·고용률·경제활동참가율 등의 지표는 2024년 현재 회복된 양상을 나타냄
 - 단 해당 양적 지표들의 추이에 연령별 이질성은 존재하며, 청년 비경제활동 인구 중 '쉬었음' 인구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따라서 고용의 양적 증대를 주요 목표로 하는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운영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 할 수 있음
 - 다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5년 이후 연도별 비정규직 근로자 수와 비중 모두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노동시장의 질적 지표에는 개선의 여지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됨

- 한편 육아휴직 사용률은 증가하고 있으나 기업체 규모별 사용률 격차는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육아휴직 활용 후 복귀 비율 역시 여전히 제한적
 - 복귀율 제고를 위해서는 자녀양육과 일 병행의 어려움 해소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됨
 - 따라서 육아친화적인 기업 문화 조성 유도를 위한 정부 지원에는 일정 수준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음

2. 지원의 적절성

- 본 절에서는 정책대상, 정책수단, 정책설계 등의 측면에서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설계·운영상 적절성을 다면적으로 평가
 - (정책대상) 동 제도의 주요 정책대상은 중소기업으로 설정되어 있는바, 그 적절성 등에 대한 검토를 수행
 - (정책수단) 기업의 고용 창출 유도 및 육아휴직 복귀자 고용 안정성 제고에 있어 조세지원이 재정지원에 비해 우월한 방식인지 등에 대한 검토를 수행
 - (정책설계) 동 제도의 설계 측면에서 (잠재적인) 문제점 및 개선방향 등에 대한 검토를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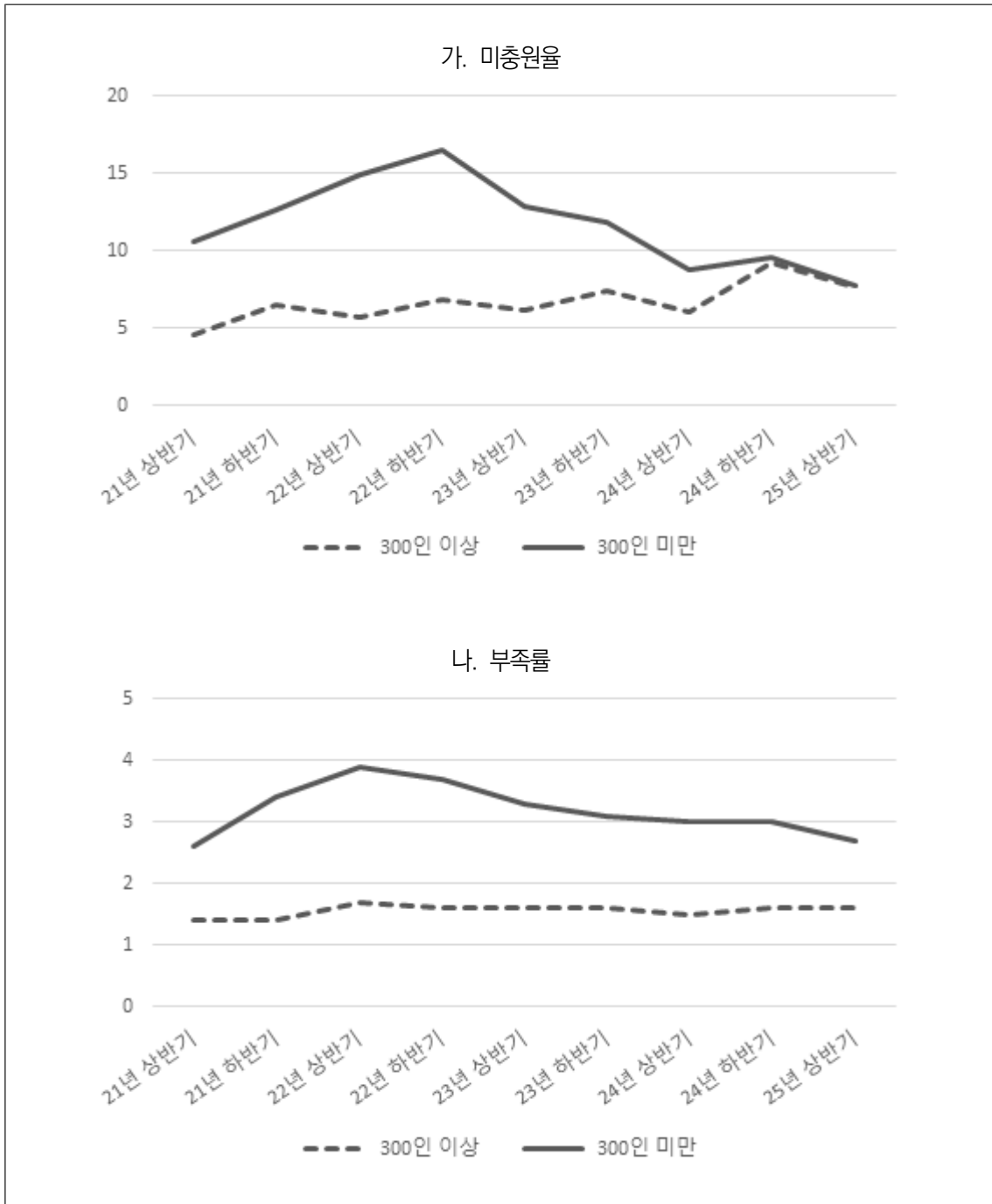
가. 정책대상 측면

- 제II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 제도는 기업 규모 및 소재지, 채용대상에 따라 공제 여부 및 정도를 선별적·차등적으로 적용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기업 규모가 작거나 소재지가 지방일 경우, 또는 청년·고령자·경력 단절자 등 취업취약계층 채용 시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공제액이 적용됨
 - 반면 대기업이 그 외 상시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기본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육아휴직 복귀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추가공제가 적용되지 않음
 - 이는 고용 관련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중소기업이나 취업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을 일정 수준 표적화한 것으로, 현 선별·차등 지원 방식은 대체로 그 적절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음

- 실제로 300인 미만 사업체의 미충원율 및 부족률은 300인 이상 사업체와 비교해 대체로 높은 수준([그림 III-3] 참조)
 - 2021년 상반기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300인 미만 사업체의 미충원율(부족률)은 평균 11.7%(3.2%)인 반면, 300인 이상 사업체의 미충원율(부족률)은 6.7%(1.6%)
 - 단 최근 기업 규모별 미충원율 격차는 상당 수준 해소된 것으로 나타남

[그림 Ⅲ-3] 기업 규모별 미충원율 및 부족률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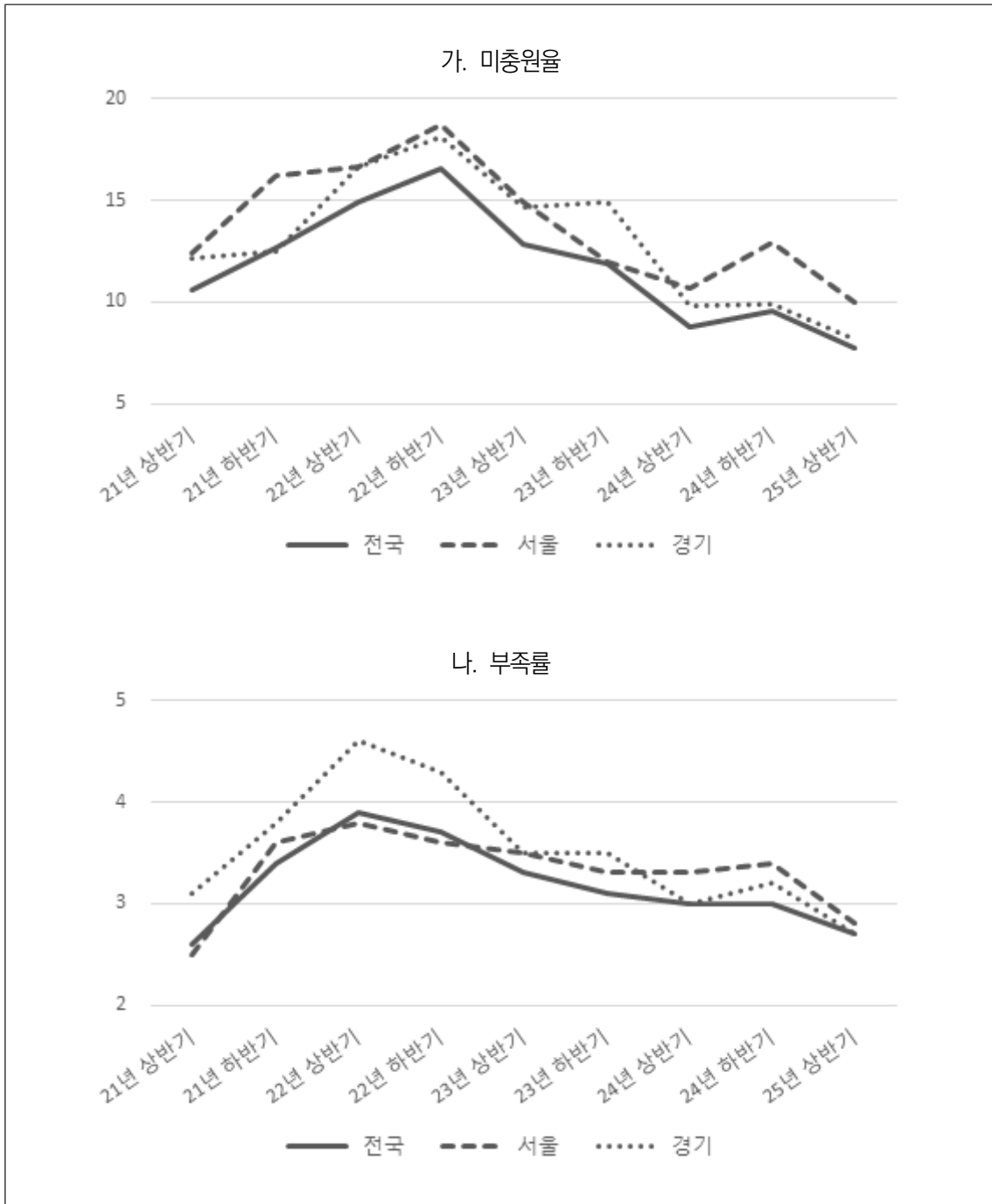
주: 1. 미충원율은 구인인원 대비 미충원인원의 비율(%)

2. 부족률은 현원과 부족인원의 합 대비 부족인원의 비율(%)

자료: 고용노동부,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각 반기.

[그림 Ⅲ-4] 기업(300인 미만) 소재지별 미충원율 및 부족률 추이

(단위: %)



주: 1. 미충원율은 구인인원 대비 미충원인원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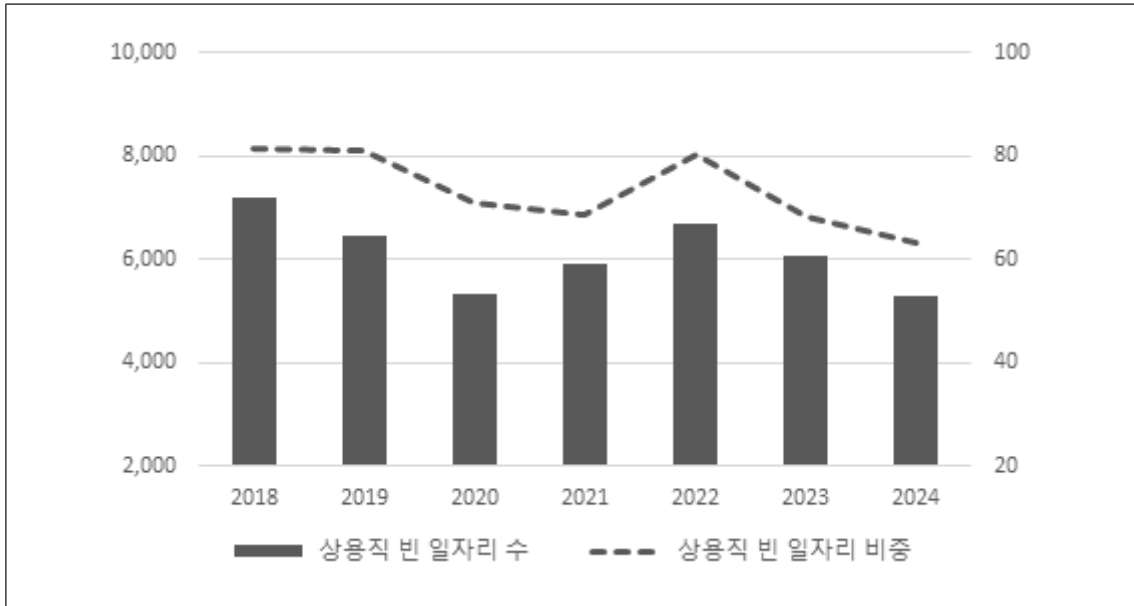
2. 부족률은 현원과 부족인원의 합 대비 부족인원의 비율(%)

자료: 고용노동부,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각 반기.

- 한편 서울·경기 소재 300인 미만 사업체의 미충원을 및 부족률은 전국 대비 유사하거나 더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그림 III-4] 참조)
 - 이는 비수도권(지방)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공제액 우대·차등 적용이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시사
 - 단 미충원을 및 부족률이 경기에 따른 노동수요의 (일시적) 확대에 상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기업 소재지별 공제액 차등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히 접근할 필요

[그림 III-5] 300인 이상 기업 상용직 빈 일자리 추이: 2018~2024년

(단위: 명, %)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각 연월.

- 끝으로 최근 300인 이상 기업을 중심으로 상용직 빈 일자리 수가 감소하는 추세임이 지적될 필요가 있음
 - 「사업체노동력조사」상 2022년 300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직 빈 일자리 수는 6,707개였으나, 2023년 6,080개, 2024년 5,295개로 집계됨
 - 그에 따라 전체 빈 일자리에서 상용직 빈 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지속적으로 감소 중([그림 III-5] 참조)
 - 2022년 80.5%, 2023년 68.4%, 2024년 63.2%
 - 이는 노동시장 내 매칭 효율성의 증가로 300인 이상 기업의 상용직 빈 일자리가

빠르게 채워진 결과일 수도 있으나, 300인 이상 기업의 상용직 빈 일자리 창출 여력이 부족하여 관찰되는 결과일 수도 있음

- 따라서 그 원인에 대한 면밀한 파악·분석 및 그에 따른 정책적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임

나. 정책수단 측면

□ 동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명시된 기업 대상 고용 관련 세제지원으로, 재정 지원 대비 다음과 같은 장점을 지님

- 첫째, 수혜 요건을 만족하는 기업을 폭넓게 지원할 수 있음
 - 재정지원과 달리 예산 한도가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수혜 요건을 만족하는 기업을 사실상 모두 지원할 수 있음
 - 또한 예산 집행률 등에 구속되지 않으므로, 비효율적 지출의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음
- 둘째, 지원의 보편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경영 성과가 양호한 기업들을 겨냥하여 일자리 창출 및 유지를 유도할 수 있음
 - 이월공제가 허용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일정 수준의 산출세액이 발생하는 기업들의 고용 유인을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유지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
- 셋째, 일반적으로 제도 운영 관련 행정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음
 - 수혜 요건을 만족하는 기업이 소득세·법인세 신고 시 공제 양식을 작성하여 과세관청에 제출하는 것으로 지원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으므로, 제도 운영과 관련된 행정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소요됨
 - 단 공제 양식 작성 및 검증 절차 등이 복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나치게 높은 납세협력비용으로 세제지원의 상대적 장점이 무색해질 수 있음

□ 반면 세제지원 방식은 재정지원 방식과 비교해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닐 수 있음

- 첫째, 기업들이 체감하는 지원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실제 비용 발생 시점과 지원 시점 간 시차가 상당할 수 있음

- 산출세액이 크지 않을 경우 당기 공제액 규모가 크지 않을 수 있음
 - 또한 고용(채용) 비용 발생 시점과 소득세·법인세 납부 시점 간 시차로 인해 지원의 적시성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음
 - 둘째, 지원 대상을 선별하고 표적화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움
 - 제도를 전담하는 부서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법령상 지원 대상 및 요건 등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구체화하기 어려움
 - 셋째, 지출 총량의 관리가 상대적으로 어려움
 - 수혜 요건을 충족시킬 기업의 수를 사전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우며, 해당 기업들의 수가 급증할 경우 과도한 조세지출 증가로 이어질 여지가 있음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정지원 대비 조세지원 방식의 장단점이 존재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현 방식의 적절성이 일정 수준 인정됨
- 경영 성과가 양호한 기업들에 있어 실제 비용 발생 시점과 지원 시점 간 시차의 문제는 크지 않을 수 있음
 - 또한 재정지원을 보완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세제지원의 사각지대 문제를 일정 수준 해소할 수 있음
 - 다만 이상의 평가는 정성적 판단에 근거한 것으로, 향후 구체적인 자료 등에 기반한 정량적 분석을 통해 재정지원 대비 세제지원의 장단점을 엄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

다. 정책설계 측면

1) 고용 증감 판별

-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청 및 수혜를 위해서는 상시근로자 수 증가가 전제되어야 하는바,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식이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지적이 있음⁹⁾
- 가령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는 0.5명 또는 0.75명의 상시근로자로 간주되고 있으나,¹⁰⁾ 실무상 검증의 어려움과 계산의 복잡성으로 반영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음

9) 이하 내용은 전문가 자문(<부록 2> 참조)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

1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 제2호 및 제11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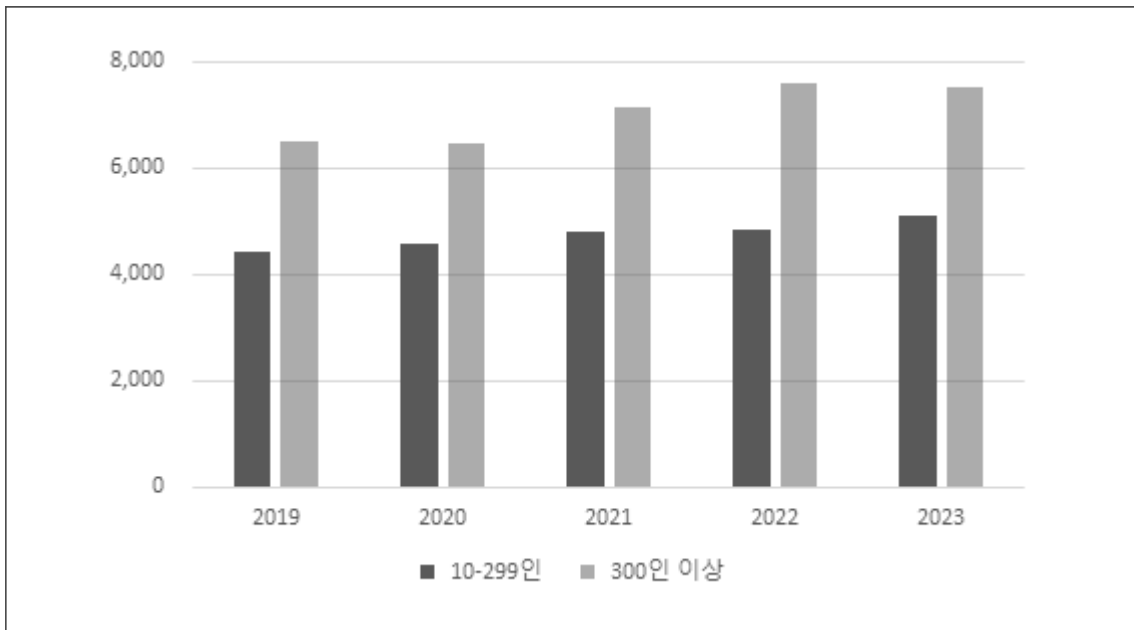
- 또한 청년 여부가 해당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판별됨에 따라 채용 당시 청년이었던 자의 고용이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 수가 감소할 수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와 같이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식 등이 지나치게 복잡할 경우 기업들의 제도 활용 유인을 저해시킬 수 있으므로,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식을 단순화·합리화할 필요가 있음

2) 공제액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동 제도의 공제액은 기업 규모 및 소재지, 채용대상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되고 있는바, 저임금 일자리(근로자)에 상대적으로 높은 보조율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설계방식의 타당성이 일정 수준 인정됨

[그림 III-6] 기업 규모별 노동비용총액 추이: 2019~2023년

(단위: 천원)



자료: 고용노동부, 「기업체노동비용조사」, 각 연도.

- 2023년 기준 10~299인 기업체의 노동비용총액(5,085.9천원)은 300인 이상 기업체의 70% 수준 이하인 것으로 나타남([그림 III-6] 참조)

-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동 제도의 보조율은 13.9~23.8% 수준으로 단순 계산될 수 있는바, 이는 대기업에 (청년 등 채용 시) 적용되는 보조율 4.4%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 할 수 있음

3) 공제 기간

- 「통합고용세액공제」의 기본공제 적용 기간은 기업 규모에 따라 2~3년으로 설정되어 있는바, 일정 수준의 고용안정성을 지닌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적절성이 인정될 수 있음
 - 공제 기간이 현행보다 단축될 경우 기업들의 저임금 단기 일자리 창출 유인이 증가할 수 있음
 - 반면 공제 기간이 현행보다 연장될 경우 노동시장의 효율성이 저해되고 동 제도의 비용효율성이 낮아질 수 있음
- 한편 동 제도의 추가공제 적용 기간은 1년으로 설정되어 있는바, 제도 운영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4) 사후관리

- 제Ⅱ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초 공제 과세연도의 2년 이내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와 비교해 감소한 경우,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함
 - 추가공제의 경우 육아휴직 복귀일로부터 2년 내 근로관계 종료 시 해당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세액의 상당액을 소득세·법인세로 납부
- 앞서 언급한 고용 증감 판별 방식의 복잡성과 사후관리의 존재 등은 공제 수혜여부와 관련된 불확실성을 증대시켜 기업들의 제도 활용을 어렵게 만들 수 있음
 - 실제로 최근 정기신고 시 동 제도를 신청하기보다 경정청구로 동 제도를 활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바(<표 Ⅲ-5> 참조), 사후관리 규정 폐지 내지 개선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 사후관리 규정 폐지 시에는 기업들의 고용유지 유인 제고를 위한 보완책이 함께 마련될 필요

<표 III-5> 법인세 경정청구 추이

(단위: 천건)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전체	6.3	7.4	10.2	13.8	16.6	26.2
고용증대세액공제 등 ¹⁾	0.2	0.5	2.5	6.5	9.0	17.5

주: 1) 「고용증대세액공제」 및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자료: 이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2024. 11., p. 338.

- 한편 현행 사후관리 규정에 따르면 고용 인원이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공제 적용이 전면 중단됨
 - 이에 따라 공제 대상 고용 증가 인원이 일부 감소한 경우에도 잔여 고용 증가분에 대한 공제 역시 중단되는 구조임
 - 그러나 경정청구로 동 제도 신청 시 이와 같은 사후관리 규정을 사실상 피할 수 있어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 따라서 고용 증가 인원이 일부 감소한 경우에도 잔여 고용 증가분에 대한 공제 혜택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당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5) 운영 기간

-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지난 2023년 통합·신설되었으나, 그 전신이라 할 수 있는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까지 고려할 경우 특례제도로써 동 제도의 운영 기간은 상당한 편임
 - 「고용증대세액공제」는 2018년 신설,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는 2016년 신설
- 고용 관련 세제지원이 장기화될 경우 기업들은 해당 세제지원을 항구화된 제도로 인식할 수 있으며, 이는 조세지출의 비용효율성을 낮추게 됨
 - 실제로 Cahuc et al.(2019), 최인혁·문지웅(2023)은 구조모형을 활용한 반사실적 정책실험을 통해 고용 지원 정책의 효과가 효율적으로 발현되기 위해서는 해당 제도가 한시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음을 밝힘

- 따라서 동 제도의 관성적인 일몰 연장을 경계하는 가운데, 장기적으로는 경기 상황 등에 따른 탄력적·한시적 운영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라. 소결

- 이상에서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설계·운영과 관련된 적절성을 정성적으로 평가
 - 공제액 또는 공제 기간 측면에서의 적절성은 일정 수준 인정됨
 - 반면 고용 증감 판별 방식, 사후관리, 운영기간 등의 측면에서는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현행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식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으며, 사후관리 규정 등의 보완을 통해 제도 설계상 불합리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 구체적인 제도 개선방안 등에 대해서는 제V장에서 논의하기로 함

3. 지원의 중복성

- 본 절에서는 「통합고용세액공제」 도입·운영의 목적과 유사한 정책목표를 지닌 제도들을 폭넓게 살펴봄으로써 유사·중복의 문제를 점검
 - 유사·중복성이 높은 제도가 존재할 경우 제도 간 통폐합 등을 통해 해당 제도들의 효과성 및 지출 측면에서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필요
- 세제지원 측면에서 「통합고용세액공제」와 유사한 제도는 발견하기 어려움
 - 제II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과 함께 사실상 「조세특례제한법」상 고용지원 분야 조세지출의 전체를 구성하고 있음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의 경우 고용지원 세제지원에 속하긴 하나 노동 수요자가 아닌 공급자에 대한 지원이라는 점에서 동 제도와는 정책 목표 및 대상 등에 차이가 있음
 - 보다 넓은 범주에서 「근로장려금」(「조세특례제한법」 제10절의2) 역시 고용지원 세제지원에 속한다고 볼 수도 있으나 정책목표 및 대상 등의 측면에서 동 제도와 유사·중복성은 제한적임

- 반면 동 제도와 유사 목적을 지닌 재정지원들은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됨¹¹⁾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① 15~34세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후 6개월 이상 유지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②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후 6개월 이상 유지한 빈 일자리 업종 우선 지원대상기업에 1년간 최대 720만원, 해당 청년에게 2년간 최대 480만원(18개월 이상 재직 시) 지원
 - (고령자고용지원금) 60세 이상 근로자를 3년 평균 대비 초과 고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등에 1인당 분기별 30만원을 최대 2년간 지원
 - (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 육아휴직 지원금(월 3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월 30만원), 대체인력 지원금(월 120만원), 업무분담 지원금(월 최대 20만원) 등으로 구성됨

- 따라서 세제지원과 재정지원 간 중복지원 배제 등 지출효율화의 여지가 존재함
 - 가령 60세 이상 상시근로자 수 증가로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수혜 중인 기업에 대해서는 고령자고용지원금 지급을 배제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또한 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과 중복성이 상당한 육아휴직 복귀자 관련 추가공제 폐지를 검토해 볼 여지도 존재함

- 다만 재원절감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중복지원 배제 및 제도 간 통폐합은 지양될 필요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적시성과 선별성 등의 측면에서 재정지원은 세제지원 대비 우위를 지님
 - 따라서 세제지원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현 재정지원을 재구조화하는 등 고용 지원이라는 공통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제도별 역할 및 기능을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세제지원과 재정지원의 수혜 여부를 통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행정자료 등이 우선 구축될 필요

11) 이하 내용은 고용노동부(2025) 및 고용노동부(2025. 1.)를 참조하여 작성

4. 요약 및 소결

- 이상에서 정부지원(개입)의 필요성, 지원방식의 적절성, 유사·중복의 가능성 측면에서 「통합고용세액공제」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수행함
 - (정부 개입의 필요성: 기본공제) 최근 노동시장의 양적 지표는 비교적 양호한 편으로, 제도 확대·운영의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
 - 다만 2015년 이후 연도별 비정규직 근로자 수와 비중 모두 증가하는 추세로, 노동시장 질적 지표에는 개선의 여지가 존재함
 - (정부 개입의 필요성: 추가공제) 육아친화적인 기업 문화 조성 유도를 위한 정부 지원에는 일정 수준의 타당성이 인정됨
 - 출생아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증가 추세이나 기업 규모별 격차는 여전한 (2023년 기준 300명 이상 기업 출생아 모 80%, 4명 이하 기업 41%)
 - (지원방식의 적절성) 정책대상, 정책수단, 정책설계 등의 측면에서 타당성 평가를 수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정책 대상) 고용 관련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중소·중견 기업을 우대하여 지원하는 현 방식은 그 적절성이 대체로 인정됨
 - (정책 수단) 제도 운영 관련 행정비용이 상대적으로 낮고 경영 성과가 양호한 기업들을 겨냥하여 일자리 창출 및 유지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 조세지원 방식의 적절성이 일정 수준 인정됨
 - (정책 설계) 현행 제도상 상시근로자 수 판별 방식 등이 지나치게 복잡하여 기업들이 채용 시점에 공제 여부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바, 사후관리 방식 등과 관련한 개선이 필요
 - (유사·중복의 가능성) 동 제도와 유사한 목적을 지닌 재정지원들이 존재하는 바, 재원절감 내지 지출효율화의 여지가 일부 존재함
 - 가령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고령자고용지원금, 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 등은 유사 목적 재정지원이라 할 수 있음
 - 단 재원절감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중복지원 배제 내지 제도 간 통폐합 등은 지양될 필요가 있음

IV. 효과성 분석



IV. 효과성 분석

- 본 장에서는 기업 단위의 미시 자료를 활용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가 고용 증대 및 육아 휴직자 고용 안정 등에 기여한 정도를 정량적으로 평가
 - (분석 방법) 제도 변화 이후 기업의 고용 증대 여부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이중차분법(difference-in-differences) 등의 방법론을 활용
 - (분석 자료) 개별 기업 단위 상용 피보험자 수 및 육아휴직 복귀자 수 자료를 한국평가데이터(KoDATA) 재무 자료와 결합하여 활용
 - (분석 내용) 제도 변화 이후 (상시)근로자 수 및 육아휴직 복귀자 수 변화 양상을 통계적으로 검증

1. 분석 방법

- 본 절에서는 「통합고용세액공제」의 효과성 분석을 위한 방법론을 소개함
 - 본 연구는 2014~2023년 사이에 있었던 동 제도의 변화들을 이용하여 그 효과를 추정함
 - 구체적으로 상시근로자 수 및 육아휴직 복귀자 수와 관련된 제도의 변화들을 활용하여 동 제도의 영향을 개별적으로 추정

가. 상시근로자 수

- 동 제도로 통합된 「고용증대세액공제」는 고용을 증가시킨 기업에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제도로, 실증적으로 그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 수혜 기업과 비수혜 기업을 비교할 경우 내생성 문제를 피하기 어려움
 - 따라서 제도의 변화를 이용하여 그 효과를 추정할 필요
 - 동 제도는 기업 규모별(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기업 소재지별(수도권, 비수도권)로 차등 적용되고 있으므로, 규모별·소재지별로 상이한 제도의 변화를 이용하여 동 제도가 상시근로자 수 변화에 미친 효과를 식별

1) 기업 규모별 공제액 변화 활용

□ 수도권 내 기업 규모별 공제액 변화

- 1인당 공제액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수도권 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일정하게 유지되었다가, 2023년 「통합고용세액공제」가 도입되면서 중견기업은 기존 수준을 유지한 반면 중소기업의 공제액은 증가함(<표 IV-1> 참조)

<표 IV-1> 2019-2023년 수도권 내 기업 규모별 공제액 변화

(단위: 만원)

구분	2019~2022년		2023년	
	청년 등 상시근로자	그 외 상시근로자	청년 등 상시근로자	그 외 상시근로자
중소기업	1,100	700	1,450	850
중견기업	800	450	800	450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연구 설계) 이상의 제도 변화, 즉 2023년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공제액이 증가한 것을 활용하여 공제액 확대의 효과를 식별함

- 구체적으로 2019년에서 2023년 사이 중소기업을 처치집단, 중견기업을 통제집단으로 설정하고, 2023년 변화를 기점으로 하는 이중차분법 분석을 수행

□ 단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규모 차이로 인해 고용 행태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이질성 보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사항을 고려함

- 중견기업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인접 기업만을 고려
 -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업종별로 3년 평균 매출액(400억원, 600억원, 800억원, 1천억원 등)을 기준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 가장 많은 업종과 표본을 포함하는 1천억원 기준을 사용¹²⁾

12) 대상 업종: 농업, 임업 및 어업(A), 광업(B), 식료품 제조업(C10), 담배 제조업(C12),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 제외; C1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 제외; C16), 코크스, 연탄 및 섬유정제품 제조업(C19),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 제외; C20),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C22),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 제외; C2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C3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D), 수도업(E36), 건설업(F), 도매 및 소매업(G)

- 상기 업종에 속하고 이전 3년 매출액 평균이 500억원에서 1,500억원 사이인 기업만을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기준점인 평균 매출액 1천억원에 가까울수록 높은 가중치를 부여함¹³⁾
- 단 인접 매출액 범위는 연구자의 임의적 선택에 따라 결정되므로 범위를 달리하는 강건성 검증을 추가로 수행
- 집단별 고용 선형추세(linear trend) 통제
 - 중소·중견기업 간 고용에 추세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 모형에 집단×시간 항을 포함하여 추정함

□ 이상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다음의 2원 고정효과 이중차분(2-way fixed effect difference-in-differences) 모형을 사용함

$$y_{jt} = \beta_0 + \beta_1 G_{jt} + \beta_2 1(t \geq 2023)_{jt} + \beta_3 G_{jt} \times 1(t \geq 2023)_{jt} + \theta G_{jt}t + \gamma X_{jt-1} + \tau_t W_j + \eta_j + e_{jt} \quad \text{식 (1)}$$

- y_{jt} : 기업 j 의 t 기 상용근로자 수의 자연로그
- G_{jt} : 기업 j 의 t 기 처치집단(중소기업) 여부
- $G_{jt}t$: 처치집단(중소기업)의 선형추세
- X_{jt-1} : 기업 j 의 $t-1$ 기 매출액, 총자산, 영업이익률, 부채총계 등 재무 변수
- τ_t : 시간 고정효과
 - W_j 는 산업, 지역과 같은 시간 불변 기업 특성으로, τ_t 와 교호하여 산업과 지역 내 존재하는 시간에 따른 이질적 효과를 통제
- η_j : 기업 고정효과
- 주요 설명변수는 2023년 이후 중소기업 여부를 나타내는 $G_{jt} \times 1(t \geq 2023)_{jt}$
 - 해당 변수의 계수가 2023년을 기점으로 동 제도가 중소기업에 확대 적용된 효과를 나타냄

□ 추가적으로 식 (1)의 사건사 분석(event-study) 형태의 모형인 식 (2)를 고려함으로써 처치집단과 통제집단 간 차이의 사전 추세를 확인함

13) 구체적으로 평균과 표준편차가 각각 1,000억(원), 500억(원)인 정규분포 기반의 가중치 함수를 적용

$$y_{jt} = \beta_0 + \sum_{t \in \{2019, \dots, 2023\}} \gamma_t \cdot G_{jt} + \gamma X_{jt-1} + \tau_t W_j + \eta_j + e_{jt} \quad \text{식 (2)}$$

2) 기업 소재지별 공제액 변화 활용

□ 수도권과 비수도권 기업의 공제액 변화

-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2019년에서 2021년까지 기업 규모별 공제액이 일정하게 유지되었다가, 2022년 비수도권에 소재한 기업의 청년 등 상시근로자 1인당 세액공제액이 100만원씩 확대됨(<표 IV-2> 참조)

<표 IV-2> 2019~2022년 기업 소재지별 공제액 변화

(단위: 만원)

구 분		2019~2021년		2022년	
		청년 등 상시근로자	그 외 상시근로자	청년 등 상시근로자	그 외 상시근로자
수도권	중소기업	1,100	700	1,100	700
	중견기업	800	450	800	450
	대기업	400	-	400	-
비수도권	중소기업	1200	770	1,300	770
	중견기업	800	450	900	450
	대기업	400	-	500	-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연구 설계) 이상의 제도 변화에서 2022년 비수도권 기업을 대상으로만 공제액이 확대된 것을 이용하여 공제액 확대의 효과를 식별함

- 2019년에서 2022년 사이 수도권 외 기업을 처치집단, 수도권 내 기업을 통제 집단으로 설정하여, 2022년 변화를 기점으로 하는 이중차분법 분석을 수행

□ 다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소재한 기업들은 고용을 포함한 특성에서 차이를 보이므로 이러한 이질성을 완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사항을 고려

- 수도권·비수도권의 경계에 위치한 시군구 소재 기업으로만 표본을 구성
 - 수도권 내 지역은 연천, 포천, 가평, 양평, 여주, 이천, 안성, 평택을 포함
 - 수도권 밖 지역은 철원, 화천, 춘천, 홍천, 횡성, 원주, 충주, 음성, 진천, 천안, 아산을 포함

○ 집단별 고용 선형추세 통제

- 수도권·비수도권 간 고용에 추세 차이가 있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모형에 ‘집단 ×시간’ 항을 포함함

□ 이상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다음의 2원 고정효과 이중차분 모형을 활용함

$$y_{jt} = \beta_0 + \beta_1 G_{jt} + \beta_2 1(t \geq 2022)_{jt} + \beta_3 G_{jt} \times 1(t \geq 2022)_{jt} + \theta G_{jt} t + \gamma X_{jt-1} + \tau_t W_j + \eta_j + e_{jt} \quad \text{식 (3)}$$

- y_{jt} : 기업 j 의 t 기 상용근로자 수의 자연로그
- G_{jt} : 기업 j 의 t 기 처치집단(비수도권) 여부
- $G_{jt}t$: 처치집단(비수도권) 근로자 수의 선형추세
- X_{jt-1} : 기업 j 의 $t-1$ 기 매출액, 총자산, 영업이익률, 부채총계 등 재무 변수
- τ_t : 시간 고정효과
 - W_j 는 산업과 같은 시간 불변 기업 특성으로, τ_t 와 교호하여 산업 내 존재하는 시간에 따른 이질적 효과를 통제
- η_j : 기업 고정효과
- 주요 설명변수는 2022년 이후 처치 여부를 나타내는 $G_{jt} \times 1(t \geq 2022)_{jt}$
 - 해당 변수의 계수가 2022년을 기점으로 동 제도가 비수도권 기업에 확대 적용된 효과를 나타냄

□ 추가적으로 식 (3)의 사건사 분석 형태의 모형인 식 (4)를 고려함으로써 처치집단과 통제집단 간 차이의 사전 추세를 확인함

$$y_{jt} = \beta_0 + \sum_{t \in \{2019, \dots, 2022\}} \gamma_t \cdot G_{jt} + \gamma X_{jt-1} + \tau_t W_j + \eta_j + e_{jt} \quad \text{식 (4)}$$

나. 육아휴직 복귀자 수

□ 「통합고용세액공제」에 통합된 기존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는 육아휴직 후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해 세액공제를 제공

- 제도 도입이 육아휴직 복귀자 수에 미친 영향을 분석할 필요
- (정책 배경)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는 2019년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도입되어 공제율 및 공제액이 점차 확대됨
- (연구 설계) 동 제도가 중소·중견기업만을 대상으로 도입되었다는 점에 착안하여 중견기업과 (제도 적용 대상이 아닌) 대기업 간의 육아휴직 복귀자 수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제도 도입의 효과를 식별함
 - 구체적으로 동 제도의 도입이 적용된 중견기업을 처치집단, 적용되지 않은 대기업을 통제집단으로 구분하여 2019년 정책 도입을 기점으로 하는 이중차분법 분석을 수행
- 다만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규모 차이로 인해 고용 행태가 상이할 수 있는바, 이를 완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사항을 고려함
 - 대기업 규모 기준을 바탕으로 일정 범위 이내의 표본을 사용함
 -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일반적으로 총자산 10조원을 기준으로 구분¹⁴⁾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일정 범위 이내의 총자산을 가진 기업만을 표본으로 사용함
 - 하지만 대기업은 독립성 기준에 의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을 포함하므로 상기 총자산 기준에 명확히 부합하지 않는 기업들이 많음
 - 또한 총자산 10조원 근처에서는 총자산 분포가 넓고 표본이 제한적임
 - 따라서 범위를 비교적 넓게 설정하여 총자산 5천억원 이상 15조원 미만인 중견기업 및 대기업만을 표본으로 사용하고, 총자산 범위를 조정하는 강건성 검증을 추가로 수행
 - 두 집단에 대한 선형추세가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하여 ‘집단×시간’ 항을 통제함
- 이상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다음의 2원 고정효과 이중차분 모형을 추정함

14) 보다 구체적으로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규정 범위에 속하지 않아야 하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소속되지 않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인 총자산 10조원 이상(2024년부터는 GDP 0.5% 이상)에 포함되지 않아야 함. 단 금융업과 보험업은 예외적으로 「중소기업기본법」상의 규모를 벗어나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아니어도 「중견기업법」 등을 적용받지 아니하므로 대기업으로 간주됨. 따라서 금융업과 보험업은 본 연구의 표본에서 제외됨.

$$y_{jt} = \beta_0 + \beta_1 G_{jt} + \beta_2 1(t \geq 2019)_{jt} + \beta_3 G_{jt} \times 1(t \geq 2019)_{jt} + \theta G_{jt} t + \gamma X_{jt-1} + \tau_t W_j + \eta_j + e_{jt} \quad \text{식 (5)}$$

- y_{jt} : 기업 j 의 t 기 육아휴직 복귀자 수의 자연로그
- G_{jt} : 기업 j 의 t 기 처치집단(중견기업) 여부
- $G_{jt}t$: 처치집단(중견기업)의 선형추세
- X_{jt-1} : 기업 j 의 $t-1$ 기 매출액, 총자산, 영업이익률, 부채총계 등 기업 특성
- τ_t : 시간 고정효과
 - W_j 는 산업과 같은 시간 불변 기업 특성으로, τ_t 와 교호하여 산업 내 존재하는 시간에 따른 이질적 효과를 통제
- η_j : 기업 고정효과
- 주요 설명변수는 2019년 이후 중견기업 여부를 나타내는 $G_{jt} \times 1(t \geq 2019)_{jt}$
 - 해당 변수의 계수가 2019년부터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동 제도가 시행된 효과를 나타냄

□ 추가적으로 식 (5)의 사건사 분석 형태의 모형인 식 (6)을 추정함으로써 처치집단과 통제집단 간 차이의 사전 추세를 고려함

$$y_{jt} = \beta_0 + \sum_{t \in \{2019, \dots, 2023\}} \gamma_t \cdot G_{jt} + \gamma X_{jt-1} + \tau_t W_j + \eta_j + e_{jt} \quad \text{식 (6)}$$

2. 분석 자료

가. 분석 자료

- 「통합고용세액공제」의 효과성 분석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한 개별 기업 단위 월별 상용 피보험자 수 및 육아휴직 복귀자 수 자료를 활용
 - 해당 자료는 연령별 상용 피보험자 수 정보와 육아휴직 복귀자 및 출산휴가자에 대한 정보를 포함함

- 상기 자료를 한국평가데이터(Korea Rating & Data, KoDATA)¹⁵⁾상 재무자료와 결합하여 기업의 재무적 특성을 함께 고려함
- 해당 자료는 기업의 업종(산업), 소재지 등의 특성에 대한 정보와 매출액, 자산총계, 영업손익 등의 재무 정보를 포함함

□ 실증분석 자료의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음

- (분석 기간) 2014~2023년 연도별 불균형 패널 미시자료
- (분석 대상) 법인 및 개인 기업 92만 3,069개
- 실증분석에서는 기업의 연도별 상시근로자 수 및 육아휴직 복귀자 수의 자연 로그 값을 종속변수로 사용함
- 기업의 연도별 상시근로자 수는 각 연도의 월별 상용 피보험자 수의 평균값으로 산출함
 - 전체 상시근로자 수 및 연령별(청년, 중장년, 고령) 상시근로자 수를 고려함
- 육아휴직 복귀자의 경우, 해당 연도의 월별 복귀자 수를 합산하여 연도별 총 복귀자 수를 산출함
 - 다만 이 경우 출산휴가에서 육아휴직으로 바로 전환하는 경우가 포함되지 않는 문제(즉 육아휴직 복귀자 수가 과소추정될 우려)가 있으므로, 육아휴직 복귀자 수 외에 “육아휴직 복귀자 + 출산휴가자” 변수를 추가로 고려함
- 또한 분석을 위해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표본을 제한함
 - 동 제도의 고용효과 추정을 위해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여 공제 혜택을 활용할 수 없는 기업은 제외하고 당기순이익이 흑자인 기업들로 표본을 한정함
 - 매출액, 총자산, 부채총계의 관측치가 음수(-)인 경우, 영업이익률이 1을 넘는 경우, 상기 재무성과 변수나 기업 규모, 업종, 지역 등에서 불완전한 정보를 가진 관측치들도 분석에서 제외함
 -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비성서비스업¹⁶⁾을 운영하는 기업도 분석에서 제외

15) 본 연구의 효과성 분석에 사용된 한국평가데이터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의 장우현 소장님께서 제공해 주신 것으로, 본 연구의 연구진은 해당 자료의 구입·관리·제공 등과 관련된 노고 및 협조에 깊은 감사를 표하는 바임.

16) 호텔업(55101), 여관업(55102), 일반 유흥 주점업(56211), 무도 유흥 주점업(56212), 무도장 운영업(91291), 기타 사행 시설 관리 및 운영업(91249), 마사지업(96122)

- 본 연구는 상시근로자 수 분석 시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제액 변화 차이를 활용하고 있으나, 사용된 자료에는 기업 규모 변수와 관련된 한계점이 존재함
 - 한국평가데이터에서 제공하는 기업 규모 변수는 소기업, 중기업, 한시성 중소기업,¹⁷⁾ 중견기업, 대기업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데, 이는 2023년 기준 기업 규모를 의미하며 이에 따라 분석 기간 기업 규모의 변동이 있었다더라도 이를 반영하지 못함
 - 기업의 연도별 매출액 변수를 활용해 산업별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구분하면 과거 기업 규모 변동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으나, 이 역시 관측치가 불완전한 경우 3년 평균 매출액 변수가 부정확할 수 있음
 - 또한 중소기업이 매출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3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되기 때문에 3년 평균 매출액만으로 기업 규모를 정확히 구분하는 데 한계가 존재함
 - 이에 한국평가데이터상 기업 규모와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에 따른 기업 규모를 비교함
 - 구체적으로 이하 분석의 표본인 2019년에서 2023년 사이 3년 평균 매출액이 1천억원인 산업에 속하는 수도권 기업 중 한국평가데이터상 중기업, 한시성 중소기업, 중견기업으로 구분된 기업을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으로 재분류한 결과, 표본의 약 98%가 한국평가데이터상 기업 규모와 일치함
 - 따라서 분석 기간 중소·중견기업들의 규모 변동이 잦지 않다고 판단되는바, 이하 분석에서는 한국평가데이터상 기업 규모로 중소·중견기업을 구분함

- 한편 육아휴직 복귀자 수에 대한 효과 추정 시 중견기업과 대기업을 구분할 때에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함
 - 하지만 이 경우 대기업은 독립성 기준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 역시 포함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총자산 10조원을 기준으로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 따라서 해당 분석에서는 한국평가데이터상 기업 규모 기준에 따라 중견기업과 대기업을 구분하는바, 분석 결과 해석 시 유의할 필요

17)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초과하였으나 유예 기간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의 기준을 적용받는 기업을 의미함.

나. 기초통계

- 전체 분석 대상 기업의 기초통계량은 <표 IV-3>에 제시되어 있음
 - 분석 대상 기업의 평균 상시근로자 수는 17.2명이며, 평균 청년 및 고령 근로자 수는 각각 5.3명, 1.8명으로 나타남
 - 평균 육아휴직 복귀자 수는 0.05명으로 나타남
 - 평균 매출액은 약 24억원, 중견 이상 기업은 전체 표본의 약 23%이며, 표본의 대부분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인 것으로 나타남
 -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건설업에 속하는 기업이 전체 표본의 약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상시근로자 수 분석에서 기업 규모별 공제액 변화를 이용한 분석의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의 기초통계량은 <표 IV-4>에 제시되어 있음
 - 2019년 이후 중견·중소기업 구분 기준인 3년 평균 매출액 1천억원인 산업에 속하고, 3년 평균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 1,500억원 이하인 기업 표본을 사용
 - 처치집단은 한국평가데이터 기준 중기업 혹은 한시성 중소기업에 속하는 기업, 통제집단은 중견기업에 속하는 기업을 포함함
 - 재무성과 및 고용 변수는 대부분 통제집단(중견기업)에서 평균적으로 더 높게 나타남
 - 산업에서 두 집단 간 큰 차이는 관찰되지 않음

<표 IV-3> 기초통계량: 분석 대상 기업 전체

(단위: 명, 억원)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고용	전체	17.20	248.65	1	123,656
	청년(34세 이하)	5.33	104.84	0	55,520
	중장년(35~59세)	10.05	150.34	0	75,984
	고령(60세 이상)	1.82	20.02	0	4,820
	육아휴직복귀자	0.05	3.23	0	2,821
	육아휴직복귀자+출산휴가자	0.07	3.32	0	2,821
재무 성과	매출액	244.76	9,365	0	2,118,675
	총자산	452.01	23,033	0	5,956,437

<표 IV-3>의 계속

(단위: 명, 억원)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재무 성과	영업이익	18.08	1,186	-115,263	436,995
	당기순이익	16.75	1,110	0	328,151
	부채총계	275.6	18,314	0	5,753,990
기업 규모	대기업	0.004	-	0	1
	중견기업	0.019	-	0	1
	중기업	0.185	-	0	1
	소기업	0.650	-	0	1
	소상공인	0.136	-	0	1
	기타	0.007	-	0	1
업종	농업, 임업 및 어업	0.007	-	0	1
	광업	0.001	-	0	1
	제조업	0.339	-	0	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	0.002	-	0	1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0.009	-	0	1
	건설업	0.128	-	0	1
	도매 및 소매업	0.230	-	0	1
	운수 및 창고업	0.024	-	0	1
	숙박 및 음식점업	0.026	-	0	1
	정보통신업	0.038	-	0	1
	금융 및 보험업	0.004	-	0	1
	부동산업	0.030	-	0	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0.058	-	0	1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0.044	-	0	1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0.000	-	0	1
	교육 서비스업	0.009	-	0	1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0.031	-	0	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0.005	-	0	1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0.017	-	0	1
	관측치 수		3,977,542		

자료: 고용보험 DB 및 KoDATA 결합자료

<표 IV-4> 기초통계량: 기업 규모별 공제액 변화를 활용한 분석 대상 기업

(단위: 명, 억원)

변수		처치집단(중소기업)		통제집단(중견기업)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고용	전체	71.18	85.33	109.59	112.95
	청년(34세 이하)	24.40	39.32	42.31	61.63
	중장년(35~59세)	42.93	51.77	64.19	64.53
	고령(60세 이상)	3.85	7.83	3.10	5.29
	육아휴직복귀자	0.30	1.05	0.59	1.62
	육아휴직복귀자+출산휴가자	0.42	1.05	0.80	2.09
재무 성과	매출액	747.75	253.18	1,166	417.38
	총자산	528.53	470.52	1,506	1,922
	영업이익	41.87	59.45	80.25	109.53
	당기순이익	39.26	56.67	76.34	112.02
	부채총계	231.69	231.88	700.32	1,072
업종	농업, 임업 및 어업	0.002	-	0.002	-
	광업	0.001	-	0	-
	제조업	0.350	-	0.403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	0.002	-	0.003	-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0	-	0.007	-
	건설업	0.183	-	0.157	-
	도매 및 소매업	0.462	-	0.427	-
관측치 수		5,732		1,252	

주: 1. 2019년에서 2023년 사이 중견·중소기업 구분 기준인 3년 평균 매출액 1천억원인 산업에 속하고, 3년 평균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 1천억원 미만인 수도권 내 기업으로 한정

2. 처치집단은 한국평가데이터 기준 중기업 혹은 한시성 중소기업에 속하는 기업, 통제집단은 중견기업에 속하는 기업

자료: 고용보험 DB 및 KoDATA 결합자료

- 상시근로자 수 분석에서 기업 소재지별 공제액 변화를 이용한 분석의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의 기초통계량은 <표 IV-5>에 제시되어 있음
 - 2019년에서 2022년 사이의 표본을 사용함
 - 처치집단(비수도권)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경계 지역에서 비수도권 지역에 속한 기업 표본, 통제집단(수도권)은 수도권 지역에 속한 기업 표본임
 - 고용 변수에서 두 집단 간 큰 차이는 발견되지 않으며, 재무 변수는 통제집단

(수도권)에서 영업손익, 총자산, 부채총계 등이, 처치집단(비수도권)에서 매출액이 평균적으로 소폭 더 높게 나타남

○ 산업 분포 역시 두 집단 간 큰 차이는 관찰되지 않음

□ 육아휴직 복귀자 수 분석 대상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의 기초통계량은 <표 IV-6>에 제시되어 있음

○ 2014년 이후 총 자산 5천억원 이상 15조원 미만인 기업 표본을 사용함

○ 처치집단은 한국평가데이터상 중견기업에 속하는 기업, 통제집단은 대기업에 속하는 기업

- 금융업과 보험업은 예외적으로 「중소기업기본법」상의 규모를 벗어나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아니어도 「중견기업법」 등을 적용받지 아니하므로 금융 및 보험업을 표본에서 제외함

○ 통제집단(대기업)에서 대부분의 재무변수와 고용변수가 처치집단(중견기업)에 비해 평균적으로 더 높게 나타남

- 단 통제집단(대기업)의 평균 총 자산은 약 2.3조원으로 대기업 규모 기준 총 자산 10억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대기업이 표본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짐작됨

<표 IV-5> 기초통계량: 기업 소재지별 공제액 변화를 활용한 분석 대상 기업

(단위: 명, 억원)

변수		처치집단(비수도권)		통제집단(수도권)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고용	전체	14.75	126.36	14.5	248.77
	청년(34세 이하)	4.32	48.22	4.34	120.19
	중장년(35~59세)	8.76	72.25	8.74	129.46
	고령(60세 이상)	1.67	11.82	1.42	5.11
	육아휴직복귀자	0.07	4.06	0.03	0.32
	육아휴직복귀자+출산휴가자	0.09	4.32	0.05	0.40
재무 성과	매출액	120.87	6,377	98.88	2,908
	총자산	97.21	2,386	140.08	6,357
	영업이익	6.37	183.03	9.96	633.85
	당기순이익	6.48	276.78	8.11	455.16
	부채총계	46.44	837.81	62.70	1,926

<표 IV-5>의 계속

(단위: 명, 억원)

변수		처치집단(비수도권)		통제집단(수도권)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기업 규모	대기업	0.003	-	0.002	-
	중견기업	0.015	-	0.013	-
	중기업	0.178	-	0.172	-
	소기업	0.698	-	0.715	-
	소상공인	0.100	-	0.092	-
	기타	0.007	-	0.006	-
업종	농업, 임업 및 어업	0.014	-	0.015	-
	광업	0.002	-	0.001	-
	제조업	0.382	-	0.456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	0.002	-	0.002	-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0.015	-	0.016	-
	건설업	0.153	-	0.118	-
	도매 및 소매업	0.180	-	0.197	-
	운수 및 창고업	0.018	-	0.037	-
	숙박 및 음식점업	0.034	-	0.025	-
	정보통신업	0.015	-	0.006	-
	금융 및 보험업	0.002	-	0.001	-
	부동산업	0.023	-	0.015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0.049	-	0.032	-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0.048	-	0.025	-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0.000	-	0	-
	교육 서비스업	0.008	-	0.006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0.029	-	0.021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0.006	-	0.007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0.021	-	0.021	-
	관측치 수		79,446		57,932

주: 1. 2019년에서 2022년 표본을 사용함

2. 처치집단(비수도권)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계 지역에서 비수도권 지역(철원, 화천, 춘천, 홍천, 횡성, 원주, 충주, 음성, 진천, 천안, 아산)에 소재한 기업, 통제집단(수도권)은 수도권 지역(연천, 포천, 가평, 양평, 여주, 이천, 안성, 평택)에 소재한 기업

자료: 고용보험 DB 및 KoDATA 결합자료

<표 IV-6> 기초통계량: 육아휴직 복귀자 수 분석 대상 기업

(단위: 명, 억원)

변수		처치그룹(중견기업)		통제그룹(대기업)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고용	전체	545.18	1,206	921.13	2,169
	청년(34세 이하)	196.63	433.66	371.65	1,068
	중장년(35~59세)	337.95	830.35	535.96	1,321
	고령(60세 이상)337.95	10.61	72.31	13.52	48.52
	육아휴직복귀자	1.71	6.70	3.02	17.61
	육아휴직복귀자+출산휴가자	2.07	7.87	3.62	20.42
재무 성과	매출액	9,548	10,067	22,790	33,423
	총자산	11,662	9,701	26,379	29,178
	영업이익	824.47	1,433	1,532	2,220
	당기순이익	724.97	1,390	1,228	1,962
	부채총계	5,484	6,409	13,177	17,177
업종	농업, 임업 및 어업	0.006	-	0	-
	광업	0	-	0.001	-
	제조업	0.599	-	0.401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	0.026	-	0.031	-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0.001	-	0.001	-
	건설업	0.071	-	0.297	-
	도매 및 소매업	0.130	-	0.084	-
	운수 및 창고업	0.072	-	0.046	-
	숙박 및 음식점업	0.016	-	0.020	-
	정보통신업	0.039	-	0.053	-
	부동산업	0.027	-	0.031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0.004	-	0.011	-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0.005	-	0.017	-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0	-	0	-
	교육 서비스업	0.002	-	0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0	-	0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0.001	-	0.007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0.002	-	0.001	-
관측치 수		5,223		4,569	

주: 1. 2014년에서 2023년 사이 총 자산이 5천억원 이상 15조원 미만인 기업을 표본으로 사용

2. 처치집단은 한국평가데이터 기준 중견기업에, 통제집단은 대기업에 속하는 기업

자료: 고용보험 DB 및 KoDATA 결합자료

3. 분석 결과

가. 상시근로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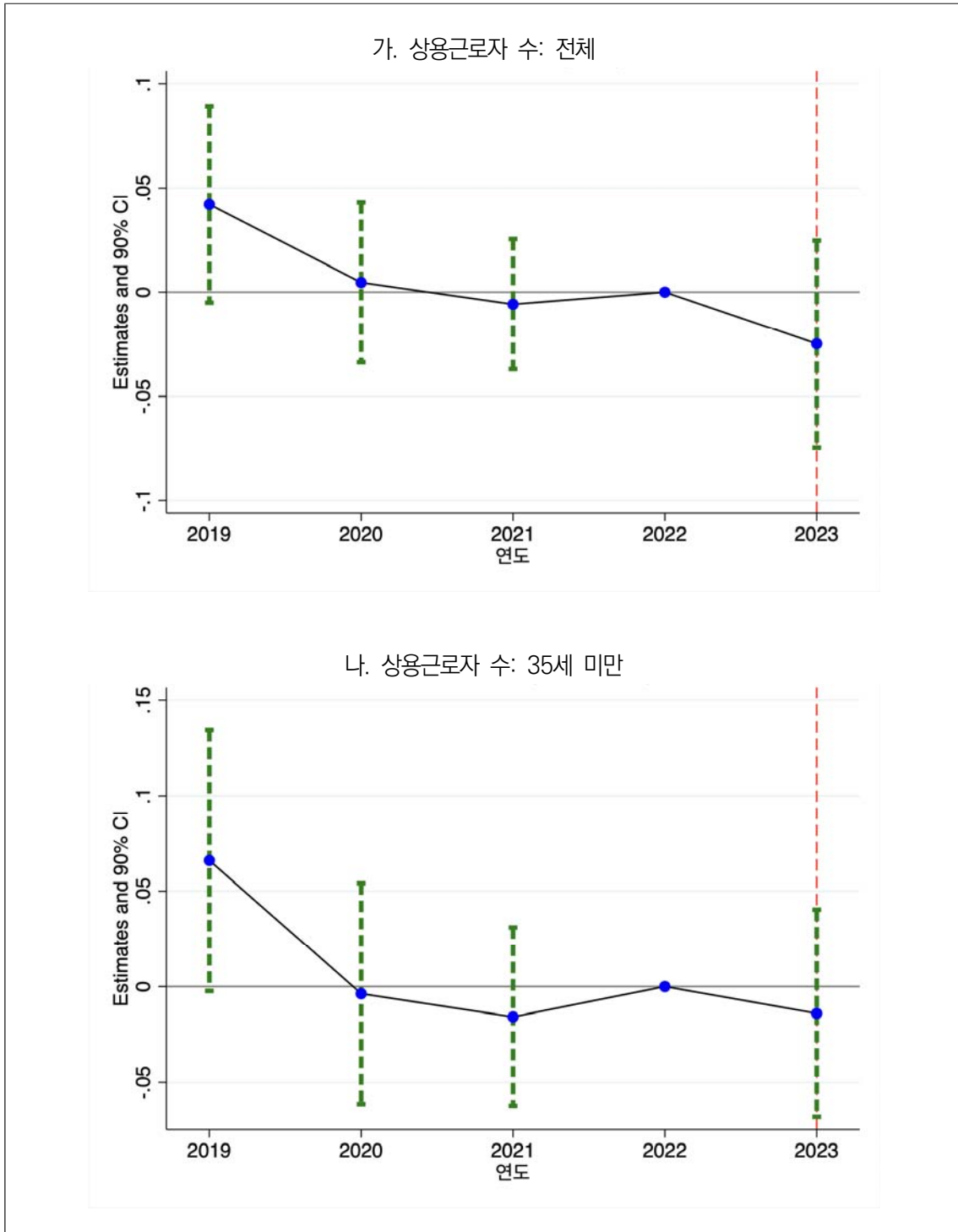
1) 기업 규모별 공제액 변화 활용

- 본 분석에서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공제액 변화를 활용하여 2원 고정효과 이 중차분모형을 추정한 결과를 제시함
 - 구체적으로 수도권 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일정한 공제액이 적용되다가 2023년 중소기업의 공제액만 확대된 것을 이용
 - 중소기업을 처치집단, 중견기업을 통제집단으로 설정하여 공제액 확대의 효과를 식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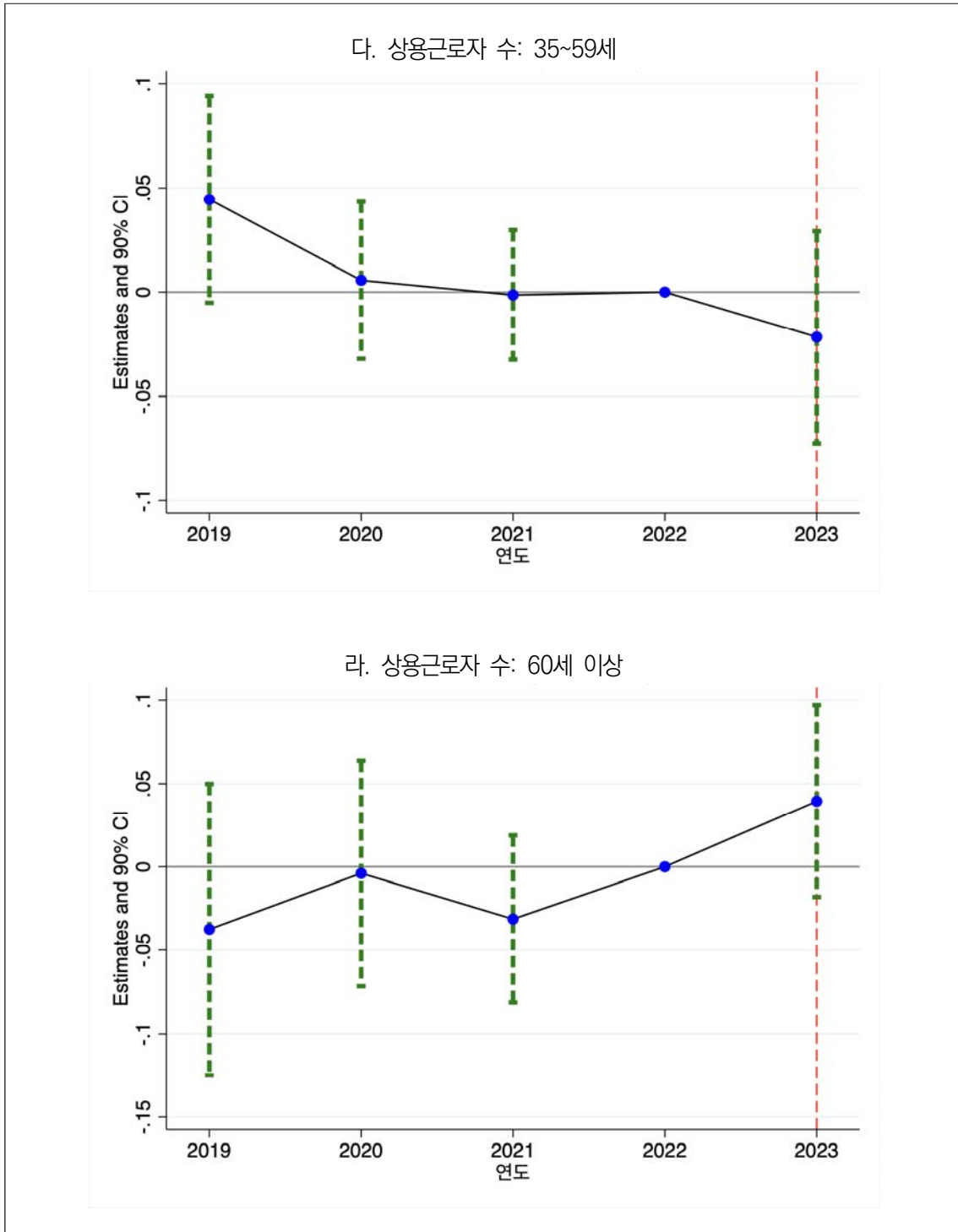
가) 기본 분석

- 식 (1)의 추정 결과를 제시하기에 앞서 처치집단(중소기업)과 통제집단(중견기업)의 사전 추세 확인을 위하여, 사건사 분석 형태의 식 (2) 추정 결과를 [그림 IV-1]에 도해함
 - 종속 변수로는 로그 상용근로자 수, 로그 35세 미만 상용근로자 수, 로그 35~59세 상용근로자 수, 그리고 로그 60세 이상 상용근로자 수를 사용함
 - 그림의 각 파란색 점은 해당 연도별 추정 계수 γ_t , $t \in \{2019, \dots, 2023\}$ 를 의미하며, 초록색 세로선은 해당 추정치의 90% 신뢰구간을 나타냄
 - 빨간 선은 처치집단(중소기업)의 공제액 변화가 발생한 시기를 나타냄
 -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나, 전체, 청년(35세 미만), 중장년(35~59세)에서 처치집단(중소기업)과 통제집단(중견기업) 사이의 연도별 추정 계수가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남
 - 따라서 이중차분모형 추정 시 처치집단(중소기업)의 선형추세 통제가 필요할 수 있음

[그림 IV-1] 기업 규모별 공제액 변화를 활용한 사건사 분석



[그림 IV-1]의 계속



주: 1. 빨간 줄로 표시된 시점은 처치집단(중소기업)의 공제액 변화가 발생한 시기
 2. 그림의 각 파란색 점은 해당 연도별 추정 계수 γ_t , $t \in \{2019, \dots, 2023\}$ 를 의미하며, 초록색 세로 선은 해당 추정치의 90% 신뢰구간을 나타냄
 자료: 고용보험 DB 및 KoDATA 결합자료 활용하여 저자 추정

□ <표 IV-7>은 기업 규모별 공제액 변화를 활용한 2원 고정효과 이중차분모형(식 (2)) 추정 결과를 보여줌

- 주요 설명변수는 $G_{jt} \times 1(t \geq 2023)_{jt}$, 즉 중소기업의 2023년 더미변수이며, 이 변수의 추정 계수가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공제액 확대의 효과를 나타냄
- 앞선 사건사 분석 [그림 IV-1]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두 집단 간 사전 추세가 평행하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이중차분모형 추정 시 처치집단(중소기업)의 선형 추세를 통제함
- 매출액, 총자산, 부채총계의 로그값 및 영업이익률과 같은 재무 변수를 통제하고, 기업, 산업×연도, 지역×연도 고정효과를 추가로 통제함
-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간의 이질성을 완화하기 위하여 3년 매출액의 평균이 500억원에서 1,500억원 사이인 기업만을 표본으로 사용하였으며, 1천억원에 가까울수록 높은 가중치를 부여함
- <표 IV-7>의 추정 결과에 따르면, 전체, 청년(35세 미만), 중장년(35~39세), 고령(60세 이상) 상용근로자 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지만 평균적으로 전체 상용근로자 수에 -0.2%, 청년(35세 미만)에 2.3%, 중장년(35~39세)에 -0.04%, 그리고 고령(60세 이상)에 3.6%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남

<표 IV-7> 기업 규모별 공제액 변화를 활용한 이중차분모형 추정 결과

변수	ln(상용근로자 수)			
	전체	35세 미만	35~59세	60세 이상
$G_{jt} \times 1(t \geq 2023)_{jt}$	-0.0027 (0.0316)	0.0233 (0.0367)	-0.0004 (0.0323)	0.0363 (0.0399)
$\ln(\text{매출액})_{jt-1}$	0.0884*** (0.0209)	0.1113*** (0.0308)	0.0662*** (0.0220)	0.0746*** (0.0304)
$\ln(\text{총자산})_{jt-1}$	0.1508*** (0.0375)	0.2149*** (0.0580)	0.1621*** (0.0396)	0.0370 (0.0462)
영업이익률_{jt-1}	-0.2663** (0.1145)	-0.2391* (0.1345)	-0.2861*** (0.1093)	-0.0227 (0.1421)
$\ln(\text{부채총계})_{jt-1}$	-0.0147 (0.0180)	-0.0430 (0.0278)	-0.0297 (0.0184)	0.0033 (0.0268)

<표 IV-7>의 계속

변수	ln(상용근로자 수)			
	전체	35세 미만	35~59세	60세 이상
처치집단 선형추세($G_{j,t}$)	Y	Y	Y	Y
기업 고정효과	Y	Y	Y	Y
산업×연도 고정효과	Y	Y	Y	Y
지역×연도 고정효과	Y	Y	Y	Y
관측치 수	6,144	6,144	6,144	6,144

주: 1. *, **, ***은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

2. 기업 수준으로 군집한 표준오차(clustered standard error) 사용

3. 3년 매출액의 평균이 500억원에서 1,500억원 사이인 기업만을 표본으로 사용하였으며, 1천억원에 가까울수록 높은 가중치 부여

자료: 고용보험 DB 및 KoDATA 결합자료 활용하여 저자 추정

<표 IV-8> 강건성 검증: 3년 평균 매출액 규모의 범위 변화

3년 평균 매출액	ln(상용근로자 수)				관측치 수
	전체	35세 미만	35~59세	60세 이상	
200억~1,800억원	-0.0044 (0.0289)	0.0208 (0.0331)	-0.0033 (0.0295)	0.0340 (0.0360)	27,241
300억~1,700억원	-0.0072 (0.0291)	0.0186 (0.0335)	-0.0068 (0.0298)	0.0336 (0.0365)	15,166
400억~1,600억원	-0.0063 (0.0299)	0.0198 (0.0345)	-0.0056 (0.0350)	0.0331 (0.0376)	9,418
600억~1,400억원	0.0005 (0.0350)	0.0305 (0.0412)	-0.0019 (0.0361)	0.0398 (0.0450)	3,827
700억~1,300억원	0.0115 (0.0439)	0.0431 (0.0505)	0.0270 (0.0464)	0.0063 (0.0567)	2,291
800억~1,200억원	-0.0079 (0.0757)	0.0404 (0.0780)	-0.0069 (0.0814)	0.0088 (0.0801)	1,275

주: 1. *, **, ***은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

2. 기업 수준으로 군집한 표준오차 사용

3. 모든 추정에서 기업 재무변수, 처치집단 선형추세, 기업 및 산업×연도, 지역×연도 고정효과 통제

4. 3년 매출액의 평균이 1,000억원에 가까울수록 높은 가중치 부여

자료: 고용보험 DB 및 KoDATA 결합자료 활용하여 저자 추정

나) 강건성 검증

- <표 IV-7>은 처치집단(중소기업)과 통제집단(중견기업) 간 이질성 완화를 위하여 중소·중견기업을 구분하는 기준인 3년 평균 매출액 1천억원을 중심으로 500억원 이상 1,500억원 이하인 기업들만을 표본에 포함시켜 분석한 결과임
 - 해당 기준은 연구자의 자의적인 선택이므로 그 기준을 변화시켰을 때 결과가 일관되게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한 강건성 검증을 수행함

- <표 IV-8>은 3년 평균 매출액 범위를 보다 엄격하거나 완화된 방향으로 조정하여 추정된 결과를 제시함
 - 범위가 엄격해질수록 처치집단(중소기업)과 통제집단(중견기업) 간 이질성은 상대적으로 더 완화될 수 있으나, 표본 수가 적어짐에 따라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 모든 추정에서 처치집단 선형추세, 기업 및 산업×연도, 지역×연도 고정효과가 통제됨
 - 아울러 3년 평균 매출액이 1천억원에 가까울수록 높은 가중치가 부여됨
 - 추정 결과 다양한 범위의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음
 - 단 모든 추정에서 청년(35세 미만)과 고령(60세 이상)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나 양(+)의 추정 계수가 나타남

- <표 IV-7> 및 <표 IV-8>의 추정 결과에 비추어 보았을 때, 수도권 내 중소기업의 공제액 확대가 중소기업의 고용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고 판단하기는 다소 어려움

2) 기업 소재지별 공제액 변화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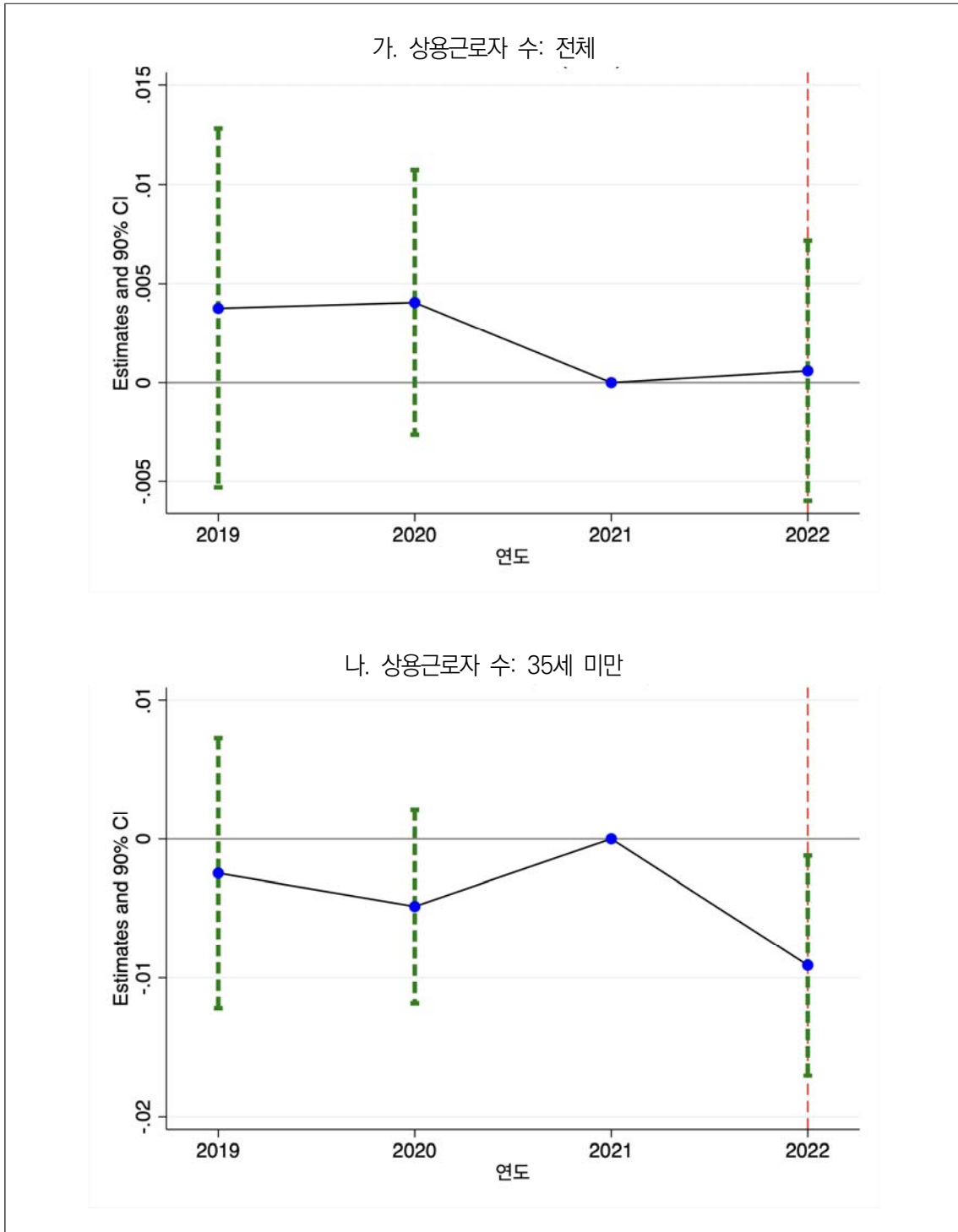
- 이하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소재한 기업들의 공제액 변화를 활용하여 2원 고정효과 이중차분모형을 추정된 결과를 제시함
 - 구체적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내 기업들에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일정한 공제액이 적용되었다가 2022년 비수도권 내 기업에만 공제액이 확대된 것을 활용

- 비수도권 내 기업을 처치집단, 수도권 내 기업을 통제집단으로 설정하여 공제액 확대의 효과를 식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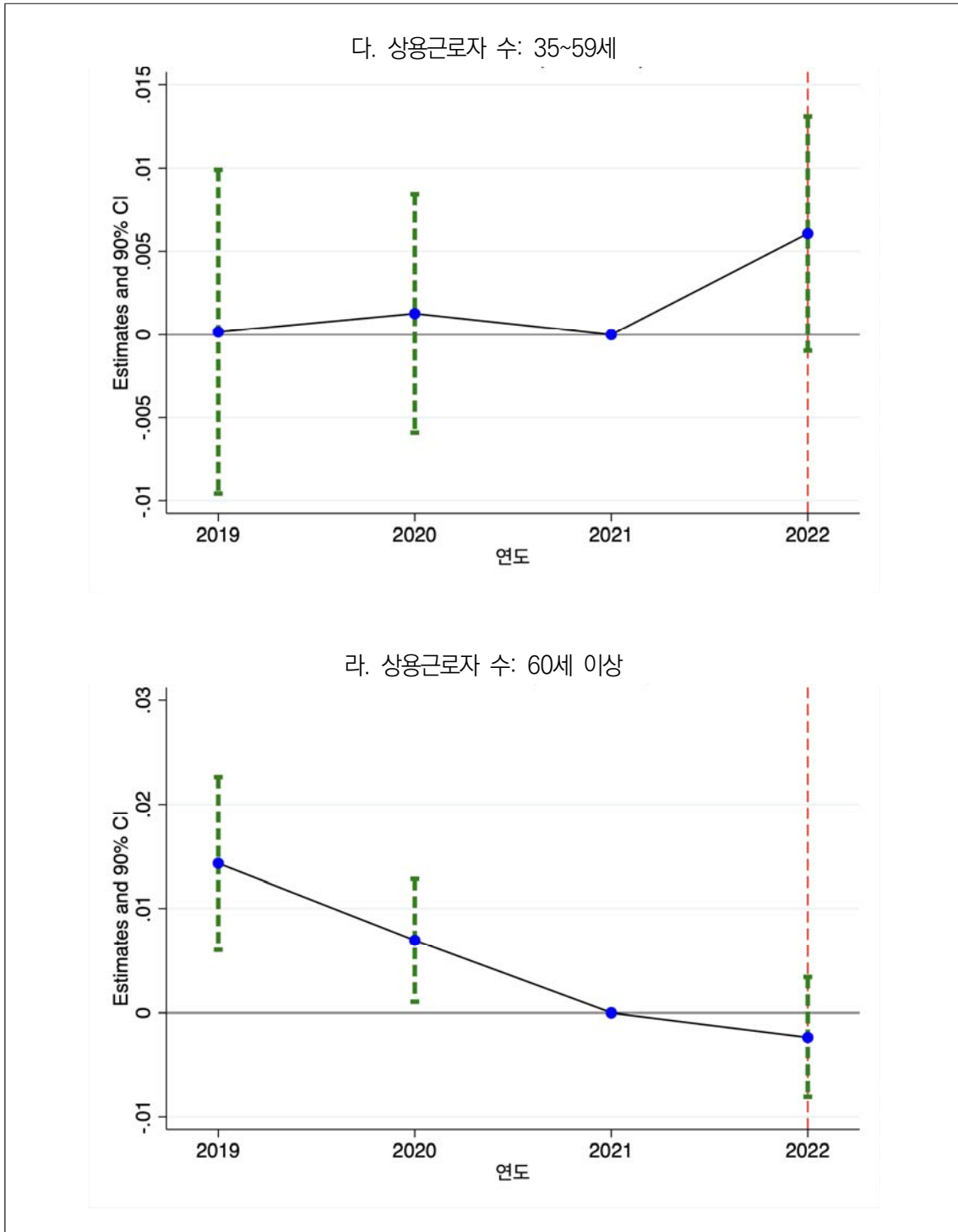
나) 기본 분석

- 처치집단(비수도권)과 통제집단(수도권)의 사전 추세 확인을 위해, [그림 IV-2]는 식 (3)의 사건사 분석 형태의 모형인 식 (4) 추정 결과를 도해함
 - 그림의 각 파란 점과 초록색 점선은 연도별 추정 계수 γ_t , $t \in \{2019, \dots, 2022\}$ 와 90% 신뢰구간을 나타내며, 빨간색 선은 처치집단(비수도권)에 공제액 확대가 발생한 시점을 의미함
 - 대부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고 계수 추정치 또한 -0.005에서 0.005를 넘지 않아 작게 나타나지만, 고령(60세 이상)에서는 추정 계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하락 추세가 관찰됨
 - 따라서 이중차분모형 추정 시 처치집단(비수도권)의 선형추세를 고려함
- <표 IV-9>는 기업 소재지별 공제액 변화를 활용한 이중차분모형(식 (3))의 추정 결과를 보여줌
 - 기업 규모별 공제액 변화를 활용한 분석인 <표 IV-7>과 동일한 종속변수와 설명변수를 사용하였으나, 지역별 차이를 활용함에 따른 다중공선성 문제를 피하기 위해 지역×연도 고정효과 변수는 제외함
 - 기업 규모별 공제액 변화를 활용하였을 때와 마찬가지로, 비수도권 기업을 대상으로 한 공제액 확대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음
 - 전체, 중장년(35~59세), 고령(60세 이상) 상용근로자 수에서 추정 계수가 0.2~0.6%로 나타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음
 - 따라서 비수도권 기업을 대상으로 한 동 제도의 확대가 기업의 고용을 유의미하게 증가시켰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그림 IV-2] 기업 소재지별 공제액 변화를 활용한 사건사 분석



[그림 IV-2]의 계속



주: 1. 빨간 줄로 표시된 시점은 처치집단(중소기업)의 공제액 변화가 일어난 시기
 2. 그림의 각 파란색 점은 해당 연도별 추정 계수 γ_t , $t \in \{2019, \dots, 2022\}$ 를 의미하며, 초록색 세로 선은 해당 추정치의 90% 신뢰구간을 나타냄
 자료: 고용보험 DB 및 KoDATA 결합자료 활용하여 저자 추정

<표 IV-9> 기업 소재지별 공제액 변화를 활용한 이중차분모형 추정 결과

변수	ln(상용근로자 수)			
	전체	35세 미만	35~59세	60세 이상
$G_{jt} \times 1(t \geq 2022)_{jt}$	0.0019 (0.0051)	-0.0094 (0.0058)	0.0058 (0.0055)	0.0049 (0.0044)
$\ln(\text{매출액})_{jt-1}$	0.1115*** (0.0038)	0.0718*** (0.0034)	0.0884*** (0.0038)	0.0208*** (0.0025)
$\ln(\text{총자산})_{jt-1}$	0.1002*** (0.0053)	0.0507*** (0.0045)	0.0957*** (0.0052)	0.00051 (0.0034)
영업이익률 $_{jt-1}$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ln(\text{부채총계})_{jt-1}$	0.0036 (0.0025)	-0.0017 (0.0019)	0.0049** (0.0025)	-0.0023 (0.0016)
처치집단 선형추세($G_{jt}t$)	Y	Y	Y	Y
기업 고정효과	Y	Y	Y	Y
산업×연도 고정효과	Y	Y	Y	Y
관측치 수	103,832	103,832	103,832	103,832

주: 1. *, **, ***은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

2. 기업 수준으로 군집한 표준오차 사용

3.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계 시군구에 소재한 기업을 표본으로 사용

자료: 고용보험 DB 및 KoDATA 결합자료 활용하여 저자 추정

나) 이질성 분석

- (산업별) 동 제도의 효과가 산업별로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 산업별로 표본을 구분해 기업 소재지별 공제액 변화를 활용한 추정을 시도함(<표 IV-10> 참조)
 - KSIC 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 기준으로 표본 수가 1천개 이상인 산업을 선별하여 산업별로 이중차분 모형을 추정함
 - 모든 추정에서 기업 재무변수, 처치집단 선형추세, 기업 및 산업×연도, 지역×연도 고정효과를 통제함
 -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 및 창고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개인 서비스업에서 일부 종속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2.4~8.5%의 효과가 나타남
 - 단 모든 산업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결과는 아니며 건설업 청년(35세 미만),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중장년(35~59세)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효과가 나타나기도 함

- 따라서 산업별 이질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바, 일부 산업에서 동 제도 확대의 긍정적 효과가 관찰되나 모든 산업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결과는 아님

<표 IV-10> 기업 소재지별 공제액 변화를 활용한 이중차분모형 추정 결과: 산업별

산업	ln(상용근로자 수)				관측치 수
	전체	35세 미만	35~59세	60세 이상	
농업, 임업 및 어업	-0.0204 (0.0511)	0.0423 (0.0607)	-0.0514 (0.0498)	-0.0144 (0.0449)	1,294
제조업	0.0047 (0.0072)	-0.0139 (0.0094)	0.0033 (0.0077)	0.0008 (0.0065)	46,705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0.0378 (0.0367)	-0.0434 (0.0353)	-0.0250 (0.0381)	0.0405 (0.0403)	1,768
건설업	0.0088 (0.0145)	-0.0268* (0.0140)	0.0144 (0.0164)	0.0292** (0.0146)	14,463
도매 및 소매업	0.0186 (0.0119)	0.0016 (0.0114)	0.0239* (0.0126)	-0.0065 (0.0077)	18,376
운수 및 창고업	0.0845** (0.0375)	0.0664* (0.0340)	0.0408 (0.0391)	0.0167 (0.0320)	2,662
숙박 및 음식점업	0.0288 (0.0405)	0.0450 (0.0360)	-0.0241 (0.0406)	-0.0130 (0.0326)	1,918
정보통신업	0.0728 (0.0856)	-0.0180 (0.0981)	0.0911 (0.0742)	0.0386 (0.0339)	1,038
부동산업	-0.0176 (0.0476)	-0.0146 (0.0369)	0.0109 (0.0489)	-0.0315 (0.0425)	1,576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0.0479 (0.0302)	-0.0526 (0.0334)	-0.0655** (0.0321)	0.0254 (0.0187)	4,188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0.0055 (0.0391)	-0.0093 (0.0366)	0.0746* (0.0395)	0.0101 (0.0362)	3,561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0.0025 (0.0190)	0.0154 (0.0306)	-0.0133 (0.0338)	-0.0005 (0.0197)	2,678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0.0013 (0.0277)	0.0339 (0.0312)	-0.0353 (0.0293)	-0.0187 (0.0283)	1,995

주: 1. *, **, ***은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
 2. 기업 수준으로 군집한 표준오차 사용
 3. 모든 추정에서 기업 재무변수, 처치집단 선형추세, 기업 및 산업×연도, 지역×연도 고정효과 통제
 자료: 고용보험 DB 및 KoDATA 결합자료 활용하여 저자 추정

- (기업 규모별) 기업 규모에 따른 이질성 역시 존재할 수 있는바, 일부 기업 규모에서는 차등적 공제율이 적용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업 규모별 표본 구축 후 추가 분석을 수행함(<표 IV-11> 참조)
 -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중견기업으로 표본을 나누어 분석함¹⁸⁾
 - 모든 추정에서 기업 재무변수, 처치집단 선형추세, 기업 및 산업×연도, 지역×연도 고정효과를 통제함
 - 소기업에서 동 제도 확대 이후 청년(35세 미만) 약 1.9% 감소, 중장년(35-59세) 약 1.2% 증가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남
 - 다른 기업 규모 표본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이질적 효과가 관찰되지 않음
 - 따라서 기업 규모별 이질성이 일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나, 대부분의 기업 규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 효과는 발견되지 않음
 - 특히 중기업과 중견기업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이질성이 관찰되지 않음
 - 이는 앞서 기업 규모별 공제액 변화 차이를 활용한 분석에서 중기업을 처치집단, 중견기업을 통제집단으로 설정하는 식별 전략이 유효함을 시사함

<표 IV-11> 기업 소재지별 공제액 변화를 활용한 이중차분모형 추정 결과: 기업 규모별

기업 규모	ln(상용근로자 수)				관측치 수
	전체	35세 미만	35~59세	60세 이상	
소상공인	-0.0075 (0.0176)	0.0126 (0.0145)	0.0022 (0.0188)	0.0027 (0.0121)	9,593
소기업	0.0054 (0.0065)	-0.0186*** (0.0067)	0.0123* (0.0069)	0.0072 (0.0050)	70,279
중기업	-0.0062 (0.0097)	0.0078 (0.0162)	-0.0121 (0.0110)	-0.0093 (0.0120)	21,228
중견기업	0.0685 (0.0450)	0.0728 (0.0482)	0.0570 (0.0453)	0.0987 (0.0641)	1,161

주: 1. *, **, ***은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
 2. 기업 수준으로 균집한 표준오차 사용
 3. 모든 추정에서 기업 재무변수, 처치집단 선형추세, 기업 및 산업×연도, 지역×연도 고정효과 통제
 자료: 고용보험 DB 및 KoDATA 결합자료 활용하여 저자 추정

18) 대기업은 표본 수가 충분하지 않아 분석에서 제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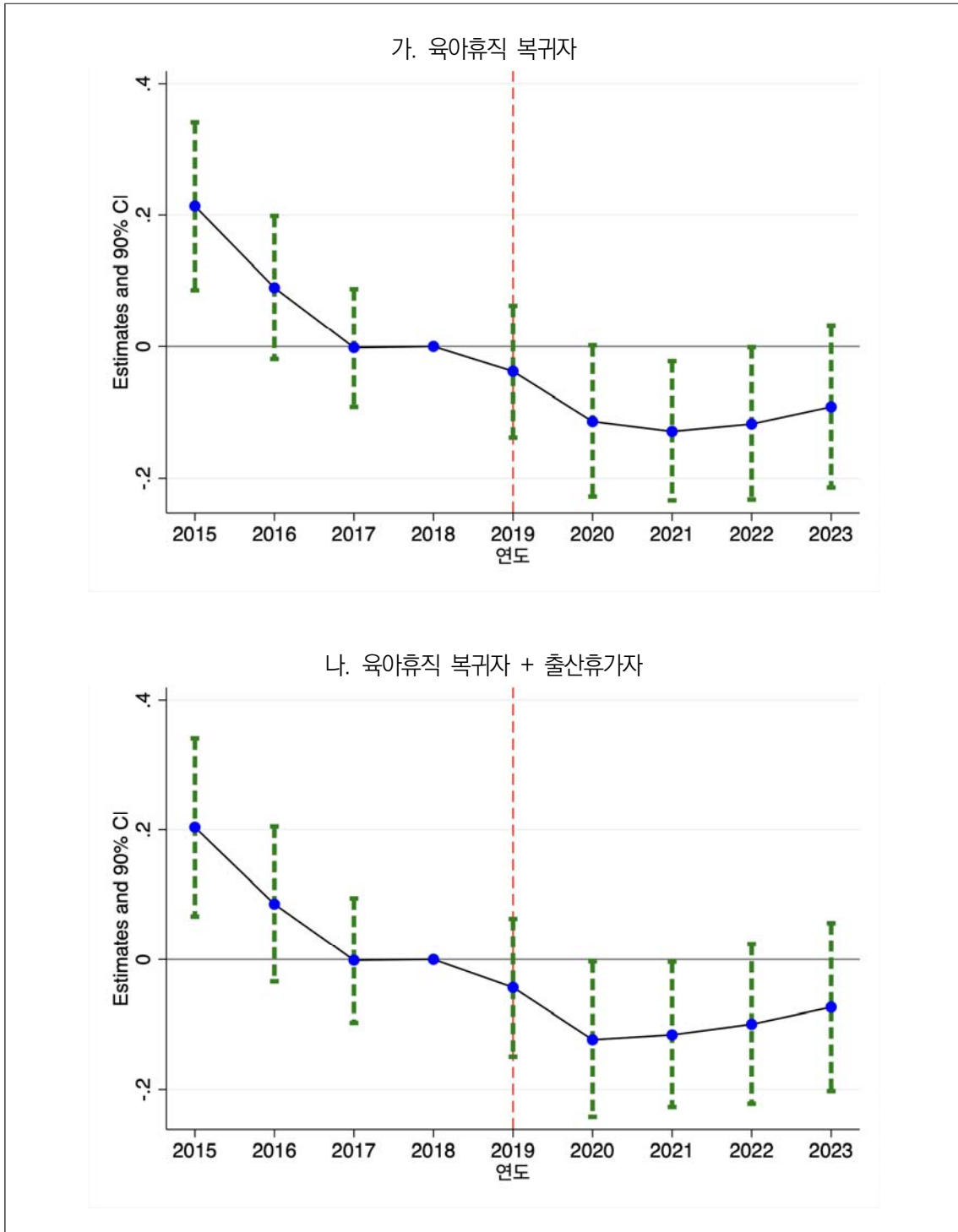
나. 육아휴직 복귀자 수

1) 기본 분석

- [그림 IV-3]은 처치집단(중견기업)과 통제집단(대기업)의 사전 추세를 확인하기 위해 사건사 분석 형태의 모형인 식 (6)의 추정 결과를 도해함
 - 분석 자료상 육아휴직 복귀자 수는 출산휴가에서 바로 육아휴직으로 전환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ln(\text{육아휴직 복귀자 수})$ 와 $\ln(\text{육아휴직 복귀자 수} + \text{출산휴가자})$ 두 가지 종속변수를 사용
 - 파란색 점과 초록색 점선은 연도별 추정 계수 γ_t , $t \in \{2015, \dots, 2023\}$ 와 90% 신뢰 구간을 나타내며, 빨간색 점선은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도입된 연도를 의미함
 - $\ln(\text{육아휴직 복귀자 수})$ 를 종속변수로 사용했을 때와 $\ln(\text{육아휴직 복귀자 수} + \text{출산휴가자 수})$ 를 종속변수로 사용했을 때의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음
 - 두 종속변수에서 제도 도입 이전 추정 계수가 하락하는 추세를 모두 보이므로 이중차분모형 추정 시 선형추세를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

- 중견기업과 대기업 간 제도 도입 차이를 활용하여 동 제도가 육아휴직 복귀자 수에 미친 효과를 추정한 결과는 <표 IV-12>에 제시되어 있음
 - 총자산 5천억원 이상 15조원 미만인 중견기업과 대기업만을 표본으로 사용함
 - [그림 IV-3]에 따라 처치집단 선형추세를 통제하였으며, 기업, 산업×연도, 지역×연도 고정효과를 추가로 통제함
 - 2015년부터 2023년까지의 표본을 사용(분석 대상 제도는 2019년 도입)
 - 코로나19로 인한 이질적 행태 변화 내지 제도 효과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1)열과 (3)열에서는 코로나19 시기인 2020~2021년을 제외한 분석 수행
 - 전체 표본을 이용한 (2)열과 (4)열의 추정 결과에 따르면, 동 제도 도입은 육아휴직 복귀자 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효과를 미치지 않음
 - 코로나19 시기(2020~2021년)를 제외한 표본을 사용한 (1)열과 (3)열에서도 통계적 유의성은 확인되지 않음
 - 단 코로나19 시기를 제외할 경우 추정 계수는 양(+)의 값을 가짐

[그림 IV-3] 육아휴직 복귀자 수 사건사 분석



주: 1. 빨간 줄로 표시된 시점은 처치집단(중견기업)에 본 제도의 도입이 일어난 시기
 2. 그림의 각 파란색 점은 해당 연도별 추정 계수 γ_t , $t \in \{2015, \dots, 2023\}$ 를 의미하며, 초록색 세로 선은 해당 추정치의 90% 신뢰구간을 나타냄
 자료: 고용보험 DB 및 KoDATA 결합자료 활용하여 저자 추정

<표 IV-12> 육아휴직 복귀자 수 이중차분모형 추정 결과

변수	ln(육아휴직 복귀자)		ln(육아휴직 복귀자+출산휴가가)	
	(1)	(2)	(3)	(4)
$G_{jt} \times 1(t \geq 2019)_{jt}$	0.0185 (0.0685)	-0.0471 (0.0629)	0.0036 (0.0728)	-0.0640 (0.0663)
$\ln(\text{매출액})_{jt-1}$	-0.0153 (0.0372)	0.0021 (0.0250)	-0.0012 (0.0397)	0.0135 (0.0270)
$\ln(\text{총자산})_{jt-1}$	-0.0680 (0.0813)	0.0033 (0.0694)	-0.0582 (0.0855)	0.0078 (0.0727)
영업이익률 $_{jt-1}$	0.0045 (0.0063)	0.0007*** (0.0002)	0.0015 (0.0070)	0.0006** (0.0003)
$\ln(\text{부채총계})_{jt-1}$	0.0257 (0.0501)	-0.0003 (0.0424)	0.0098 (0.0531)	-0.0094 (0.0456)
코로나19 시기(2020~2021년) 포함		Y		Y
처치집단 선형추세(G_{jt})	Y	Y	Y	Y
기업 고정효과	Y	Y	Y	Y
산업×연도 고정효과	Y	Y	Y	Y
지역×연도 고정효과	Y	Y	Y	Y
관측치 수	6,157	8,381	6,157	8,381

주: 1. *, **, ***은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
 2. 기업 수준으로 군집한 표준오차 사용
 3. 총자산 5천억원 이상 15조원 미만인 중견기업과 대기업을 표본으로 사용
 자료: 고용보험 DB 및 KoDATA 결합자료 활용하여 저자 추정

2) 강건성 검증

- 앞선 <표 IV-12>에서 중견기업과 대기업 간 이질성을 완화하기 위해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규모 기준인 총자산 10조원을 기준으로 일정 규모 범위 내의 기업들로 표본을 한정하였던바, 이에 대한 강건성 검증이 필요
 - <표 IV-13>은 총자산 규모 범위를 보다 엄격하거나 완화된 방향으로 조정하여 분석을 수행한 결과를 나타냄
 - 분석 결과, 고려된 모든 총자산 규모 범위에서 동 제도 도입의 긍정적 효과는 관찰되지 않음
 - 모든 분석의 추정 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나 음(-)의 효과가 나타남

□ <표 IV-12>와 <표 IV-13>의 추정 결과에 비추어 보았을 때, 본 제도 도입이 중견 기업의 육아휴직 복귀자 수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표 IV-13> 강건성 검증: 총자산 규모의 범위 변화

총자산 규모	ln(육아휴직 복귀자)	ln(육아휴직 복귀자+출산휴가자)	관측치 수
3천억~17조원	-0.0164 (0.0502)	-0.0274 (0.0527)	12,757
4천억~16조원	-0.0232 (0.0571)	-0.0297 (0.0599)	10,425
7천억~14조원	-0.0554 (0.0724)	-0.0911 (0.0759)	6,245
1조~13조원	-0.0730 (0.1013)	-0.1218 (0.1057)	3,994
2조~12조원	-0.1790 (0.2099)	-0.2231 (0.2318)	1,911
3조~11조원	-0.2038 (0.3614)	-0.2615 (0.4081)	1,147

주: 1. *, **, ***은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
 2. 기업 수준으로 군집한 표준오차 사용
 3. 모든 추정에서 기업 재무변수, 처치집단 선형추세, 기업 및 산업×연도, 지역×연도 고정효과 통제
 자료: 고용보험 DB 및 KoDATA 결합자료 활용하여 저자 추정

4. 요약 및 소결

- (요약) 본 장에서는 「통합고용세액공제」가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 및 육아휴직 복귀자 수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함으로써 제도의 효과성을 평가함
- 동 제도의 변화 시 기업 규모 및 소재지별 차이가 있음을 이용하여 동 제도가 기업의 고용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
 - (상시근로자 수) 중견·중소기업의 공제액 변화의 차이와 수도권·비수도권 내 기업의 공제액 변화의 차이를 이용하여 공제액 확대의 효과를 추정함
 - (육아휴직 복귀자 수) 동 제도가 중견기업 이하에만 적용되었다는 점을 활용하여 중견·대기업 간 차이를 바탕으로 제도의 효과를 추정함
 - 사건사 분석을 통해 처치집단과 통제집단 간 사전 추세를 우선 확인하고, 두

집단 간 제도 변화의 차이를 활용하는 2원 고정효과 이중차분모형을 적용하여 동 제도의 효과를 추정함

- (분석 자료) 실증분석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개별 기업 단위 월별 상용 피보험자 수 및 육아휴직 복귀자 수 자료를 구득하여 활용
 - 해당 고용보험 DB를 한국평가데이터상 기업 재무자료와 결합함으로써 기업의 재무적 특성을 함께 고려

- (상시근로자 수) 본 조세특례제도의 확대는 상시근로자 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기업 규모별 또는 소재지별 공제액 변화의 차이를 이용한 분석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음
 - 기업 소재지별 공제액 변화의 차이를 이용한 분석에서 산업별 이질성 분석을 추가로 수행
 -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 및 창고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개인서비스업 등과 같은 산업에서 일부 연령별 상시근로자 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2.4~8.5%의 효과가 관찰됨
 - 단 모든 산업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결과는 아니며, 산업별로 이질성 존재
 - 기업 규모별 이질성 분석에서도 양(+)의 효과는 대체로 관찰되지 않음

- (육아휴직 복귀자 수)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도입은 육아휴직 복귀자 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한계점)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들이 존재하므로 해석 시 유의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기업 규모별·소재지별 공제액 변화의 차이를 활용하는바, 처치집단과 통제집단 간 내생적인 행태 변화 차이가 완전히 통제되지 않았을 가능성 존재
 - 중소·중견기업, 수도권·비수도권, 중견·대기업은 그 구분 자체가 고용 행태와 내생적으로 관련되어 있을 수 있음

- 본 연구는 이를 완화하기 위해 각 집단의 경계점 인접 기업으로 표본을 제한하고 집단별 선형추세를 통제하였으나 내생성 문제가 남아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추정 계수는 두 집단 간 구조적 차이를 반영하게 됨
- 한편 본 연구는 동 기간 시행되었던 다른 제도들을 고려하고 있지 않으므로 타 제도의 효과가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 고용 관련 지원 정책들은 기업 규모별·소재지별 차등을 두는 경우가 빈번한바, 이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다른 제도 변화의 효과가 함께 추정될 수 있음
- 끝으로 본 연구의 식별 전략의 핵심인 기업 규모 구분은 한국평가데이터상 기업 규모 변수에 기초하고 있는바, 해당 변수는 2023년을 기준으로 구축된 변수로서 과거 기업 규모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음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3년 평균 매출액 변수를 이용하여 기업 규모의 변화가 대부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중견·대기업의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없어 규모의 변화가 잦았을 가능성을 온전히 배제하기 어려움
 -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기준은 일반적인 중소·중견기업 구분 기준과 일부 상이한 조건을 포함하고 있으나, 분석 자료상 이를 엄밀히 확인·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음도 언급될 필요
- 결론적으로 이상의 실증분석을 통해 동 제도가 기업의 고용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을 파악할 수 있었으나, 보다 엄밀한 효과성 추정은 후속연구를 통해 보완될 필요가 있음

V. 종합평가 및 개선방안



V. 종합평가 및 개선방안

1. 종합평가

- 본 연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조세특례의 사전·사후관리) 제4항 등에 근거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에 대한 심층평가를 수행함
 - 동 제도는 기업의 고용 증대 및 고용 안정화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2년 세법 개정 당시 통합·신설되었던바, 2025년 12월 31일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 동 제도의 (예상) 감면액은 연간 3조 8,074억원 수준(2023~2025년 평균)

- (종합평가) 타당성 및 효과성 측면에서 「통합고용세액공제」를 평가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음
 - (타당성 분석) 정부지원(개입)의 필요성이 일부 인정되는 가운데, 동 제도 운영·실제상 개선의 여지가 존재함
 - 최근 노동시장의 양적 지표는 비교적 양호하여 제도 확대·운영의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낮으나, 질적 지표에는 개선의 여지가 존재함
 - 육아친화적 기업 문화 조성 유도를 위한 정부 지원에는 일정 수준의 타당성이 인정됨
 - 공제액 또는 공제 기간 측면에서의 적절성은 일정 수준 인정되나, 고용 증감 판별 방식, 사후관리, 운영 기간 등의 측면에서 개선의 필요성이 발견됨
 - 동 제도와 유사한 목적을 지닌 재정지원들이 존재하는바, 재원절감 내지 지출 효율화의 여지가 일부 존재함
 - (효과성 분석) 기업 단위의 미시자료를 활용하여 동 제도가 고용 증대 및 고용 안정에 기여한 정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함
 - (분석 자료) 고용보험 DB상 개별 기업 단위 상용 피보험자 수 및 육아휴직 복귀자 수 자료를 한국평가데이터(KoDATA) 재무자료와 결합하여 활용
 - (분석 방법) 2원 고정효과 이중차분모형 및 사건사 분석 모형 등을 활용

- 종속변수는 (로그) 상용 피보험자 수 또는 육아휴직 복귀자 수
- (분석 결과) 동 제도의 확대는 상시근로자 수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도입 역시 육아휴직 복귀자 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분석 한계) 실증분석에서 기업 규모별·소재지별 공제액 변화의 차이를 활용한바, 처치집단과 통제집단 간 내생적인 행태 변화 차이가 완전히 통제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감안하는 가운데 분석 결과를 해석할 필요

2. 개선방안

- 이상의 타당성 및 효과성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정책 설계 측면에서의 보완과 함께 동 제도의 축소 연장을 건의함
 - 고용 증대 및 고용 안정 지원 측면에서 동 제도 운영의 타당성이 일정 수준 인정되나 제도의 효과성이 제한적이고 운영기간이 상당하였다는 점, 나아가 유사 목적 재정지원들의 운영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원칙적으로 동 제도의 일몰 종료는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갑작스러운 제도 폐지로 인한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공제액 내지 공제기간 축소·변화를 우선 추진함으로써 제도 일몰 가능성을 시사할 필요가 있음
- 일몰 (축소) 연장을 추진할 경우, 고용 증감 판별 방식 등을 개선함으로써 제도 활용도 및 실효성을 제고시킬 것을 건의함
 - 최근 (기획성) 경정청구 급증의 사유로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식의 복잡성, 사후 추징에 대한 부담, 홍보 부족 등이 지적됨
 - 따라서 고용 증감 판별 방식을 단순화·합리화하는 동시에 사후 추징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음
 - 구체적으로 월별 근로시간이 아닌 연간 월평균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단시간 근로자 여부를 판별하는 방식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또한 정기신고와 경정청구 시 공제액 규모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현재는 고용 증가 인원이 공제기간 동안 일부 감소할 경우 사후관리 규정을 피할 수 있는 경정청구가 실질적으로 더 유리
- 따라서 고용 증가 인원이 일부 감소한 경우에도 잔여 고용 증가분에 대한 공제 혜택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당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사후 추정 규정을 폐지하되 공제액을 점증하는 구조로 재설계하여 고용 유지 유인을 제고시키는 방안도 고려 가능
- 이와 같은 제도 재설계 추진 시 전체 공제액 규모의 축소도 고려 가능

□ 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경기 상황 등에 따라 고용 관련 세제지원을 탄력적·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

-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같이 규모가 큰 세제지원을 장기간 운영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제한될 필요가 있음
 - 첫째, 기업들이 고용 관련 조세지원을 항구화된 제도로 인식할 경우 조세지출의 비용효율성이 낮아짐
 - 둘째, 관성적인 일몰 연장이나 공제액 확대 지속 시 안정적인 세수 확보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음
 - 셋째, 불경기 도래 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세제상 정책 수단이 제한됨
- 따라서 중장기적으로는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일몰 종료를 목표로 축소 연장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음

참고문헌

- 고용노동부, 『2025 한 권으로 통하는 고용노동 정책』, 2025.
- 고용노동부,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2025. 1.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 김석영·김소희·이철인·안성희, 『2022 조세특례 심층평가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기획재정부·한국개발연구원, 2022.
- 대한민국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 여성가족부, 『「2022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주요 결과』, 2023. 6. 1.
- 오종현·김문정·최충, 『2024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육아친화기업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제 혜택 확대』,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4.
- 이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2024. 11.
- 최인혁·문지웅, 『고용창출 세제지원 개선방향 연구: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중심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3.
- 최인혁·이상엽·홍우형, 『2021 조세특례 심층평가(3)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1.
- Cahuc, P., S. Carcillo, and T. Le Barbanchon, “The Effectiveness of Hiring Credits,” *The Review of Economic Studies*, 86(2), 2019, pp. 593~626
- Chirinko, Robert S., and Daniel J. Wilson, “Job creation tax credits, fiscal foresight, and job growth - Evidence from US states,” *National Tax Journal*, 76(3), 2023, pp. 481~52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
_____,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 고용노동부, 『기업체노동비용조사』, 각 연도.
_____, 『사업체노동력조사』, 각 연월.

_____,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각 반기.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_____,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_____, 「육아휴직통계」, 각 연도.

부 록



<부록 1> 「통합고용세액공제」 법령

<부표 1>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제29조의8(통합고용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25. 3. 14.>

1.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또는 경력단절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 인원 수(전체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45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550만원)]을 곱한 금액
2. 청년등상시근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전체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0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 가.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850만원
 -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950만원

② 제1항제1호에서 “경력단절 근로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신설 2025. 3. 14.>

1. 임금을 목적으로 같은 기업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가족돌봄의 사유로 퇴직하였을 것
2. 제1호에 따른 사유로 퇴직한 날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났을 것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내국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또는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③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제1항에 따른 공제금액 중 제144조에 따라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4.>

<부표 1>의 계속

④ (생략)

⑤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육아휴직 복귀자”라 한다)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복직시키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복귀자 인원에 1,3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900만원)을 곱한 금액을 복직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과세연도에 해당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3. 14.>

1. 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업이 육아휴직 복귀자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한 경우로서 육아휴직 기간이 연속하여 6개월 이상일 것
3.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나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닐 것

⑥ 제5항은 육아휴직 복귀자의 자녀 1명당 한 차례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5. 3. 14.>

⑦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각각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일 또는 육아휴직 복직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종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공제금액 중 제144조에 따라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4.>

⑧ 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4.>

⑨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할 때 청년등상시근로자 및 전체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 3. 14.>

[본조신설 2022. 12. 31.]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 검색일자: 2025. 7. 13.

〈부표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8

제26조의8(통합고용세액공제)

① 법 제29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말한다.

② 법 제29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제23조제10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를 말한다.

③ 법 제29조의8제1항제1호에서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또는 경력단절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상시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상시근로자”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5. 2. 28., 2025. 6. 30.>

1. 15세 이상 34세(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사람의 경우에는 6년을 한도로 병역을 이행한 기간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을 말한다) 이하인 사람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
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
나. 「과건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건근로자
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에 근무하는 같은 법에 따른 청소년
2.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 민주화운동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3.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
4. 법 제29조의8제2항에 따른 경력단절 근로자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④ 법 제29조의8제3항 후단에 따라 납부해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이를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5. 6. 30.>

1. 법 제29조의8제1항에 따라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보다 전체 상시 근로자 수 또는 청년등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1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29조의8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을 한도로 한다)

가.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 1) 청년등상시근로자의 감소 인원 수가 전체 상시근로자의 감소 인원 수 이상인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text{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감소 인원 수}(\text{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text{전체 상시근로자의 감소 인원 수}] \times (\text{법 제29조의8제1항제1호의 금액} - \text{같은 항 제2호의 금액}) + (\text{전체 상시근로자의 감소 인원 수} \times \text{법 제29조의8제1항제1호의 금액})$
--

<부표 2>의 계속

2) 그 밖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감소 인원 수(전체 상시근로자의 감소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법 제29조의8제1항제1호의 금액] +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의 감소 인원 수(전체 상시근로자의 감소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법 제29조의8제1항제2호의 금액]

나. 전체 상시근로자 수는 감소하지 않으면서 청년등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감소 인원 수(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법 제29조의8제1항제1호의 금액 - 같은 항 제2호의 금액)

2. 제1호에 따른 기간의 다음 날부터 법 제29조의8제1항에 따라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보다 전체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등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29조의8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

가.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1) 청년등상시근로자의 감소 인원 수가 전체 상시근로자의 감소 인원 수 이상인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감소 인원 수(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전체 상시근로자의 감소 인원 수] × (법 제29조의8제1항제1호의 금액 - 같은 항 제2호의 금액) ×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횟수 + (전체 상시근로자의 감소 인원 수 × 법 제29조의8제1항제1호의 금액 ×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횟수)

2) 그 밖의 경우: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 및 청년등상시근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의 감소 인원 수(전체 상시근로자의 감소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대해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

나. 전체 상시근로자 수는 감소하지 않으면서 청년등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감소 인원 수(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법 제29조의8제1항제1호의 금액 - 같은 항 제2호의 금액) ×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횟수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제3항제1호에 따른 청년등상시근로자에 해당한 자는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이후의 과세연도에도 청년등상시근로자로 보아 청년등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한다.

⑥ 법 제29조의8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 및 청년등상시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로 한다. <개정 2025. 6. 30.>

<부표 2>의 계속

1. 상시근로자 수:

$$\frac{\text{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text{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2. 청년등상시근로자 수:

$$\frac{\text{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청년등상시근로자 수의 합}}{\text{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⑦ 제6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와 청년등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23조제11항 후단을 준용하며, 법 제29조의8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를 사용 중인 상시근로자를 대체하는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해당 출산전후휴가를 사용 중인 상시근로자는 제6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와 청년등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 2. 29., 2025. 6. 30.>

⑧ 제6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제23조제1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는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등상시근로자 수”로 본다.

⑨ 법 제29조의8제4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 각각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를 말한다. <개정 2025. 6. 30.>

⑩ 법 제29조의8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에 따라 기업의 경력단절 근로자 및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 사실 여부는 각각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통하여 확인한다. <개정 2025. 6. 30.>

⑪ 법 제29조의8제1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공제세액계산서 및 상시근로자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2. 28., 2025. 6. 30.>

⑫ 법 제29조의8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가족돌봄의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5. 6. 30.>

1. 제26조의3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퇴직일 당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자녀가 있는 경우
3. 퇴직일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보양하기 위해 같은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
 - 가. 70세 이상
 -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⑬ 법 제29조의8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5. 6. 30.>

[본조신설 2023. 2. 28.]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검색일자: 2025. 7. 13.

<부록 2> 「통합고용세액공제」 관련 전문가 질의서

1. 제도 개요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이하 「통합고용세액공제」)의 내용 및 수혜 현황 등은 다음과 같음
 - (공제 개요) 상시근로자 수 증가 시 기업 규모·소재지·채용대상에 따라 최대 3년간 차등적 기본공제
 - 중소·중견은 육아휴직 복귀 인원에 비례하여 1년간 추가공제
 - 2년 이내 상시근로자 수 감소 또는 근로관계 종료 시 공제받은 세액의 상당액을 소득세·법인세로 납부

<부표 3> 「통합고용세액공제」 공제 개요

(단위: 만원)

채용대상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수도권	지방		
기본 공제	청년(15~34세)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자 등	1,450 (3년)	1,550 (3년)	800 (3년)	400 (2년)
	그 외 상시근로자	850 (3년)	950 (3년)	450 (3년)	-
추가 공제	육아휴직 복귀자	1,300 (1년)		900 (1년)	-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제도 연혁) 고용 관련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 기존 5개 특례 제도를 2022년 세법개정 당시 통합하여 신설
 - 「2024년 세법개정안」에 동 제도의 지원방식 개편안이 포함된 바 있으나, 국회 본회의에서 현행 유지로 수정 가결됨
 - 단, 경력단절자의 성별 및 업종 요건은 폐지됨(2025년 2월)

- (지출 규모)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예상) 감면액은 연간 3조 8,074억원 수준 (2023~2025년 평균)
 - 2023년 기준 소득세 감면액이 37.7%, 법인세 감면액이 62.3%
- (수혜 현황)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신고법인 수는 6만 8,190개, 전체 공제액은 1조 8,148억원(2023년 법인세 신고 기준)
 - 중소기업이 6만 5,492개(96.0%), 중견·대기업이 2,698개(4.0%)
 - 중소기업의 증가인원은 1.6~3.1명, 중견·대기업의 증가인원은 17.0~38.2명으로 단순 추정됨

2. 질의 사항

가. 제도 운영 및 실무 관련

- 1) 실제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청 시 가장 빈번하게 문제가 되는 증빙자료나 절차는 무엇입니까?(예: 관련 근로자 확인,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식, 전산 시스템 오류 등)
 -
- 2) 기업들이 공제 대상이었음을 뒤늦게 인지하게 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실무적 관점에서 어떠한 제도적 미비가 원인이라고 보십니까?(예: 고용 증가 자동 인식 불가, 국세청 알림 시스템 부재 등)
 -
- 3) 상시근로자 수 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장 대표적인 해석상 쟁점이나 분쟁 사례는 무엇입니까?(예: 휴직자, 단시간 근로자 포함 여부 등)
 -
- 4)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추가 공제를 적용할 때, 실무적으로 가장 혼란스러운 부분은 무엇입니까?(예: 복귀일 기준, 상시근로자 수 반영 시점 등)
 -

나. 경정청구 및 사후관리 관련

- 1)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를 신청하는 기업이 많은 이유는 무엇이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무상 애로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예: 경정청구 승인 지연, 소명자료 부족, 제출 방식 혼선 등)
○
- 2) 기업 또는 세무대리인이 육아휴직 복귀자 관련 추가 공제를 누락하거나 경정청구로 처리하게 되는 주요 원인은 무엇입니까?(예: 복귀자 인식 오류, 공제 가능성에 대한 사전 안내 부족 등)
○
- 3) 현재 경정청구 절차에서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예: 고용보험 DB 활용 등 실무 효율화, 요건 충족 확인 절차 간소화 내지 자동화 등)
○

다. 제도 설계 및 적용 범위 관련

- 1) 「통합고용세액공제」가 대기업·공공기관에도 실질적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적용 대상 확대 또는 차등적 공제 적용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
- 2) 만일 청년·고령자·여성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가중치 도입 시 실무적인 관점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예상되십니까?(예: 요건 검토의 복잡성 등)
○

라. 행정정보 연계 및 자동화 관련

- 1) 근로복지공단의 피보험자 관련 정보와 국세청 시스템의 실시간 연계에 기술적·법적 어려움이 있다고 보십니까? 세무 현장에서 이와 같은 연계가 실제로 구현되기 위한

전제조건은 무엇입니까?

○

- 2) 공제신청서 작성·접수 과정 자동화, 또는 공제 예상금액 자동안내 시스템 도입 시 실무적으로 고려해야 할 세무 행정적 리스크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

마. 전산시스템 및 플랫폼 구축 관련

- 1) 현재 홈택스 시스템상 「통합고용세액공제」 관련 기능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기능 또는 화면(UI)은 무엇입니까?

○

- 2) 세무대리인의 입장에서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누락하지 않고 적절히 안내·신청하기 위해 어떠한 시스템 보완이나 사전안내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감사합니다.)

2025 조세특례 심층평가(4) 통합고용세액공제



기획재정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음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TEL:044-215-2114(代), www.moef.go.kr



한국조세재정연구원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044-414-2114(代), www.kipf.re.kr